

북오산자이 리버블시티 입주자모집공고

청약 Home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



청약Home 앱 설치 바로가기



단지 주요정보

(분양문의) 1660-2792

주택유형	해당지역	기타지역		규제지역여부
민영주택	오산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 (2025.01.09. 이전부터 계속 거주)	오산시 1년 미만 거주자 및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거주자		비규제지역
재당첨제한	전매제한	거주의무기간	분양가상한제	택지유형
없음	6개월	없음	미적용	민간택지

구분	입주자모집공고일	특별공급 접수일	일반공급 1순위 접수일	일반공급 2순위 접수일	당첨자발표일	서류접수	계약체결
일정	2026.01.09.(금)	2026.01.20.(화)	2026.01.21.(수)	2026.01.22.(목)	2026.01.28.(수)	2026.01.29.(목) ~ 2026.02.03.(화) [6일간]	2026.02.08.(일) ~ 2026.02.10.(화) [3일간]

1

공통 유의사항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콜센터는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이용안내 및 기본적인 청약자격 상담을 하고 있으며 고객 상담 과정에서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한 정확하지 않은 정보의 제공으로 일부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약홈 콜센터 상담내용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자세한 문의사항은 사업주체를 통해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북오산자이 리버블시티 건분주택」 내 분양 상담전화(☎1660-2792) 등을 통해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과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나, 간혹 폭주하는 상담전화와 신청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하여 정확하지 않은 정보 제공으로 청약 관련 사항에 대한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객 여러분께서는 청약과 관련한 상담은 청약의 참고 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신청자 본인이 입주자모집공고를 통해 청약자격 등을 숙지하시어 관련 서류 등을 발급받아 직접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 신청 등에 대해서는 신청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2025.10.3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2024.10.0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민간 사전청약 당첨자 및 그 세대원은 '24.10.01.부터 사전당첨자 지위를 유지한 상태에서 다른 주택에 청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전당첨자 및 그 세대원이 다른 주택(APT, 불법행위재공급, 규제지역 무순위)에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사전당첨자로서의 지위를 상실하여 사전청약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신청자격은 당첨자를 대상으로 전산조회, 제출서류 등을 통해 사업주체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될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서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일정기간 입주자저축 사용 및 입주자선정 제한 등)을 받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자격, 기준, 일정, 방법, 유의사항 등을 정확히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자격	특별공급					일반공급	
	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1순위	2순위
청약통장 자격요건	6개월 이상,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충족			1순위 (12개월 이상,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충족)		가입	
세대주 요건	-	-	-	필요	-	-	-
소득 또는 자산기준	-	-	적용	-	적용	-	-

※ 단, 기관추천 특별공급 중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철거주택 소유자(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청약통장 불필요

- ※ 1순위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가입기간이 **12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납입한 분
- ※ 2순위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였으나,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분
- ※ 세대주 : 본 공고에서의 “세대주”는 주민등록법상 세대주로 한정하며,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에 기재된 세대주는 인정 안됨.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순위요건을 만족하였으나, 청약 신청 전 청약통장을 해지한 경우에는 청약이 불가합니다.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시 가점항목 등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에 한하여 주민등록표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청약신청 내용과 실제 청약자격의 일치 및 적격 여부를 확인한 후에 계약 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와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모든 주택(APT, 불법행위재공급, 규제지역 무순위)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이 가능하며(청약홈 및 LH청약플러스 등의 기관을 통해 청약접수 및 당첨자 선정은 진행하는 경우 포함), 2건 이상 중복신청 시 모두 무효 또는 부적격 처리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단, 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각 1건씩 중복청약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 (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간 또는 일반공급간 중복청약 시 모두 무효 처리)
-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당첨자 발표일이 늦은 주택의 당첨은 자동 취소됩니다. (각각 동일한 청약통장으로 당첨된 경우에 한함)
- 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 시 당첨자로 전산관리 되며, 사용한 청약통장은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하고,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분은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됩니다.
- 2018.12.1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 제2조제4호에 의거 ‘세대’ 및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의가 변경되었습니다.
 -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 (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 가. 주택공급신청자
 -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합니다.
 - (예) 부모, 장인·장모, 시부·시모, 조부·조모, 외조부·외조모 등
 -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 같음)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합니다.
 - (예) 아들·딸, 사위·며느리, 손자·손녀, 외손자·외손녀 등
 -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합니다. (예) 전혼자녀 등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말하며,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합니다.
- 2018.12.1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7호의2, 제23조제4항, 제53조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 주택 소유로 간주하오니, 주택소유 여부 판정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참조)
 - ※ 주택 소유로 보는 분양권등의 범위(국토교통부령 부칙 제3조, 제565호, 2018.12.11. 시행)
 - 분양권등 신규 계약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또는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공급계약 체결일’ 기준 주택 소유로 봄.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공급받은 경우는 제외되나, 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경우 주택소유로 봄)
 - 분양권등 매수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매수 신고한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실거래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을 기준으로 주택소유로 봄.
- 2018.12.1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 나목에 의거 주택(분양권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는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의 배우자는 가점제 항목의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습니다. 부양가족 판단 시 직계비속은 미혼자녀와 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의 손자녀인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0조제1항에 따라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실시합니다.
- 한국부동산원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한 공급유형별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급유형	당첨자 선정	예비입주자 선정	동호수 결정
특별공급	유형별 당첨자 선정방법에 따름	주택형별 공급세대수의 500% 까지 추첨으로 선정	특별공급/일반공급 구분 없이 주택형별 무작위 추첨으로 결정
일반공급	순위별 당첨자 선정방법에 따름	(1순위) 주택형별 공급세대수의 500% 까지 지역우선공급을 적용하여 가점순으로 선정 (동점 시 추첨) (2순위) 1순위에서 미달된 예비입주자 수만큼 지역우선공급을 적용하여 추첨으로 선정	

- 특별공급 유형별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다른 특별공급 유형의 청약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분(기관추천 예비대상자 포함)을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이후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 물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주택형별 특별공급 청약신청자 수가 특별공급 세대수의 **60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
- 주택형별 일반공급 1순위 청약신청자 수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600%**를 초과할 경우 2순위 접수분은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2019.12.06.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의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는 청약신청자 수가 예비입주자 선정 총수에 미달되어도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합니다.
- 미계약 또는 계약해제 발생 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합니다. 동·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예비입주자 명단 및 순번은 당첨자명단 발표 시 함께 발표됩니다.
- 특별공급 잔여물량은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일반공급 잔여물량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며,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남은 물량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2018.05.04.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제6항에 의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이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예비입주자로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 동·호수 배정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비입주자의 동·호수배정일(당첨일)이 다른 주택의 당첨자 발표일보다 빠른 경우 예비입주자 계약 체결은 가능하며 다른 주택의 당첨 내역은 무효 처리됩니다.

- 선정된 예비입주자 현황은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부터 180일까지(예비입주자가 소진될 경우에는 그 때까지로 함) 분양홈페이지(<https://www.xi.co.kr/osan>)에 공개하며, 공개기간이 경과한 다음 날에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소멸되고, 예비입주자의 지위가 소멸된 때 예비입주자와 관련한 개인정보는 파기처리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19.11.0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5항 및 제23조제2항제7호에 따라 우선공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장기해외체류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신청이 불가하며, 이를 위반하여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됩니다.

• 출입국사실증명서 해외체류기간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한 기간(입국 후 7일 내 동일국가 재출국 시 계속하여 해외에 체류한 것으로 봄) 또는 연간 183일을 초과하여 국외에 거주한 기간은 국내 거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해당 주택건설지역으로 청약할 수 없습니다. 단, 90일 이내의 여행, 출장, 파견 등 단기 해외체류는 국내거주로 간주되어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1)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나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여 국외에 체류한 경력이 있으면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는 불인정하나 기타지역 거주자로는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2)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3)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한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불인정되며 기타지역 거주자로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8항에 따라 세대원 중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 고령자, 장애인, 다자녀가구(단, 미성년자녀 3명 이상)의 최하층 우선배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1조)
 - 최하층이라 함은 1층을 말하며(1층이 없는 경우 최저층을 말함), 최하층 주택의 분양금액이 바로 위층 주택의 분양금액보다 높은 경우는 최하층 우선배정하지 않습니다.
 - 제1호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인 분 또는 그 세대에 속한 분, 제2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분 또는 그 세대에 속한 분, 제3호 미성년자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분 또는 그 세대에 속한 분이 있는 경우에는 청약 시 최하층의 주택 배정을 희망한 당첨자에 대해서 해당 층을 우선 배정합니다.
 -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분과 제3호에 해당하는 분 사이에 경쟁이 있으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분에게 우선 배정합니다.
 - 최하층 우선배정 신청자가 최하층 우선배정 세대수보다 많은 경우 최하층이 아닌 층을 배정받을 수 있으며, 적은 경우에는 최하층 우선배정 미신청자에게도 최하층이 배정될 수 있습니다.
- 주민등록표초본상 말소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사도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합니다.
- 청약통장 관련 기준
 -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 기한 :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 시 청약 신청가능
 - 청약예금 지역간 예치금액 차액 충족 기한 : 청약 접수 당일까지 충족 시 청약 신청가능
(단, 차액을 감액하는 경우이거나 주거지 변경없이 가입한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청약 신청할 경우에는 예치금액 변경없이 청약 신청가능)
 - 청약예금의 신청가능 주택규모 변경 기한 :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 시 청약 신청가능
(단, 작은 주택규모로 변경할 경우 해당구간의 청약예치금액 충족 시 별도의 주택규모 변경 절차 없이 하위 면적 모두 신청가능)
 - 주택청약종합저축 예치금 충족 기한 : 입주자모집공고 당일까지 예치금 충족 시 청약 신청가능
 - 종전통장(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 기한 :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전환개설 완료 시 청약 신청가능
 - * 종전통장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하여 청약하는 경우, 청약 기회가 확대되는 유형은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순위를 산정합니다.
 - (예)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민영주택 청약 시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순위산정 (단, 국민주택 청약 시 기존 청약통장이입일을 기준으로 순위산정)
 -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입주자모집공고일 포함) 종전통장(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해당 주택의 순위확인서 발급 및 청약신청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장전입 및 불법 전매제한 등을 통한 부정합 당첨자는 「주택법」 제65조 및 「주민등록법」 제37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또한, 2021.02.19.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6조에 따라 「주택법」 제64조제1항 및 제6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적발된 경우, 위반한 행위를 적발한 날부터 10년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 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제8항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상의 기간에 소명하지 못할 경우 당첨 및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된 경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자발표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민간 사전청약 및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제2항에 따라 주택의 공급계약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사실 공고일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3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기간 동안에 체결합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합 방법으로 당첨되었음이 확인될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하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습니다.
- 부적격 청약, 공급질서 교란행위, 통장매매, 위장전입 등의 사유로 향후 계약이 취소될 경우 사업주체에 인지세 환부를 요구할 수 없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개정된 내용에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후 정책변경 및 법 개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입주자공고문은 작성 당시 법령 및 정책 등의 규정에 의거하여 작성하였으며, 이후 정책변경 및 법 개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그로 인하여 사업주체에게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정착을 위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아래와 같이 청약신청 유형별 사용 가능한 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약신청 유형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KB국민인증서	토스인증서	신한인증서	카카오인증서
APT	○	○	○	○	○	○	○

※ 단, APT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자 중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는 유형의 청약신청자는 공동인증서 및 금융인증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 부동산 거래신고,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신고 의무화로 경기도 오산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및 별표1 규정에 의거 주택매매 계약(최초 공급계약 및 분양권·입주권 전매를 포함)의 부동산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계획과 입주계획서 및 매수자 본인이 입주할지 여부, 입주 예정시기 등 거래대상 주택의 이용계획의 신고를 의무화하며(취득가액 6억원 이상 주택만 해당),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규정에 의거 부동산 계약 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거래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신고에 따른 필요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해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비·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인지세 납부 관련 안내

- 본 아파트 공급계약서는 및 발코니 확장 계약서는 「인지세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에 해당되며, 계약서 또한 「인지세법」상 '도급문서'로서 인지세 납부대상으로 「인지세법」 제1조에 의거 인지세 납부 대상이 되며, 공급계약 및 발코니 확장 계약 체결 시 사업주체와 분양계약자는 과세기준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연대하여 균등납부 하기로 합니다. 또한, 분양계약자가 분담 부분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지 않거나 과소 납부, 인지분실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분양계약자에게 있습니다.
- ※ 정부수입인지는 취급 금융기관에 방문하여 구매하거나, 전자수입인지사이트 (<https://www.e-revenuestamp.or.kr>)에서 발급 가능하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소비세과(☎126)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납부세액 : 부동산 거래계약서의 실지거래가격(분양대금 + 프리미엄)을 기재금액으로 하여 해당되는 세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 2022.12.31.개정된 「인지세법」 제8조제3항에 따라 공급계약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 ※ 계약체결 이후 부적격 당첨, 공급질서 교란행위, 통장매매 등의 사유로 계약이 취소될 경우 사업주체에 인지세 환부를 요구할 수 없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기재금액	1천만원 초과 ~ 3천만원 이하	3천만원 초과 ~ 5천만원 이하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10억원 초과
납부세액	2만원	4만원	7만원	15만원	35만원

- 정부수입인지는 분양권 매매 당사자뿐만 아니라 물건을 중개하는 공인중개사나 등기 대행하는 법무사도 구매하여 첨부할 수 있습니다.
- 정부수입인지는 1회에 한하여 출력되므로 직접출력 시 반드시 프린터 상태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재발행 불가)

2 단지 유의사항

- 본 주택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6.01.09.(금)** 입니다. (청약자격 요건 중 기간, 나이, 지역우선공급 등의 판단기준일)
- 본 주택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오산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만19세 이상인 분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 [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의 경우 청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청약신청자 중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오산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2025.01.09. 이전부터 계속 거주)가 우선합니다.**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구분	특별공급	일반공급 1순위	일반공급 2순위	당첨자발표	서류접수	계약체결
일정	2026.01.20.(화)	2026.01.21.(수)	2026.01.22.(목)	2026.01.28.(수)	2026.01.29.(목)~2026.02.03.(화)	2026.02.08.(일)~2026.02.10.(화)
방법	(PC·모바일) 청약홈(09:00 ~ 17:30) (현장접수) 사업주체 견본주택	(PC·모바일) 청약홈(09:00 ~ 17:30) (현장접수) 청약통장 가입은행	(PC·모바일) 청약홈	사업주체 견본주택 (경기도 오산시 내삼미동 272-2)		

- ※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 특별공급은 사업주체 견본주택 현장접수(10:00~14:00, 은행창구 접수 불가), 일반공급은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09:00~16:00)에서 청약 가능함. (단, 은행 영업점별 업무 시간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신 후 방문하시기 바람)
- ※ 국방부(국군복지단)에서 추천한 "25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추천자"는 청약홈을 통한 인터넷 청약만 가능 (**견본주택 또는 은행 창구접수 불가**)
- ※ 청약신청 취소는 청약신청일 당일 17:30까지 가능하며, 청약신청일 당일 17:30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청약신청 취소 불가
- ※ 모바일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모바일 청약 시,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인증서를 청약홈 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기 바람,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주택은 **수도권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 당첨자로 선정되더라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따른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지 않으며, 기존 주택 당첨으로 인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도 본 아파트 청약이 가능합니다. (단, 본 제도는 당첨된 청약통장의 재사용을 허용하는 제도가 아니므로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수도권 외 지역에 거주하여도 기타지역(수도권) 거주자격으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해당지역 거주자격으로 청약은 불가함)
- 2021.02.02.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9항에 의거 국방부 「군 주택공급 입주자 선정 훈령」 제18조에 따른 25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중 국방부(국군복지단)에서 추천한 분은 수도권(투기과열지구가 아닌 지역으로 한정) 청약 시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않아도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보아 해당지역 거주자격으로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 (해당지역의 의무거주기간을 적용하지 않음)
- ※ **25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청약 추천자는 청약홈을 통한 인터넷(PC·모바일) 청약만 가능 (견본주택 또는 은행 창구접수 불가)**
- 본 주택의 전매제한은 최초 당첨자발표일(**2026.01.28.(수)**)로부터 적용되며 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특별공급	일반공급
전매제한기간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3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오산시 주택과-861 (2026. 1. 8.)**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 **공급위치** : 경기도 오산시 내삼미동 905 일원

■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2층~지상29층 10개동, 총 1,275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특별공급 639세대(기관추천 114세대, 다자녀가구 127세대, 신혼부부 263세대, 노부모부양 33세대, 생애최초 102세대) 포함]

■ **입주시기** : **2029년 3월 예정** (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공급대상**

(단위 : m², 세대)

주택 관리번호	모델	주택형 (전용면적기준)	약식 표기	주택공급면적			기타 공용면적 (지하주차장등)	계약 면적	세대별 대지지분	총공급 세대수	특별공급 세대수						일반공급 세대수	최하층 우선배정 세대수
				주거 전용면적	주거 공용면적	소계					기관 추천	다자녀 가구	신혼 부부	노부모 부양	생애 최초	계		
2025000628	01	059.9928A	59A	59.9928	19.8082	79.8010	44.1765	123.9775	36.9649	190	19	19	43	5	17	103	87	7
	02	059.9984B	59B	59.9984	19.7184	79.7168	44.1805	123.8973	36.9684	192	19	19	44	5	17	104	88	7
	03	074.9590A	74A	74.9590	22.5545	97.5135	55.1971	152.7106	46.1864	112	11	11	25	3	10	60	52	4
	04	074.9810B	74B	74.9810	22.4846	97.4656	55.2131	152.6787	46.2000	112	11	11	25	3	10	60	52	4
	05	074.9604C	74C	74.9604	23.0551	98.0155	55.1980	153.2135	46.1873	56	5	6	12	1	5	29	27	2
	06	084.9121A	84A	84.9121	25.1488	110.0609	62.5261	172.5870	52.3191	196	19	20	45	5	17	106	90	7
	07	084.9102B	84B	84.9102	25.0481	109.9583	62.5247	172.4830	52.3179	251	25	25	57	7	22	136	115	9
	08	084.9452D	84D	84.9452	26.3107	111.2559	62.5506	173.8065	52.3395	55	5	5	12	1	4	27	28	2
	09	099.3436B	99B	99.3436	28.8875	128.2311	73.1530	201.3841	61.2112	108	-	11	-	3	-	14	94	4
	10	126.2497P	126P	126.2497	40.5864	166.8361	92.9656	259.8017	77.7896	2	-	-	-	-	-	-	2	-
	11	127.3322P	127P	127.3322	40.7655	168.0977	93.9521	262.0498	78.4565	1	-	-	-	-	-	-	1	-
합계										1,275	114	127	263	33	102	639	636	46

※ 상기 세대당 대지지분은 주택형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향후 입주 시 지적정리에 따른 대지면적 확정으로 인해 면적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대지지분 면적 합산 시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표현되어 합산 면적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분양예정 건축시설물의 대지권(지분)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유지분으로 배분합니다.

※ 특별공급 미 청약분은 일반공급으로 전환됨에 따라 일반공급 세대수는 특별공급의 청약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주택형의 구분은 입주자모집공고 상의 표기이며, 견본주택 및 홍보 제작물 등의 변경되어 표현될 수 있으니, 청약 및 계약시 주택형에 대한 혼돈 방지를 위해 필히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공급 신청 시 [주택형] 또는 [형] 란은 입주자모집공고상 주택형(m²)으로 기재하오니 평형으로 오해하여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라며, 주택규모 표시방법을 종전의 평형 대신 넓이표시 법정

단위인 제곱미터(m²)로 표기하였으니 신청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평형 환산방법 : 공급면적(m²) × 0.3025 또는 공급면적(m²) ÷ 3.3058]

※ 전용면적은 안목치수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은 소수점 이하 단수조정으로 등기면적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단, 소수점 이하 면적변경에 대해서는 정산금액이 없음)

※ 최하층은 1층을 말하며, 1층이 없는 경우 최저층을 최하층으로 합니다. (최하층 우선 배정세대는 총 공급세대에 포함된 세대수입니다.)

※ 동일한 주택형이라 하여도 타입별 세부면적과 해당 동, 라인, 층은 상이할 수 있으니 입주자모집공고 내용 확인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편집 및 인쇄 과정 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견본주택 분양사무실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형 표시 안내

입주자모집공고 상(청약 시) 주택형	059.9928A	059.9984B	074.9590A	074.9810B	074.9604C	084.9121A	084.9102B	084.9452D	099.3436B	126.2497P	127.3322P
약식 표기	59A	59B	74A	74B	74C	84A	84B	84D	99B	126P	127P

※ 주택형 구분은 입주자모집공고상의 표기이며, 견본주택 및 카탈로그/홍보 제작물은 약식으로 표현되었으니, 청약 및 계약 시 주택형에 대한 혼돈 방지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단위 : 원)

약식 표기	층구분	세대수	공급금액				계약금(10%)		중도금(60%)						잔금(30%)
			대지비	건축비	부가세	분양가	1차	2차	1차(10%)	2차(10%)	3차(10%)	4차(10%)	5차(10%)	6차(10%)	
							계약 시	계약 후 30일 이내	2026.08.11	2027.01.12	2027.06.10	2027.11.10	2028.04.11	2028.09.12	
59A	2층	5	188,178,900	252,521,100	-	440,700,000	10,000,000	34,070,000	44,070,000	44,070,000	44,070,000	44,070,000	44,070,000	44,070,000	132,210,000
	3층	7	191,039,800	256,360,200	-	447,400,000	10,000,000	34,740,000	44,740,000	44,740,000	44,740,000	44,740,000	44,740,000	44,740,000	134,220,000
	4층	7	193,943,400	260,256,600	-	454,200,000	10,000,000	35,420,000	45,420,000	45,420,000	45,420,000	45,420,000	45,420,000	45,420,000	136,260,000
	5~9층	35	196,804,300	264,095,700	-	460,900,000	10,000,000	36,090,000	46,090,000	46,090,000	46,090,000	46,090,000	46,090,000	46,090,000	138,270,000
	10~19층	70	199,707,900	267,992,100	-	467,700,000	10,000,000	36,770,000	46,770,000	46,770,000	46,770,000	46,770,000	46,770,000	46,770,000	140,310,000
	20층 이상	66	202,611,500	271,888,500	-	474,500,000	10,000,000	37,450,000	47,450,000	47,450,000	47,450,000	47,450,000	47,450,000	47,450,000	142,350,000
59B	2층	7	191,253,300	256,646,700	-	447,900,000	10,000,000	34,790,000	44,790,000	44,790,000	44,790,000	44,790,000	44,790,000	44,790,000	134,370,000
	3층	7	194,114,200	260,485,800	-	454,600,000	10,000,000	35,460,000	45,460,000	45,460,000	45,460,000	45,460,000	45,460,000	45,460,000	136,380,000
	4층	7	197,017,800	264,382,200	-	461,400,000	10,000,000	36,140,000	46,140,000	46,140,000	46,140,000	46,140,000	46,140,000	46,140,000	138,420,000
	5~9층	35	199,878,700	268,221,300	-	468,100,000	10,000,000	36,810,000	46,810,000	46,810,000	46,810,000	46,810,000	46,810,000	46,810,000	140,430,000
	10~19층	70	202,782,300	272,117,700	-	474,900,000	10,000,000	37,490,000	47,490,000	47,490,000	47,490,000	47,490,000	47,490,000	47,490,000	142,470,000
	20층 이상	66	205,685,900	276,014,100	-	481,700,000	10,000,000	38,170,000	48,170,000	48,170,000	48,170,000	48,170,000	48,170,000	48,170,000	144,510,000
74A	2층	4	225,584,100	302,715,900	-	528,300,000	10,000,000	42,830,000	52,830,000	52,830,000	52,830,000	52,830,000	52,830,000	52,830,000	158,490,000
	3층	4	229,213,600	307,586,400	-	536,800,000	10,000,000	43,680,000	53,680,000	53,680,000	53,680,000	53,680,000	53,680,000	53,680,000	161,040,000
	4층	4	232,800,400	312,399,600	-	545,200,000	10,000,000	44,520,000	54,520,000	54,520,000	54,520,000	54,520,000	54,520,000	54,520,000	163,560,000
	5~9층	20	236,387,200	317,212,800	-	553,600,000	10,000,000	45,360,000	55,360,000	55,360,000	55,360,000	55,360,000	55,360,000	55,360,000	166,080,000
	10~19층	40	240,016,700	322,083,300	-	562,100,000	10,000,000	46,210,000	56,210,000	56,210,000	56,210,000	56,210,000	56,210,000	56,210,000	168,630,000
	20층 이상	40	243,603,500	326,896,500	-	570,500,000	10,000,000	47,050,000	57,050,000	57,050,000	57,050,000	57,050,000	57,050,000	57,050,000	171,150,000
74B	2층	4	228,445,000	306,555,000	-	535,000,000	10,000,000	43,500,000	53,500,000	53,500,000	53,500,000	53,500,000	53,500,000	53,500,000	160,500,000
	3층	4	232,074,500	311,425,500	-	543,500,000	10,000,000	44,350,000	54,350,000	54,350,000	54,350,000	54,350,000	54,350,000	54,350,000	163,050,000
	4층	4	235,661,300	316,238,700	-	551,900,000	10,000,000	45,190,000	55,190,000	55,190,000	55,190,000	55,190,000	55,190,000	55,190,000	165,570,000
	5~9층	20	239,248,100	321,051,900	-	560,300,000	10,000,000	46,030,000	56,030,000	56,030,000	56,030,000	56,030,000	56,030,000	56,030,000	168,090,000
	10~19층	40	242,877,600	325,922,400	-	568,800,000	10,000,000	46,880,000	56,880,000	56,880,000	56,880,000	56,880,000	56,880,000	56,880,000	170,640,000
	20층 이상	40	246,464,400	330,735,600	-	577,200,000	10,000,000	47,720,000	57,720,000	57,720,000	57,720,000	57,720,000	57,720,000	57,720,000	173,160,000
74C	2층	2	228,231,500	306,268,500	-	534,500,000	10,000,000	43,450,000	53,450,000	53,450,000	53,450,000	53,450,000	53,450,000	53,450,000	160,350,000
	3층	2	231,861,000	311,139,000	-	543,000,000	10,000,000	44,300,000	54,300,000	54,300,000	54,300,000	54,300,000	54,300,000	54,300,000	162,900,000
	4층	2	235,447,800	315,952,200	-	551,400,000	10,000,000	45,140,000	55,140,000	55,140,000	55,140,000	55,140,000	55,140,000	55,140,000	165,420,000
	5~9층	10	239,034,600	320,765,400	-	559,800,000	10,000,000	45,980,000	55,980,000	55,980,000	55,980,000	55,980,000	55,980,000	55,980,000	167,940,000
	10~19층	20	242,664,100	325,635,900	-	568,300,000	10,000,000	46,830,000	56,830,000	56,830,000	56,830,000	56,830,000	56,830,000	56,830,000	170,490,000
	20층 이상	20	246,250,900	330,449,100	-	576,700,000	10,000,000	47,670,000	57,670,000	57,670,000	57,670,000	57,670,000	57,670,000	57,670,000	173,010,000
84A	2층	7	252,058,100	338,241,900	-	590,300,000	10,000,000	49,030,000	59,030,000	59,030,000	59,030,000	59,030,000	59,030,000	59,030,000	177,090,000
	3층	7	256,114,600	343,685,400	-	599,800,000	10,000,000	49,980,000	59,980,000	59,980,000	59,980,000	59,980,000	59,980,000	59,980,000	179,940,000
	4층	7	260,213,800	349,186,200	-	609,400,000	10,000,000	50,940,000	60,940,000	60,940,000	60,940,000	60,940,000	60,940,000	60,940,000	182,820,000
	5~9층	35	264,270,300	354,629,700	-	618,900,000	10,000,000	51,890,000	61,890,000	61,890,000	61,890,000	61,890,000	61,890,000	61,890,000	185,670,000
	10~19층	70	268,369,500	360,130,500	-	628,500,000	10,000,000	52,850,000	62,850,000	62,850,000	62,850,000	62,850,000	62,850,000	62,850,000	188,550,000
	20층 이상	70	272,426,000	365,574,000	-	638,000,000	10,000,000	53,800,000	63,800,000	63,800,000	63,800,000	63,800,000	63,800,000	63,800,000	191,400,000

약식 표기	층구분	세대수	공급금액				계약금(10%)		중도금(60%)						잔금(30%)
			대지비	건축비	부가세	분양가	1차	2차	1차(10%)	2차(10%)	3차(10%)	4차(10%)	5차(10%)	6차(10%)	
							계약 시	계약 후 30일 이내	2026.08.11	2027.01.12	2027.06.10	2027.11.10	2028.04.11	2028.09.12	
84B	2층	9	254,876,300	342,023,700	-	596,900,000	10,000,000	49,690,000	59,690,000	59,690,000	59,690,000	59,690,000	59,690,000	59,690,000	179,070,000
	3층	9	258,932,800	347,467,200	-	606,400,000	10,000,000	50,640,000	60,640,000	60,640,000	60,640,000	60,640,000	60,640,000	60,640,000	181,920,000
	4층	9	263,032,000	352,968,000	-	616,000,000	10,000,000	51,600,000	61,600,000	61,600,000	61,600,000	61,600,000	61,600,000	61,600,000	184,800,000
	5~9층	45	267,088,500	358,411,500	-	625,500,000	10,000,000	52,550,000	62,550,000	62,550,000	62,550,000	62,550,000	62,550,000	62,550,000	187,650,000
	10~19층	90	271,187,700	363,912,300	-	635,100,000	10,000,000	53,510,000	63,510,000	63,510,000	63,510,000	63,510,000	63,510,000	63,510,000	190,530,000
	20층 이상	89	275,244,200	369,355,800	-	644,600,000	10,000,000	54,460,000	64,460,000	64,460,000	64,460,000	64,460,000	64,460,000	64,460,000	193,380,000
84D	2층	2	253,936,900	340,763,100	-	594,700,000	10,000,000	49,470,000	59,470,000	59,470,000	59,470,000	59,470,000	59,470,000	59,470,000	178,410,000
	3층	2	257,993,400	346,206,600	-	604,200,000	10,000,000	50,420,000	60,420,000	60,420,000	60,420,000	60,420,000	60,420,000	60,420,000	181,260,000
	4층	2	262,092,600	351,707,400	-	613,800,000	10,000,000	51,380,000	61,380,000	61,380,000	61,380,000	61,380,000	61,380,000	61,380,000	184,140,000
	5~9층	10	266,149,100	357,150,900	-	623,300,000	10,000,000	52,330,000	62,330,000	62,330,000	62,330,000	62,330,000	62,330,000	62,330,000	186,990,000
	10~19층	20	270,248,300	362,651,700	-	632,900,000	10,000,000	53,290,000	63,290,000	63,290,000	63,290,000	63,290,000	63,290,000	63,290,000	189,870,000
	20층 이상	19	274,304,800	368,095,200	-	642,400,000	10,000,000	54,240,000	64,240,000	64,240,000	64,240,000	64,240,000	64,240,000	64,240,000	192,720,000
99B	2층	4	273,388,480	365,283,200	36,528,320	675,200,000	10,000,000	57,520,000	67,520,000	67,520,000	67,520,000	67,520,000	67,520,000	67,520,000	202,560,000
	3층	4	277,923,360	371,342,400	37,134,240	686,400,000	10,000,000	58,640,000	68,640,000	68,640,000	68,640,000	68,640,000	68,640,000	68,640,000	205,920,000
	4층	4	282,458,240	377,401,600	37,740,160	697,600,000	10,000,000	59,760,000	69,760,000	69,760,000	69,760,000	69,760,000	69,760,000	69,760,000	209,280,000
	5~9층	20	286,993,120	383,460,800	38,346,080	708,800,000	10,000,000	60,880,000	70,880,000	70,880,000	70,880,000	70,880,000	70,880,000	70,880,000	212,640,000
	10~19층	40	291,528,000	389,520,000	38,952,000	720,000,000	10,000,000	62,000,000	72,000,000	72,000,000	72,000,000	72,000,000	72,000,000	72,000,000	216,000,000
	20층 이상	36	296,062,880	395,579,200	39,557,920	731,200,000	10,000,000	63,120,000	73,120,000	73,120,000	73,120,000	73,120,000	73,120,000	73,120,000	219,360,000
126P	29층	2	575,524,860	768,977,400	76,897,740	1,421,400,000	10,000,000	132,140,000	142,140,000	142,140,000	142,140,000	142,140,000	142,140,000	142,140,000	426,420,000
127P	29층	1	581,557,870	777,038,300	77,703,830	1,436,300,000	10,000,000	133,630,000	143,630,000	143,630,000	143,630,000	143,630,000	143,630,000	143,630,000	430,890,000

※ 본주택은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주택으로 상기 주택형별 공급금액은 분양가 자율화에 따라 각 세대의 주택형별, 동별, 호별, 층별, 등 차등을 두어 적의 조정하여 책정한 금액입니다.

※ 상기 공급금액은 발코니 확장 및 추가 선택품목, 유상옵션 미포함 금액이며 별도 계약을 통해 선택이 가능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0조에 의거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구분하였으며, 동 규정에 의거 중도금 납부 일자는 건축공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은 부가가치세 적용 대상이 아니며, 전용면적 85㎡ 초과하는 주택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견본주택 분양사무실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공통 유의사항

- 상기 공급금액에는 각 주택형별 공히 인지세, 취득세, 소유권 이전등기비용 및 그 외 제세공과금이 미포함된 금액이며, 계약자 부담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추후 취득세 산정 시 추가 발코니 확장 비용과 추가 선택품목(유상옵션)이 합산되어 산정됩니다.)
-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에는 계단, 복도, 휴관 등 주거공용면적과 지하주차장, 관리/경비실, 주민공동시설, 기계/전기실 등의 그 밖의 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으며, 각 주택형별 지하주차장 및 기타공용부분에 대한 금액이 상기 분양금액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주택가격(분양금액)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며, 잔금은 입주(열쇠 불출입)전에 완납하여야 합니다.
- 당해 주택의 건축공정이 전체 공사비(부지매입비를 제외함)의 50% 이상이 투입된 때(다만 동별 건축공정이 30%이상 되어야 함)를 기준시점이라 하고 중도금은 기준시점을 전후 각 2회 이상 분할하여 받으며, 중도금 납부일자는 예정일자이며, 감리자의 건축공정 확인에 따라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기준시점 이전에는 중도금의 50%를 초과하여 받지 않음)
- 잔금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0조 규정에 의거 사용검사일을 기준으로 납부해야하며, 다만 임시사용승인을 얻어 입주하는 경우에는 전체 입주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금은 입주일에 납부하고, 전체 입주금액의 10%에 해당하는 잔금은 사용검사일 이후에 납부해야 합니다.
(대지권에 대한 등기는 공부정리절차 등의 이유로 실 입주일과 관계없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며 본 조항은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 중도금 및 잔금 납입일이 토요일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익일 은행영업일을 기준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연체료 납부 시 토요일일 또는 공휴일로 인해 납부가 지연되는 경우라도 납부지연에 따른 연체료수로 산정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중도금대출을 원할 경우 계약체결 후 지정된 중도금 대출협약 금융기관과 별도의 중도금대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단, 대출 미신청자와 본인의 부적격 사유로 인하여 대출이 불가한 계약자는 상기 납부 일정에 맞추어 본인이 직접 납부하여야 하며 미납 시 연체료가 부과됩니다.

- 상기 세대당 공급면적, 기타공용면적, 계약면적 및 대지의 공유지분은 공부정리절차, 법령, 행정관청의 규제, 지적 정리사업, 확정측량 및 사업시행 결과 등의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법령이 허용하는 오차 범위 내에서 증감이 있을 수 있고 허용오차 범위 내에서는 별도 정산하지 않기로 하며, 허용오차를 초과하는 증감이 있을 때는 계약서와 등기부상의 면적 차이에 대하여 분양 당시 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증감 부분에 대한 별도의 이자 없이 잔금 납부 시까지 상호 정산하기로 합니다.
- 입주 예정월이 단축될 경우 공급대금 납부일은 조정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단축되는 입주 예정월에 따라 공급대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단축된 기간에 대하여 선납할인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입주 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비선수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 분양가에 계상되지 않았거나, 변경되는 토지 관련 조세는 추후 부과되는 실과세금액을 입주자 잔금 납부 시 납부하여야 합니다.
- 상기 공급 세대의 청약접수는 동별, 층별, 호별 구분 없이 주택형별, 청약 순위별로 접수받아 당첨자를 선정하고 동호수를 배정합니다.
- 부적격자로 판명됨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서는 사업주체, 시공사 등에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 본 표시재산의 구조물 등 제반사항은 설계도면 등을 통하여 반드시 확인 후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그 밖의 인쇄물이나 구두약정의 내용은 인정하지 아니합니다.
- 각 동별 라인별 최하층 및 최고층이 상이하오니 반드시 동·호수 배치도를 확인하시고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의 지번(공급위치), 단지 명칭, 동 표시, 외관 색채, 부대시설, 문주, 조경시설물 등의 계획은 관계기관 심의 및 협의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청약당첨자(특별공급, 일반공급)는 공급계약 시 모든 제출서류는 원본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아파트의 판매시점에 따라 향후 분양조건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변경된 판매조건은 소급해서 적용하지 않습니다.
- 근린생활시설(단지 내 상가)은 별도 분양대상으로서 상기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본 주택은 정부가 출자한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분양보증을 받은 공동주택입니다.
- 본 표기재산의 구조물 등 제반 사항은 설계도면 등을 통하여 반드시 확인 후 계약하여야 하며, 확인하지 못한 사항으로 인한 이의제기 및 그 밖의 광고, 인쇄물이나 구두약정의 내용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견본주택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는 관계법령이 우선합니다.)

4

특별공급

▣ 특별공급 신청자격별·주택형별 공급세대수

(단위 : 세대)

구분 (약식표기)		59A	59B	74A	74B	74C	84A	84B	84D	99B	합계
기관추천 특별공급	국가유공자	2	2	1	1	1	2	3	-	-	12
	장기복무 제대군인	1	2	1	1	-	2	2	1	-	10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3	3	2	1	1	3	3	1	-	17
	중소기업 근로자	5	5	3	3	1	4	6	1	-	28
	장애인	경기도	4	3	2	2	4	5	1	-	22
		서울특별시	2	2	1	1	-	2	2	-	10
		인천광역시	1	1	-	1	1	2	1	-	8
	북한이탈주민	1	1	1	1	-	1	2	-	-	7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오산시 및 경기도 거주자 (50%)	10	10	6	6	3	10	13	3	6	67
	서울특별시 및 인천광역시 거주자 (50%)	9	9	5	5	3	10	12	2	5	60
신혼부부 특별공급		43	44	25	25	12	45	57	12	-	263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5	5	3	3	1	5	7	1	3	33
생애최초 특별공급		17	17	10	10	5	17	22	4	-	102
합계		103	104	60	60	29	106	136	27	14	639

※ 주택형별 특별공급대상 세대수는 공급세대수, 비율 등을 감안하여 배정 하였으며 배정 호수가 없는 주택형에 대하여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 [2025.03.3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3(특별공급 신청 요건 등에 관한 특례) 개정 사항]

조항	특별공급 신청유형	내용	유의사항
제1항 (배우자의 혼인 전 이력 배제)	신혼부부 생애최초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 전 당첨된 이력에 따른 청약 제한사항이 있더라도 이를 배제하고 청약신청 가능	- 적용횟수 제한 없음
	생애최초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 전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더라도 이를 배제하고 청약신청 가능(혼인 전 처분완료한 경우에 한함)	
제2항 (혼인특례)	신혼부부	청약신청자가 혼인 전 당첨된 이력에 따른 청약 제한사항(재당첨 제한, 특별공급 횟수 제한)이 있더라도 이를 배제하고 청약신청 가능	- 혼인특례는 본인 기준 1회에 한하여 적용 가능
제3항 (출산특례)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24.6.19. 이후 출생한 자녀(태아 또는 ‘24.6.19. 이후 출생한 사람을 입양한 경우 포함)가 있는 경우 청약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가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이력이 있더라도 제55조에 따른 특별공급 횟수 제한에도 불구하고 청약신청 가능 → 이 경우, 특별공급의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에도 불구하고 청약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기존주택 처분 조건*으로 청약신청 가능 * 기존주택 처분 조건 :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함 - 1. 기존 소유 주택의 소유권 처분 조건을 승낙할 것 - 2. 공급받은 주택의 입주 전에 기존 소유 주택의 소유권 처분에 관한 서류(「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4항 각 호)를 사업주체에게 제출할 것 - 3. 공급받은 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기존 소유 주택의 처분을 완료할 것 → 이 경우, 신혼부부 특별공급(공공주택 제외) 추첨제 청약신청자의 부동산가액 산정 시 청약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가액은 합산하지 않음	- 출산특례는 세대 기준 1회에 한하여 적용 가능 - 특별공급 횟수 제한 외 다른 청약 제한사항은 배제할 수 없음 - 청약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이력이 없는 경우 출산특례 적용 불가 - 청약신청자 및 배우자 외의 세대원이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이력이 있거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출산특례 적용 불가

- ※ 혼인특례 또는 출산특례를 사용하여 청약하려는 분은 청약신청 시 특례 사용여부를 선택하여야 하며, 청약신청 시 선택한 특례 사용여부는 변경·취소할 수 없습니다.
- 특례를 사용하여 본 주택의 특별공급 입주자 및 추가입주자로 선정될 경우,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 없이 특별공급 당첨자 및 특례 사용자로 명단 관리하며 향후 혼인특례 사용자 본인은 혼인특례를 재사용할 수 없고, 출산특례 사용자가 속한 세대는 출산특례를 재사용할 수 없습니다.
 - 특례를 사용하지 않아도 특별공급 입주자로 선정될 수 있는 분이 착오에 의해 특례를 사용한 경우라 하더라도 특례 사용 사실은 정정될 수 없으며, 특례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분이 특례를 사용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당첨이 취소되고 부적격 당첨자로 관리합니다.
- ※ 혼인특례와 출산특례를 동시에 사용하여 청약할 수 없습니다.
- ※ 기존주택 처분 조건으로 특별공급에 당첨된 분이 공급받은 주택의 소유권 이전 등기 시점까지 기존주택 처분 완료함을 증빙하지 못한 경우 공급계약이 취소되며, 입주가 불가합니다.

구분	내용	
공급기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따라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제1호 및 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 및 제55조의3을 적용하는 경우 특별공급 횟수 제한 예외)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1세대 2인 이상이 청약하여 한 명이라도 당첨될 경우 중복청약으로 모두 부적격 처리됩니다. 다만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2에 따라 부부는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에 대해 중복청약할 수 있으며, 중복당첨 시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구분	처리방법
	당첨자발표일이 다른 주택	당첨자발표일이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당첨자발표일이 늦은 당첨건은 부적격 처리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	부부가 중복당첨된 경우
		부부 외 세대원이 중복당첨된 경우

- 접수일시가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접수일시가 늦은 당첨건은 무효 처리
※ 분 단위 접수일시가 동일한 경우,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청약신청자의 당첨건이 유효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요건, 청약통장 자격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특별공급 당첨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도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간주),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외국인인 주민등록법상 세대원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자격을 필요로 하는 특별공급 청약이 불가합니다.																				
무주택 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특별공급 유형별로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 정의는 “1. 공통 유의사항” p.2 참조) - 기관추천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 생애최초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주 요건																				
청약통장 자격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특별공급 유형별로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기관추천(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철거주택 소유자(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청약통장 불필요)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특별공급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예치금액 이상인 분(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한함)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특별공급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12개월 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12개월 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한함)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2개월 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table><tr><th>구분</th><th>특별시 및 부산광역시</th><th>그 밖의 광역시</th><th>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th></tr><tr><td>전용면적 85㎡ 이하</td><td>300만원</td><td>250만원</td><td>200만원</td></tr><tr><td>전용면적 102㎡ 이하</td><td>600만원</td><td>400만원</td><td>300만원</td></tr><tr><td>전용면적 135㎡ 이하</td><td>1,000만원</td><td>700만원</td><td>400만원</td></tr><tr><td>모든면적</td><td>1,500만원</td><td>1,000만원</td><td>500만원</td></tr></table> ※ ‘지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따른 거주지역을 말함 ※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가능함	구분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그 밖의 광역시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전용면적 85㎡ 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모든면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구분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그 밖의 광역시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전용면적 85㎡ 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모든면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1	기관추천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 세대수의 10% 범위 : 114세대
---	--------------------------------	------------------------------------

구분	내용
대상자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 해당 기관의 추천 및 인정서류를 받으신 분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한 분 (단,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철거주택 소유자(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청약통장 불필요)
추천기관	■ 10년 이상 장기 복무 군인 : 국군복지단 복지사업운영과 ■ 국가유공자 등, 장기 복무 제대군인 : 국가보훈부 경기남부보훈지청 복지과 ■ 중소기업 근로자 :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성장지원과 ■ 장애인 : 경기도청 보건복지국 장애인복지과, 서울특별시청 장애인자립지원과, 인천광역시청 장애인복지과 ■ 북한이탈주민 : 통일부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교육기획과
당첨자 선정방법	■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자격요건을 갖춘 분은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해야 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의거하여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공급하므로 사업주체 및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은 대상자 선정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 기관추천 특별공급 확정대상자 및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분만 신청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특별공급 청약접수일에 청약신청 완료해야 합니다. (미신청 시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되며 계약 불가) ■ 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분과 함께 무작위 추첨으로 선정되므로,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구분	내용																																																															
대상자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오산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과거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신청가능함 ■ 만19세 미만의 자녀 2명 이상(태아, 입양자녀 포함)이 있는 분 - 자녀는 민법상 미성년자를 말하며, 자녀가 청약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미성년자임을 입증해야 함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한 분																																																															
당첨자 선정방법	■ 당첨자 선정 순서 : ①지역 → ②배점 → ③미성년 자녀수 → ④청약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분 → ⑤추첨 ■ ①지역 : 해당 시·도 거주자 50% (오산시 및 경기도 거주자) → 기타지역 거주자 50%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 주택형별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50%를 오산시 및 경기도 거주자에게 우선공급하며, 나머지 50%(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 포함)는 우선 공급 낙첨자와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거주자에게 공급함. - 우선공급(50%) 내 경쟁이 있을 경우 모집공고일 현재 오산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하며, 오산시 및 경기도 거주자가 우선공급(50%)에서 낙첨된 경우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거주자와 다시 경쟁하며 이때 지역 우선공급은 적용되지 않음. (경쟁이 있는 경우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우선순위 배점표'에 의한 점수순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함. (주민등록표초본 상 말소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시·도 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함)) - 동일 점수로 경쟁이 있을 경우 ①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② 자녀수가 같은 경우 공급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순으로 공급함. - 기타 본 입주자모집공고문 상에 표기되지 않은 사항은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영지침」에 따름 ■ ②배점																																																															
	<table><tr><th rowspan="2">배점항목</th><th rowspan="2">총 배점</th><th colspan="2">배점기준</th><th rowspan="2">비고</th></tr><tr><th>기준</th><th>점수</th></tr><tr><td>계</td><td>100</td><td></td><td></td><td></td></tr><tr><td rowspan="3">미성년 자녀수(1)</td><td rowspan="3">40</td><td>4명 이상</td><td>40</td><td rowspan="3">-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19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태아, 입양자녀 포함)</td></tr><tr><td>3명</td><td>35</td></tr><tr><td>2명</td><td>25</td></tr><tr><td rowspan="3">영유아 자녀수(2)</td><td rowspan="3">15</td><td>3명 이상</td><td>15</td><td rowspan="3">-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세 미만의 영유아 자녀(태아, 입양자녀 포함)</td></tr><tr><td>2명</td><td>10</td></tr><tr><td>1명</td><td>5</td></tr><tr><td rowspan="2">세대구성(3)</td><td rowspan="2">5</td><td>3세대 이상</td><td>5</td><td rowspan="2">- 청약신청자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무주택자로 한정)이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 청약신청자가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된 분</td></tr><tr><td>한부모 가족</td><td>5</td></tr><tr><td rowspan="3">무주택기간(4)</td><td rowspan="3">20</td><td>10년 이상</td><td>20</td><td rowspan="3">- 배우자의 직계존속(청약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정)도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무주택기간은 공급신청자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 청약신청자가 성년(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이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산정하되 청약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함)부터 무주택 기간 산정</td></tr><tr><td>5년 이상 ~ 10년 미만</td><td>15</td></tr><tr><td>1년 이상 ~ 5년 미만</td><td>10</td></tr><tr><td rowspan="3">해당 시·도 거주기간(5)</td><td rowspan="3">15</td><td>10년 이상</td><td>15</td><td rowspan="3">- 청약신청자가 성년자(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로서 수도권(서울·경기·인천)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을 산정 * 시는 광역시, 특별자치시 기준이고, 도는 도, 특별자치도 기준이며, 수도권의 경우 서울·경기·인천 전체를 해당 시·도로 봄</td></tr><tr><td>5년 이상 ~ 10년 미만</td><td>10</td></tr><tr><td>1년 이상 ~ 5년 미만</td><td>5</td></tr><tr><td>입주자저축 가입기간(6)</td><td>5</td><td>10년 이상</td><td>5</td><td>-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신청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명의 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 기준으로 산정 * 단,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함</td></tr></table>				배점항목	총 배점	배점기준		비고	기준	점수	계	100				미성년 자녀수(1)	40	4명 이상	40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19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태아, 입양자녀 포함)	3명	35	2명	25	영유아 자녀수(2)	15	3명 이상	15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세 미만의 영유아 자녀(태아, 입양자녀 포함)	2명	10	1명	5	세대구성(3)	5	3세대 이상	5	- 청약신청자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무주택자로 한정)이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 청약신청자가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된 분	한부모 가족	5	무주택기간(4)	20	10년 이상	20	- 배우자의 직계존속(청약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정)도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무주택기간은 공급신청자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 청약신청자가 성년(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이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산정하되 청약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함)부터 무주택 기간 산정	5년 이상 ~ 10년 미만	15	1년 이상 ~ 5년 미만	10	해당 시·도 거주기간(5)	15	10년 이상	15	- 청약신청자가 성년자(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로서 수도권(서울·경기·인천)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을 산정 * 시는 광역시, 특별자치시 기준이고, 도는 도, 특별자치도 기준이며, 수도권의 경우 서울·경기·인천 전체를 해당 시·도로 봄	5년 이상 ~ 10년 미만	10	1년 이상 ~ 5년 미만	5	입주자저축 가입기간(6)	5	10년 이상	5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신청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명의 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 기준으로 산정 * 단,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함
	배점항목	총 배점	배점기준				비고																																																									
			기준	점수																																																												
	계	100																																																														
	미성년 자녀수(1)	40	4명 이상	40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19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태아, 입양자녀 포함)																																																											
			3명	35																																																												
			2명	25																																																												
	영유아 자녀수(2)	15	3명 이상	15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세 미만의 영유아 자녀(태아, 입양자녀 포함)																																																											
			2명	10																																																												
			1명	5																																																												
	세대구성(3)	5	3세대 이상	5	- 청약신청자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무주택자로 한정)이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 청약신청자가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된 분																																																											
			한부모 가족	5																																																												
	무주택기간(4)	20	10년 이상	20	- 배우자의 직계존속(청약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정)도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무주택기간은 공급신청자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 청약신청자가 성년(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이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산정하되 청약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함)부터 무주택 기간 산정																																																											
5년 이상 ~ 10년 미만			15																																																													
1년 이상 ~ 5년 미만			10																																																													
해당 시·도 거주기간(5)	15	10년 이상	15	- 청약신청자가 성년자(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로서 수도권(서울·경기·인천)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을 산정 * 시는 광역시, 특별자치시 기준이고, 도는 도, 특별자치도 기준이며, 수도권의 경우 서울·경기·인천 전체를 해당 시·도로 봄																																																												
		5년 이상 ~ 10년 미만	10																																																													
		1년 이상 ~ 5년 미만	5																																																													
입주자저축 가입기간(6)	5	10년 이상	5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신청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명의 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 기준으로 산정 * 단,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함																																																												
※ (1), (2)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이혼·재혼의 경우 자녀가 청약신청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3) : 한부모 가족의 경우 한부모가족증명서로 확인 (4), (5)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주민등록표초본으로 확인	(3), (4) : 주택소유여부 판단 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를 적용 (6) : 입주자저축 순위확인서로 확인
--	--	--

3	신혼부부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 세대수의 23% 범위 : 263세대
---	--------------------------------	------------------------------------

구분	내용		
대상자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오산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혼인기간이 7년 이내(혼인신고일 기준, 동일인과의 재혼인 경우에는 이전 혼인기간을 포함)인 분 ■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분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한 분		
당첨자 선정방법	■ 당첨자 선정 순서 : ①소득구분 → ②순위 → ③지역 → ④미성년 자녀수 → ⑤추첨 ■ ①소득구분		
	단계	소득구분	내용
	1단계	신생아 우선공급 (25%)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00% 이하여야 함)
	2단계	신생아 일반공급 (10%)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초과 14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초과 16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40% 이하여야 함)
	3단계	우선공급 (25%)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00% 이하여야 함)
	4단계	일반공급 (10%)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초과 14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초과 16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40% 이하여야 함)
	5단계	추첨공급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40% 초과하나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초과),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
	※ 각 단계별 낙첨자는 다음 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되나, 2단계 신청자 중 낙첨자는 3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4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됨 ※ 1단계 및 2단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②순위를 고려하지 않고 ③지역 → ④미성년 자녀수 → ⑤추첨의 순서에 따라 선정 ※ 5단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순위와 관계없이 해당지역 거주자(오산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에게 우선공급하고,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으로 선정		
	■ ②순위		
	순위	내용	
1순위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태아, 입양자녀 포함)하여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분		
2순위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분		
■ ③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오산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 → 기타지역 거주자(오산시 1년 미만 거주자 및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거주자)			
비고	■ 자녀기준 - 자녀는 「민법」 제855조제2항에 따라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외의 출생자*를 포함 * 현재 혼인관계인 배우자와의 자녀를 혼인신고일 전에 출생신고한 경우 - (②순위 판단 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내 출산(태아, 입양자녀 포함)한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1순위 신청 가능 - (④미성년 자녀수 판단 시) 재혼인 경우 청약신청자의 전혼자녀(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입양한 미성년 자녀)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청약신청자 또는 재혼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 (④미성년 자녀수 판단 시) 재혼인 경우 재혼 배우자의 전혼자녀(재혼 배우자가 이전 혼인관계에서 출산·입양한 미성년 자녀)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청약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 등재된 경우에 한함
- (임신·입양) 입주 시 출산 및 입양 관련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하며,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임신, 불법 낙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음
 - * 출산의 경우 출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으로 판단
 - * 임신 상태가 입주지정기간 개시일까지 지속되는 경우에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통해 확인
 - * 입양의 경우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

■ 소득기준

- 소득 확인 시점

입주자모집공고일	상시근로자 근로소득 확인 시점	사업자 및 프리랜서 등 소득 확인 시점
2026.01.09.	(해당 세대의) 전전년도 소득	(해당 세대의) 전전년도 소득

- 2024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소득구분		비율	소득금액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신생아 우선공급, 우선공급	부부 중 한 명만 소득이 있는 경우	100% 이하	~7,205,312원	~8,578,088원	~9,031,048원	~9,733,086원	~10,435,124원	~11,137,162원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00% 초과 120% 이하	~8,646,374원	~10,293,706원	~10,837,258원	~11,679,703원	~12,522,149원	~13,364,594원
신생아 일반공급, 일반공급	부부 중 한 명만 소득이 있는 경우	100% 초과 140% 이하	7,205,313원~ 10,087,437원	8,578,089원~ 12,009,323원	9,031,049원~ 12,643,467원	9,733,087원~ 13,626,320원	10,435,125원~ 14,609,174원	11,137,163원~ 15,592,027원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초과 160% 이하	8,646,375원~ 11,528,499원	10,293,707원~ 13,724,941원	10,837,259원~ 14,449,677원	11,679,704원~ 15,572,938원	12,522,150원~ 16,696,198원	13,364,595원~ 17,819,459원
추첨공급	부부 중 한 명만 소득이 있는 경우	14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충족	10,087,438원~	12,009,324원~	12,643,468원~	13,626,321원~	14,609,175원~	15,592,028원~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충족	11,528,500원~	13,724,942원~	14,449,678원~	15,572,939원~	16,696,199원~	17,819,460원~

-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702,038) × (N-8)}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 (가구원수 산정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 단,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만큼 인정하되,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포함
- ※ (월평균 소득산정 대상) 가구원수에 포함되는 가구원 중 만19세 이상인 성년자(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 부양) 포함). 단, 세대원의 실종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 대상에서 제외
- ※ (월평균소득) 소득산정 대상자별 월평균소득을 합산한 금액.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총급여액(21번) 및 소득금액증명상의 지급받은 총액(수입금액)을 근로기간(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으로 나누어 산정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소득금액을 사업기간(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으로 나누어 산정
- ※ 소득산정은 청약신청자의 상황(계속적인 근로자 또는 사업자, 신규취업자, 이직자, 신규사업자, 프리랜서 등)에 따라 산정 방식이 달리 적용되므로 본인의 상황을 '주택청약 FAQ(국토교통부 발간)'를 확인하여야 하며, 소득증빙 자료가 제출되지 않으면 부적격 처리 또는 계약 포기로 간주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본인의 자격요건 및 증빙서류를 확인한 후 청약하시기 바람

■ 자산기준

- **부동산가액 산출기준**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 및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제4조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 부과점수의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출평균한 금액

	- 자산보유기준				
	구분	금액	내용		
	부동산 (건물+토지)	3억3,100만원 이하	건축물	- 건축물가액은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없는 경우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주택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주택 외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토지	-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의 공시가격(표준지·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한 금액 단, 아래 경우는 제외 * 「농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구·읍·면의 장이 관리하는 농지대장에 같은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 「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 「축산업」 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종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 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을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 - 건축물가액에 토지가액이 포함되지 않는 비주거용 건축물(상가, 오피스텔 등)의 부속토지도 토지가액에 포함(개별공시지가 기준)				

4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

공급 세대수의 3% 범위 : 33세대

구분	내용							
대상자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오산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 - 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함 ■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한 분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부양’의 의미는 같은 주민등록지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 것을 의미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분 - 청약통장 가입기간 12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당첨자 선정방법	■ 당첨자 선정 순서 : ①지역 → ②가점 → ③청약통장 가입기간 → ④추첨 ■ ①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오산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 → 기타지역 거주자(오산시 1년 미만 거주자 및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거주자) ■ ②가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가점제 적용기준)에 의거한 청약가점 점수를 기준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며, 청약가점 점수가 본인의 기재 오류에 의한 잘못으로 판명될 경우 부적격 당첨 처리될 수 있으며, 그 책임은 전적으로 청약신청자에게 있음 - 가점 산정기준 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2 나목)							
	가점항목		가점상한		가점구분	점수	가점구분	점수
	①무주택기간		32		만30세 미만 미혼자	0	8년 이상 ~ 9년 미만	18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20
					1년 이상 ~ 2년 미만	4	10년 이상 ~ 11년 미만	22
					2년 이상 ~ 3년 미만	6	11년 이상 ~ 12년 미만	24
					3년 이상 ~ 4년 미만	8	12년 이상 ~ 13년 미만	26
					4년 이상 ~ 5년 미만	10	13년 이상 ~ 14년 미만	28
					5년 이상 ~ 6년 미만	12	14년 이상 ~ 15년 미만	30
					6년 이상 ~ 7년 미만	14	15년 이상	32

			7년 이상 ~ 8년 미만	16		
	②부양가족수	35	0명	5	4명	25
			1명	10	5명	30
			2명	15	6명 이상	35
			3명	20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17	6개월 미만	1	8년 이상 ~ 9년 미만	10
			6개월 이상 ~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11
			1년 이상 ~ 2년 미만	3	10년 이상 ~ 11년 미만	12
			2년 이상 ~ 3년 미만	4	11년 이상 ~ 12년 미만	13
			3년 이상 ~ 4년 미만	5	12년 이상 ~ 13년 미만	14
			4년 이상 ~ 5년 미만	6	13년 이상 ~ 14년 미만	15
			5년 이상 ~ 6년 미만	7	14년 이상 ~ 15년 미만	16
			6년 이상 ~ 7년 미만	8	15년 이상	17
			7년 이상 ~ 8년 미만	9		
	※ 본인 청약가점 점수 = ① + ② + ③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청 시에는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 산정 시 배우자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를 합산하지 않음					
	■ ③청약통장 가입기간 : 가입기간은 순위기산일을 기준으로 함 -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함 * 단,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함					
비고	■ 무주택기간은 청약신청자 및 그 배우자, 피부양자(노부모) 및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산정 - 피부양자 및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에서 제외 ■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피부양자의 배우자 포함)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5	생애최초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3조)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 세대수의 9% 범위 : 102세대
---	--------------------------------	-----------------------------------

구분	내용
대상자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오산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분 - 모든 세대구성원이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를 말함 ※ (예외)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3에 따라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 전 주택을 소유하였다가 혼인 전 처분한 이력은 배제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분 - 청약통장 가입기간 12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아래 '가' 또는 '나'에 해당하는 분 - 가.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태아, 입양자녀 포함, 청약신청자가 혼인 중이 아닌 경우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자녀)가 있는 분 - 나. 1인 가구(혼인 중이 아니면서 미혼인 자녀도 없는 분) * 1인 가구는 추첨제로만 신청가능하며, '단독세대'와 '단독세대가 아닌 분'으로 구분됨 * '단독세대'란, 단독세대주이거나, 동거인이나 형제자매 등 세대구성원에 해당하지 않는 분과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를 말하며, 단독세대 신청자는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형에 한하여 신청가능함 * '단독세대가 아닌 분'이란, 직계존속과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를 말함 ■ 「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분 * 과거 1년 내에 소득세(「소득세법」 제19조 또는 제20조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것을 말함)를 납부한 분을 포함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충족	11,528,500원~	13,724,942원~	14,449,678원~	15,572,939원~	16,696,199원~	17,819,460원~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702,038) x (N-8)}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가구원수 산정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 단,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만큼 인정하되,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포함 ※ (월평균 소득산정 대상) 가구원수에 포함되는 가구원 중 만19세 이상인 성년자(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 부양) 포함). 단, 세대의원 실종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 대상에서 제외 ※ (월평균소득) 소득산정 대상자별 월평균소득을 합산한 금액.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총급여액(21번) 및 소득금액증명상의 지급받은 총액(수입금액)을 근로기간(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으로 나누어 산정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소득금액을 사업기간(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으로 나누어 산정 ※ 소득산정은 청약신청자의 상황(계속적인 근로자 또는 사업자, 신규취업자, 이직자, 신규사업자, 프리랜서 등)에 따라 산정방식이 달리 적용되므로 본인의 상황을 “주택청약 FAQ(국토교통부 발간)”를 확인하여야 하며, 소득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않으면 부적격처리 또는 계약포기로 간주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본인의 자격요건 및 증빙서류를 확인한 후 청약하시기 바람 ■ 자산기준 - 부동산가액 산출기준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 및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제4조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 부과점수의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출평균한 금액 - 자산보유기준								
구분		금액	내용					
부동산 (건물+토지)	3억3,100만원 이하	건축물	- 건축물가액은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없는 경우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건축물 종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주택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단독주택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주택 외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토지	-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의 공시가격(표준지·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한 금액 단, 아래 경우는 제외 * 「농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구·읍·면의 장이 관리하는 농지대장에 같은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 「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 「축산업」 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중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 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을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 - 건축물가액에 토지가액이 포함되지 않는 비주거용 건축물(상가, 오피스텔 등)의 부속토지도 토지가액에 포함(개별공시지가 기준)					

5 일반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

구분	내용
대상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오산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인 분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 ■ 순위별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만족하는 분
청약통장 자격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1순위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예치금액 이상인 분(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한함)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 2순위 : 예치금액과 관계없이 청약예금·청약부금·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분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구분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그 밖의 광역시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전용면적 85㎡ 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모든면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 '지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따른 거주지역을 말함
 ※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가능함

■ 당첨자 선정 순서

- 1순위 가점제 : ①지역 → ②가점 → ③청약통장 가입기간 → ④추첨
 - 1순위 추첨제 : ①지역 → ②무주택자 우선공급 → ③추첨
 - 2순위 : ①지역 → ②추첨

■ ①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오산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 → 기타지역 거주자(오산시 1년 미만 거주자 및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거주자)

■ ②가점

- 전용면적별 1순위 가점제/추첨제 적용비율

구분	가점제	추첨제
전용면적 60㎡ 이하	40%	60%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	40%	60%
전용면적 85㎡ 초과	-	100%

- 가점 산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2 나목)

당첨자
선정방법

가점항목	가점상한		가점구분	점수	가점구분	점수
① 무주택기간	32		만30세 미만 미혼자 또는 유주택자	0	8년 이상 ~ 9년 미만	18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20
			1년 이상 ~ 2년 미만	4	10년 이상 ~ 11년 미만	22
			2년 이상 ~ 3년 미만	6	11년 이상 ~ 12년 미만	24
			3년 이상 ~ 4년 미만	8	12년 이상 ~ 13년 미만	26
			4년 이상 ~ 5년 미만	10	13년 이상 ~ 14년 미만	28
			5년 이상 ~ 6년 미만	12	14년 이상 ~ 15년 미만	30
			6년 이상 ~ 7년 미만	14	15년 이상	32
			7년 이상 ~ 8년 미만	16		
② 부양가족수 (청약신청자 본인 제외)	35		0명	5	4명	25
			1명	10	5명	30
			2명	15	6명 이상	35
			3명	20		
③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17	본인	6개월 미만	1	8년 이상 ~ 9년 미만	10

			6개월 이상 ~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11
			1년 이상 ~ 2년 미만	3	10년 이상 ~ 11년 미만	12
			2년 이상 ~ 3년 미만	4	11년 이상 ~ 12년 미만	13
			3년 이상 ~ 4년 미만	5	12년 이상 ~ 13년 미만	14
			4년 이상 ~ 5년 미만	6	13년 이상 ~ 14년 미만	15
			5년 이상 ~ 6년 미만	7	14년 이상 ~ 15년 미만	16
			6년 이상 ~ 7년 미만	8	15년 이상	17
			7년 이상 ~ 8년 미만	9		
		배우자	배우자 없음 또는 배우자 통장미가입	0	1년 이상 ~ 2년 미만	2
			1년 미만	1	2년 이상	3

※ 본인 청약가점 점수 = ① + ② + ③

※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2 나목에 따라 가점제 청약 시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에 배우자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를 합산할 수 있습니다.

- 배우자의 통장가입기간 점수표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50% 적용)	점수
1년 미만	6개월 미만	1점
1년 이상 ~ 2년 미만	6개월 이상 ~ 1년 미만	2점
2년 이상	1년 이상	3점

-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는 전체 가입기간의 50%에 해당하는 기간의 점수로 계산하며, 그 점수가 3점을 초과하는 경우 최대 3점까지만 인정
- 본인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와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 합산 시 17점을 초과하는 경우 최대 17점까지만 인정
- 청약 전 반드시 배우자 본인이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순위확인서를 발급하여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를 확인해야 하며, 향후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시 배우자의 순위확인서 및 배우자의 당첨사실 확인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하여 적격함을 증명해야 함
 - * 순위확인서 발급 : 청약홈 > 청약자격확인 > 청약통장 > 순위확인서 발급 >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 청약하고자 하는 주택명 선택
 - * 당첨사실 확인서 발급 : 청약홈 > 청약소통방 > APT당첨사실 조회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배우자의 청약통장이 가입되어 있으나, 순위확인서 발급 전 배우자의 청약통장을 해지한 경우에는 순위확인서 발급이 불가하므로 적격증빙을 위하여 당첨자 발표 이후 계약 전까지 배우자의 청약통장 유지 필요

- 가점제 적용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1)

구분	내용
①무주택기간 적용기준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원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함 2)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제9호 각 목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소형·저가주택)의 가격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산정. 다만, 2007년 9월 1일 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 9월 1일 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 중 2007년 9월 1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름 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후에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 :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다) 분양권등의 경우 :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에 대한 가격은 제외) 3) 무주택기간은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하고, 주택공급신청자의 연령이 만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하되, 만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기산함. 이 경우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한다)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 4) 확인방법: (1)주민등록표등본(배우자 분리세대 시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2)가족관계증명서,

	(3)혼인관계증명서(만30세 이전에 혼인한 경우 혼인신고일 확인), (4)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②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	1)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세대원을 의미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부양'의 의미는 같은 주민등록지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 것을 의미함 2)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은 주택공급신청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인 경우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다만,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으며,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직계존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음 - 외국인 직계존속 - 내국인 직계존속이라도 요양시설(「주민등록법」 제12조에 따라 주민등록을 하는 노인요양시설을 말함) 및 해외에 체류 중(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인 경우 ※ 2019.11.0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에 따라 부양가족을 산정 시에는 제53조제6호를 적용하지 않으므로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음 3) 자녀(부모가 모두 사망한 손자녀 포함)는 미혼으로 한정 - 주택공급신청자의 만30세 이상인 직계비속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봄 - 재혼배우자의 자녀는 주택공급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봄 4) 이혼한 자녀는 '미혼인 자녀'로 보지 않으며, 외국인인 직계비속과 아래의 경우처럼 해외 체류 중인 직계비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음 - (만30세 미만)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 (만30세 이상)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5) 확인방법: (1)주민등록표등·초본, (2)가족관계증명서, (3)만18세 이상 성년자녀 부양가족인정 신청 시 추가확인서류 - 만18세 이상 ~ 만30세 미만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만30세 이상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초본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을 산정 * 단,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함												
	주택소유여부 및 무주택기간 산정기준	① 무주택기간 적용기준 및 ② 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에 따라 주택소유 여부를 판정하거나 무주택기간을 산정하려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23조제4항 및 제53조에 따름												
■ ②무주택자 우선공급 : 1순위 추첨제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다음 단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 <table border="1"> <thead> <tr> <th>단계</th><th>비율</th><th>내용</th></tr> </thead> <tbody> <tr> <td>1단계</td><td>추첨제 물량의 75%</td><td>무주택세대구성원</td></tr> <tr> <td>2단계</td><td>1단계 공급 후 잔여물량</td><td>무주택세대구성원과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td></tr> <tr> <td>3단계</td><td>2단계 공급 후 잔여물량</td><td>1순위에 해당하는 분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분</td></tr> </tbody> </table>			단계	비율	내용	1단계	추첨제 물량의 75%	무주택세대구성원	2단계	1단계 공급 후 잔여물량	무주택세대구성원과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	3단계	2단계 공급 후 잔여물량	1순위에 해당하는 분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분
단계	비율	내용												
1단계	추첨제 물량의 75%	무주택세대구성원												
2단계	1단계 공급 후 잔여물량	무주택세대구성원과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												
3단계	2단계 공급 후 잔여물량	1순위에 해당하는 분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분												
■ ③청약통장 가입기간 : 가입기간은 순위기산일을 기준으로 함 -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함 * 단,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함														
비고	■ 1순위 가점제 청약 시 유의사항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2년 이내 가점제로 당첨된 분 및 그 세대원은 가점제 청약이 불가하며, 가점제로 청약하여 당첨 시 부적격 처리됩니다. - 1순위 가점제 당첨 시 가점제 당첨 제한자로 관리되어, 당첨자 및 그 세대원은 당첨자발표일로부터 2년간 다른 민영주택의 1순위 가점제 청약이 불가합니다.													

6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4항 및 제53조)

검색대상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세대원 전원																				
주택의 범위	건물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와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분양권등																				
주택처분 기준일	1.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처리일 2의2. 분양권등에 관한 계약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공급계약체결일 2의3. 제2조제7호다목에 따른 분양권등의 매매계약서 가. 분양권등의 매매 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경우에는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 나. 분양권등을 증여나 그 밖의 사유로 처분한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상 명의변경일 3.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경우	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6.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신청자 제외) - 가점제의 부양가족 인정 여부 판단 시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에서 제외함 7.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 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8. 무허가건물(중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해야 함) 9.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해당 목에서 정하는 주거전용면적 및 가격 요건을 갖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가.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나목3)에 해당하지 않는 것: 주거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서 별표 1 제1호가목2)에 따른 가격이 1억원(수도권은 1억6천만원) 이하일 것 나. 다음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로서 별표 1 제1호가목2)에 따른 가격이 3억원(수도권은 5억원) 이하일 것 1) 「주택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 2)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3)에 해당하지 않는 것 3)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																				
	<table><tr><th>조항</th><th>주택 또는 분양권등의 유형</th><th>주거전용면적</th><th>수도권</th><th>비수도권</th></tr><tr><td>제53조제9호가목</td><td>아파트(도시형 생활주택 제외)</td><td>60㎡ 이하</td><td>1억 6천만원</td><td>1억원</td></tr><tr><td rowspan="3">제53조제9호나목</td><td>단독주택</td><td rowspan="3">85㎡ 이하</td><td rowspan="3">5억원</td><td rowspan="3">3억원</td></tr><tr><td>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td></tr><tr><td>도시형 생활주택</td></tr></table>	조항	주택 또는 분양권등의 유형	주거전용면적	수도권	비수도권	제53조제9호가목	아파트(도시형 생활주택 제외)	60㎡ 이하	1억 6천만원	1억원	제53조제9호나목	단독주택	85㎡ 이하	5억원	3억원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조항	주택 또는 분양권등의 유형	주거전용면적	수도권	비수도권																	
제53조제9호가목	아파트(도시형 생활주택 제외)	60㎡ 이하	1억 6천만원	1억원																	
제53조제9호나목	단독주택	85㎡ 이하	5억원	3억원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10. 제27조제5항 및 제28조제10항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 11. 임차인으로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사람이 임차주택을 경매 또는 공매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그 주택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함 가. 주택가격이 1억5천만원(수도권은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이 경우 주택가격의 산정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가목2)를 준용함)																				

	나.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12. 주택공급 신청자가 임차인으로서 거주하던 임차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생애 최초로 취득한 경우로 한정한다)한 주택(「주택법 시행령」 제2조 각 호 및 제3조제1항제2호·제3호에 따른 주택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일 것 나. 주거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서 그 취득가격(「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한 가격을 말한다)이 2억원(수도권은 3억원) 이하일 것 다. 해당 주택의 취득일(제23조제4항제1호 또는 제2호 중 빠른 날을 말한다) 전일까지 1년 이상 해당 주택에 거주했을 것
--	---

7 청약신청 방법 및 구비서류

■ 청약신청 일정 및 장소

구분	신청대상자	신청일시	신청방법	신청장소
특별공급	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생애최초, 노부모부양	2026.01.20.(화) (청약Home 인터넷 : 09:00~17:30) (건본주택 : 10:00~14:00)	인터넷 청약 (PC 또는 스마트폰)	• (PC·모바일) 청약홈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 청약홈 • (현장접수) 건본주택 - 경기도 오산시 내삼미동 272-2
일반공급	1순위	2026.01.21.(수) 09:00~17:30		• (PC·모바일) 청약홈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 청약홈 • (현장접수) - 청약통장 가입은행 창구
	2순위	2026.01.22.(목) 09:00~17:30		

- ※ 스마트폰앱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청약홈” 검색
- 스마트폰앱을 이용하여 청약할 경우에는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공동인증서를 청약홈 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거나,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KB국민인증서, 토스인증서, 신한인증서, 카카오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특별공급은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장애인 등)에 한하여 건본주택 방문접수(은행창구 접수 불가)가 허용됩니다.
(방문 접수시간 : 10:00~14:00)
- ※ 일반공급의 경우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나 정보취약계층(고령자, 장애인 등)에 한하여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에서 청약 가능합니다.
(창구 접수시간 : 09:00~16:00. 단, 은행 영업점별 업무 시간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신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시 가점항목 등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체결 시 주민등록표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주택공급 신청내용과 청약자격을 대조한 후 청약신청 내용과 청약자격이 일치할 경우에 계약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 방법 및 절차(PC·모바일)

- 경로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 → 신청유형 및 주택명 선택 → 청약자격 등 입력 → 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 → 청약신청 완료
- 청약신청 시간* : 09:00~17:30
*17:30까지 청약신청 완료해야 하며, 청약 신청 진행 중 17: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되지 않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 취소 방법 및 절차(PC·모바일)

- 경로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 → 청약취소 → 취소하고자 하는 신청내역 선택 → 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 → 청약신청 취소 완료
- 청약신청 취소 가능시간 : 청약신청일 당일 09:00~17:30
* 청약신청일 당일 17:30까지 청약신청 취소를 완료해야 하며, 청약신청일 당일 17:30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청약신청 취소가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 방법 및 절차(현장접수, 정보취약계층에 한함)

- 현장접수 시 청약자격에 대한 확인(검증)없이 청약신청자가 기재한 사항만으로 접수를 받으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해야 합니다.
- 특별공급 : 특별공급 청약신청일 당일 10:00~14:00 사업주체 건본주택 방문을 통하여 신청가능합니다.
- 일반공급 : 일반공급 청약신청일 당일 09:00~16:00 청약통장 가입은행 창구 방문을 통하여 신청가능합니다.
* 단, 은행 영업점별 업무 시간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신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일반공급 현장접수 시 필요서류

필요서류		
본인 신청 시	- 주택공급신청서(청약통장 가입은행 비치) -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 포함) 통장 - 예금인장 또는 본인 서명	
제3자 대리신청 시 추가서류 (배우자 포함)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서류 외에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해야 함	
	인감증명 방식	본인서명확인 방식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서는 제출 생략)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 접수장소 비치)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 청약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 상의 서명) 1통 - 청약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 상기 제증명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접수함 (단,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서류 제출)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산일 산정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해야 함

※ 주택공급신청서의 단말기 「(전산)인지란」의 인자된 내용과 신청내용을 확인해야 하며, 동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당일 내로 공급신청서를 접수한 영업점에 정정 신청해야 함

※ 본인 및 배우자가 인장 날인 없이 신청인(서명)으로 주택공급신청서를 작성한 경우 신청자 성명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하며, 주택공급신청서의 [서명]은 접수받은 직원 입회하에 신청인이 직접 기재해야 함

■ 청약홈에서는 청약자의 편의를 위하여 아래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마이데이터 (‘청약도움e’) 서비스	- 청약신청 단계에서 본인정보 제3자 제공 요구 시, 주민등록표등·초본 등 행정정보를 수신하여 세대주 여부 및 해당지역 거주기간 등 청약신청 자격요건을 확인하여 드리는 서비스입니다. - 서비스 이용은 선택사항이며, 통신망 연결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 및 연계 기관(정보 보유기관)의 상황 등에 따라 서비스 제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이용방법 : 청약신청 → APT → 청약홈 마이데이터(‘청약도움e’) 서비스 팝업 → 본인정보 제3자 제공 요구	
공고단지 청약연습	- 공고일 다음날부터 일반공급 청약신청 전날까지 세대원을 등록하고, 해당 세대원(성년자에 한함)의 개인정보 동의를 완료되면, 실제 청약하고자 하는 모집공고에 대한 신청자 및 세대원의 청약자격(주택소유 및 각종 청약제한사실)을 미리 알아볼 수 있어, 부적격자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지원합니다. - 세대원 등록방법 : 청약자격확인 → 세대구성원 등록/조회 및 세대구성원 동의 - 이용방법 : 공고단지 청약연습 → 공고단지 청약연습 신청(단, 세대구성원 등록 생략 시 신청자 본인에 대해서만 청약자격 검증)	
당첨자발표 서비스	청약홈	- 조회방법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당첨조회 - 조회기간 : 2026.01.28.(수) ~ 2026.02.06.(금) (10일간) - 조회기간(10일)이 경과하더라도 ①마이페이지 → 청약제한사항 확인 또는 ②청약소통방 → APT당첨사실 조회를 통해 당첨내역 확인 가능 - 당첨 결과는 착오 안내 가능성이 있으므로 유선 및 서면 등 별도 통지하지 않습니다.
	문자	제공일시 : 2026.01.28.(수) 08:00 (제공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제공대상 : 청약 신청 시 휴대폰 번호를 등록하고 SMS 수신에 동의한 당첨(예비)자 * 당첨자 발표 안내 문자에는 스미싱 등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별도의 링크(URL)를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의 링크(URL) 또는 전화번호는 절대 누르지 않는 등 유사한 스미싱 문자에 대해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통신 환경 등에 따라 문자가 정상적으로 수신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당첨여부는 반드시 청약홈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8 당첨자발표 및 서류제출

■ 당첨자발표 및 서류제출 일정

구분	신청대상자	당첨자(동·호수) / 예비입주자(예비순번) 발표	당첨자 서류제출
특별공급	기관추천,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생애최초, 노부모부양	- 일시 : 2026.01.28.(수) - 확인방법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www.applyhome.co.kr) 또는 스마트폰 앱에서 개별조회	- 제출대상 : 특별공급/일반공급 당첨자 (예비입주자 추후 별도 통보) - 제출기간 : 2026.01.29.(목) ~ 2026.02.03.(화) [6일간] - 접수방법 : 방문 접수 - 제출장소 : 북오산자이 리버블시티 견본주택 (경기도 오산시 내삼미동 272-2)
일반공급	1순위, 2순위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KB국민인증서, 토스인증서, 신한인증서, 카카오인증서로 로그인 후 조회 가능	※당첨유형별 제출서류는 당첨자발표일 이후 분양홈페이지(https://www.xi.co.kr/osan)를 통하여 안내 예정이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당첨자명단은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당첨자 및 동·호수 확인 시에는 인증서 로그인 후 조회 가능함을 알려드리오니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다만, 고령자 및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으로서 인터넷 청약이 불가하여 견본주택(특별공급) 또는 은행창구(일반공급) 등에 방문하여 청약 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정보입력(주택명, 주택형, 성명, 생년월일 입력) 조회가 가능하나 정보 오입력 등의 경우 부정확한 내역이 조회될 수 있으므로 인증서를 발급받으신 분은 반드시 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정확한 당첨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청약신청 건에 대해서는 '정보입력'에 의한 당첨내역 조회가 불가(당첨여부에 관계없이 '당첨내역이 없음'으로 표기됨)하오니 반드시 인증서로 로그인하시어 당첨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당첨자 및 동·호수, 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발표 시 개별서면 통지는 하지 않으니 상기 장소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전화문의는 착오 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 당첨자의 서류제출 및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자(정당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자로 재확인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
- ※ 공급계약체결 전 입주자자격 확인 및 계약일에 계약체결 소요시간 단축을 위한 일정이오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 ※ 예비입주자(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의 동·호수 배정 추첨 및 서류제출, 계약체결 등의 일정 및 방법은 추후 별도 안내 예정입니다.

■ 당첨자(예비입주자 포함) 자격확인 제출서류

■ [표1-1] 특별공급 자격확인 제출서류 (※당첨자는 서류제출 기간 내 제출되어야 하며, 견본주택(현장접수) 청약신청자는 특별공급 신청일에 해당서류를 완비하여 제출하여야 함.)

- ※ 특별공급 신청당일 견본주택 내 현장접수는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고령자,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 등에만 해당하며, 해당 특별공급 서류를 완비 후 신청자격 여부 확인 후 적격한 경우에만 접수 가능합니다.
- ※ 인터넷 청약신청자는 당첨자에 한하여 서류제출기간 내 해당 서류접수를 완료하여 자격 여부를 확인받아야 합니다.
- ※ 해외근무자(단신부임) 청약신청 및 당첨자는 [표1-1] '특별공급 공통서류' 외 추가 제출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특별공급 공통서류	○		주민등록표등본 (전체포함)	청약자	•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 사유,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으로 발급
	○		주민등록표초본 (전체포함)		•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사항·사유 및 발생일(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전체포함'으로 발급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20.12.21. 이후 발급한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를 함께 구비) ※모바일 신분증 불가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인터넷 청약 신청한 당첨자는 계약 시 제출 • 견본주택 방문 청약신청자(정보취약계층)는 청약접수 및 계약 시 지참 필수 ※본인발급용(본인 직접 발급)에 한함 (발급용도 : 당첨자격 확인 및 아파트 계약)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대리인 청약신청(정보취약계층) 및 계약 불가 ※정부24 온라인인감증명서 제출 시 발급용도 및 제출처 정확히 기재 [발급용도: 당첨자격 확인 및 아파트 계약 / 제출처 : '북오산자이 리버블시티']
		○	인감도장		• 인터넷 청약 신청한 당첨자는 계약 시 지참 필수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 건본주택 방문 청약신청자(정보취약계층)는 청약접수 및 계약 시 지참 필수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제출 시 생략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하여 '상세'로 발급
	○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관계 확인 *본인 및 배우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하여 '상세'로 발급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기 (기관추천 대상자는 제외) ※기록대조일: 생년월일 ~ 현재로 설정(행정복지센터 또는 정부24), 출입국 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	청약통장순위(가입)확인서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홈페이지에서 청약통장순위확인서 발급 ※인터넷 청약자 및 기관추천 특별공급 중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은 제외
		○	복무확인서		•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자격으로 청약 신청한 경우 [군복무 기간(10년 이상) 명시]
		○	주민등록표등본 (전체포함)		• 주민등록표등본 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상기 '청약자' 등본 발급 유의사항과 같이 '전체포함'으로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배우자	• 재혼가정의 자녀(청약자의 친자녀가 아닌 자녀)로서 청약자(당첨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 •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주민등록표등본 상 당첨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 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 *본인 및 배우자,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하여 '상세'로 발급
		○	전세피해자 확인서류	청약자 또는 세대원	• 전세피해자 낙찰주택 소유기간(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그 임대주택을 경매 또는 공매로 낙찰받아 소유한 기간)을 무주택 기간으로 인정받기 위한 경우 ※ 단, 낙찰 주택이 주거전용면적 85㎡이하이면서, 주택공시가격이 1억5천만원(수도권 3억원) 이하인 경우에만 해당 ① 해당 임차주택 임대차계약서 사본 ② 낙찰 증빙서류 : 매각허가결정서 사본 또는 매각결정통지서 사본 ③ 해당 임차주택 등기사항증명서 원본 ④ 채권자의 확인서류 : 배당표, 배당요구신청서 등의 사본 또는 배분계산서 등의 사본
해외근무자 (단신부임)	○		해외체류 관련 증빙서류	청약자	• 국내기업 및 기관소속 해외 주재원 및 출장자인 경우 : 파견 및 출장명령서, 재직증명서 • 해외 취업자 및 사업체 운영자인 경우 : 현지 관공서에서 발급받은 사업 또는 근로 관련 서류, 취업 또는 사업비자 발급내역 등 • 근로자가 아닌 경우 (※반드시 제출) : ① 비자 발급내역 ② 계약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 ※유학, 연수, 관광, 단순체류자의 경우 생업사정을 인정할 수 없으며, 생업관련 증빙서류 제출이 불가능한 자 또한 인정 불가 ※해외에서 발급받은 서류의 경우 번역공증 첨부 필수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배우자 및 세대원 전원	• 청약자가 해외에 체류 중인 기간 중 세대원이 해외에 일정기간 체류하지 않았다는 사실 여부 확인 ※기록대조일 : 생년월일 ~ 현재로 설정(행정복지센터 또는 정부24), 출입국 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	주민등록표초본 (전체포함)	직계존속	• 배우자 및 자녀가 없는 자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직계존속과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사항, 변동사유 및 발생일,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전체포함'으로 발급
기관추천	-	-	특별공급 대상자 증명서류	청약자	• 해당 기관의 추천서 (기관추천 명단 확인으로 갈음) *해당 기관의 추천자 확인은 사업주체(건본주택)에서 가능
다자녀가구		○	한부모가족증명서	청약자	• 여성가족부의 「한부모가족지원법」에서 정하는 한부모 가족으로 지정된 지 5년이 경과된 경우
		○	임신진단서 또는 출생증명서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	청약자 또는 배우자	• 태아를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임신 중 태아를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임신진단서(국내의료기관으로 한정) 제출 *임신진단서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 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임신확인서' 인정 안됨.) *출산이행 확인각서(양식) 건본주택 비치
		○	입양관계증명서 (상세)		• 입양의 경우
		○	주민등록표초본 (전체포함)	직계존속	• 3세대 이상 세대구성 배점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주민등록표등본 상 공급신청자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여부 확인)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사항, 변동사유 및 발생일,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전체포함'으로 발급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직계비속	• 자녀의 연령이 만18세 이상~만19세 미만인 경우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부 공개하여 '상세'로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입양의 경우 해당 자녀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하여 '상세'로 발급
		○	기존주택 처분관련 서약서	청약자	• 출산특례 청약신청자 중 기존주택 처분조건 당첨자인 경우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2항제4호에 따른 서약서 / 건본주택 비치
신혼부부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청약자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과거 이력 포함하여 발급)으로 청약자(당첨자) 및 성년자(만19세 이상)인 세대원 전원 제출 (발급처:국민건강보험공단 T.1577-1000) *분리된 배우자와 같은 주민등록표등본 상 등재된 배우자 및 성년자(만19세 이상)인 세대원 전원 필수
	○		소득증빙서류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청약자(당첨자) 및 성년자(만19세 이상)인 세대원 전원의 소득증빙서류 [※아래표-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증빙서류 참조] *분리된 배우자와 같은 주민등록표등본 상 등재된 배우자 및 성년자(만19세 이상)인 세대원 전원 필수
		○	임신진단서 또는 출생증명서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	청약자 또는 배우자	• 태아를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임신 중 태아를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임신진단서(국내의료기관으로 한정) 제출 *임신진단서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 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임신헌인서' 인정 안됨) *출산이행 확인각서(양식) 건본주택 비치
		○	입양관계증명서		• 입양의 경우
	○		부동산소유현황	청약자 및 세대원 전원	•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신청한 경우로 청약자와 세대구성원 전원 서류 제출 [※아래표-신혼부부 /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산기준 입증서류 참조]
	○		주민등록표초본 (전체포함)	청약자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 당첨자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당첨자 또는 당첨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 상에 등재되어 있음을 확인하여 소득산정 시 당첨자의 가구원수에 포함하는 경우 *현재로부터 과거 1년 이상의 주소변동사항을 포함하여 발급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사항, 변동사유 및 발생일,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전체포함'으로 발급
	○		주민등록표초본 (전체포함)	배우자	• 가구원에 해당하는 직계존속이 분리된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 상 등재되어 있는 경우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사항, 변동사유 및 발생일,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전체포함'으로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직계비속	• 배우자와 혼인 전 출생자녀를 혼인 중 출생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신생아 우선공급으로 신청한 해당 자녀 • 입양인 경우 해당 자녀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하여 '상세'로 발급
		○	기존주택 처분관련 서약서	청약자	• 출산특례 청약신청자 중 기존주택 처분조건 당첨자인 경우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2항제4호에 따른 서약서 / 건본주택 비치
생애최초	○		소득세납부 입증서류	청약자	• 청약자(당첨자) 본인의 소득세 납부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의 5개년도 서류 [※아래표-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 및 소득세 납부 입증 제출서류 참조]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청약자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과거 이력 포함하여 발급)으로 청약자(당첨자) 및 성년자(만19세 이상)인 세대원 전원 제출 (발급처:국민건강보험공단 T.1577-1000) *분리된 배우자와 같은 주민등록표등본 상 등재된 배우자 및 성년자(만19세 이상)인 세대원 전원 필수
	○		소득증빙서류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청약자(당첨자) 및 성년자(만19세 이상)인 세대원 전원의 소득증빙서류 [※아래표-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증빙서류 참조] *분리된 배우자와 같은 주민등록표등본 상 등재된 배우자 및 성년자(만19세 이상)인 세대원 전원 필수
		○	임신진단서 또는 출생증명서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	청약자 또는 배우자	• 태아를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임신 중 태아를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임신진단서(국내의료기관으로 한정) 제출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임신진단서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 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임신헌인서' 인정 안됨) *출산이행 확인각서(양식) 견본주택 비치
		○	입양관계증명서		• 입양의 경우
		○	부동산소유현황	본인 및 세대원 전원	•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신청한 경우로 청약자와 세대구성원 전원 서류 제출 [※아래표-신혼부부 /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산기준 입증서류 참조]
		○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직계비속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 아닌 청약자(당첨자)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상 만18세 이상 자녀를 '미혼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부 공개하여 '상세'로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신생아 우선공급으로 신청한 해당 자녀 • 입양의 경우 해당 자녀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하여 '상세'로 발급
		○	주민등록표초본 (전체포함)	청약자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 당첨자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당첨자 또는 당첨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 상에 등재되어 있음을 확인하여 소득산정 시 당첨자의 가구원수에 포함하는 경우 *현재로부터 과거 1년 이상의 주소변동사항을 포함하여 발급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사항, 변동사유 및 발생일,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전체포함'으로 발급
		○	주민등록표초본 (전체포함)	배우자	• 가구원에 해당하는 직계존속이 분리된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 상 등재되어 있는 경우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사항, 변동사유 및 발생일,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전체포함'으로 발급
노부모부양	○		주민등록표초본 (전체포함)	직계존속	• 주민등록표등본 상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여부 확인이 필요한 경우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의 주소변동사항을 포함하여 발급 *주소변동사항, 변동사유 및 발생일,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전체포함'으로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피부양 직계존속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하여 '상세'로 발급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 피부양 직계존속(노부모)과 추가로 인정받고자 하는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해당 피부양인 전원 제출 ※기록대조일: 생년월일 ~ 현재로 설정(행정복지센터 또는 정부24), 출입국 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 내역		•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진료개시일, 요양기관명 및 요양기관 연락처에 한정) - 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3년간의 내역
	○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직계비속	• 만18세 이상 미혼의 피부양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부 공개하여 '상세'로 발급
	○		주민등록표초본 (전체포함)		• 만30세 이상 미혼의 직계비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청약자 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 등재된 경우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사항, 변동사유 및 발생일(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과거 1년 이상),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전체포함'으로 발급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 해당 피부양인 전원 제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는 제외) ※기록대조일: 생년월일 ~ 현재로 설정(행정복지센터 또는 정부24), 출입국 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 내역		•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진료개시일, 요양기관명 및 요양기관 연락처에 한정) - 당첨자의 30세 이상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1년간의 내역)
	○		기존주택 처분관련 서약서		• 출산특례 청약신청자 중 기존주택 처분조건 당첨자인 경우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2항제4호에 따른 서약서 / 견본주택 비치
견본주택 대리인 신청시 추가사항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청약자	• 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대리인 접수 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인정 불가 ※단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제출처: '북오산자이 리버블시티')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		위임장	청약자	• 건본주택 비치
	○		신분증, 도장	대리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20.12.21. 이후 발급한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를 함께 구비) *모바일 신분증 불가 *외국국적 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인 외국인등록증
부적격 통보를 받은 자 (소명자료)		○	사업주체가 필요시 추가로 요구하는 서류	무주택 소명 등	※'소형·저가주택등'임을 증명하는 서류(주택공시가격 확인원,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서 정하는 무주택으로 인정하는 기타 증명 서류(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축물대장등본, 무허가건축물확인서 등) • 당첨자 및 세대원의 소유 주택 현황 사례가 다양하여 사업주체가 추가로 증빙을 요구하는 서류
				당첨사실 소명 등	• 해당 기관의 당첨사실 무효 확인서 등 사업주체가 요구하는 인정 서류

- ※ 상기 모든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건본주택에서는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된 경우에 한하여 청약접수 및 당첨자 자격확인이 가능합니다.
- ※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표초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등 모든 제반서류 상 등재된 모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등은 반드시 표기되어 발급하시기 바랍니다.
-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간 산정, 배우자 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표1-2]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증빙서류

해당자격		소득증빙 제출서류	발급처
근로자	일반근로자	① 재직증명서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휴직기간을 명시하여 발급) ②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원본 - 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 전년도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증명서 원본(매월신고 납부대상자 확인으로 발급) 또는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 계속 휴직으로 월평균소득 산정이 어려운 경우 휴직 전 정상 재직기간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으로 확인 ※ 출산휴가 기간 중 고용보험을 수령한 경우 '출산 전후 휴가 확인서' 제출 (※직인 날인)	① 해당직장 ② 해당직장, 세무서
	금년도 신규취업자 또는 금년도 전직자	① 재직증명서 ② 금년도 월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증명서 원본 ※ 근로기간이 1개월을 경과하지 못하여 근로소득원천징수부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과 동일한 직장의 동일 직급, 동일 호봉인 자의 전년도 원천징수영수증과 재직증명서를 제출받아 월평균소득을 추정 ※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①,②,③ 해당직장
	전년도 전직자	① 재직증명서 ②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원본 ※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 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①,② 해당직장
자영업자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 면세사업자	①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원본 ② 사업자등록증(사본)	① 세무서
	신규사업자	① '국민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또는 공고일 이전 최근의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서(부분) ② 사업자등록증	① 국민연금공단 ② 세무서
	법인대표자	①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② 전년도 재무제표 또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재직증명서	① 세무서 ②,③ 해당직장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① 전년도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또는 간이지급명세서 ② 위촉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 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① 세무서 ② 해당직장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① 행정복지센터
일용직 근로자		①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	① 해당직장, 세무서

	② 위촉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 프리랜서의 경우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서와 위촉증명서 또는 해촉증명서(필수) ※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 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② 해당직장
무직자	① 비사업자 확인각서 ②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필수)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에 소득(근로 또는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에는 전년도 1월1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의 총 소득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	① 건본주택 비치 ② 세무서

■ [표1-3]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 및 소득세 납부 입증 제출서류

구분	해당자격	증빙 제출서류	발급처
자격 입증서류	근로자	① 재직증명서(직인날인)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발급처: 국민건강보험공단 T.1577-1000)	① 해당직장/세무서 ② 건강보험공단
	자영업자	① 사업자등록증(사본)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발급처: 국민건강보험공단 T.1577-1000)	
	근로자, 자영업자가 아닌 분으로 과거 1년(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를 납부한 분	①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직인날인), 납세증명서 및 납부내역증명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 납부분에 한함)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발급처: 국민건강보험공단 T.1577-1000)	
소득세 납부 입증서류	과거 5개년도 소득세 납부내역 (근로자, 자영업자, 근로자 및 자영업자 아닌 분으로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를 납부한 분)	*5개년도 소득세 납부증명서류로 아래에 해당하는 서류 ① 소득금액증명 ② 납세증명서 및 납부내역증명(종합소득세 신고자에 한함)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 중 결정세액이 환급 또는 없는 경우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③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직인날인)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직인날인) ④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 직인날인)	①,② 세무서 ③,④ 해당 직장

※ 과거 5개년도 납부내역은 통산 5년의 납부실적을 의미합니다.

※ 상기 소득증빙서류는 세무서 또는 원천징수의무자(재직직장)에게서 발급받은 원본만 제출 가능합니다.

■ [표1-4]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자산 입증서류

해당자격	자산입증 제출서류		발급처
'부동산 소유 현황'이 있는 경우	필수	①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전국단위로 재산세 내역 발급) ② 부동산소유현황(세대원별 각각 발급) -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③ 건물(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부동산소유현황에 표시된 해당 부동산 모두에 대한 서류 발급) 및 토지대장 ④ 공동(개별) 주택가격 확인서 소유 [부동산이 건축물대장상 주택인 경우] ⑤ 개별공시지가확인서 [소유 부동산이 토지이거나 단독·공동주택을 제외한 일반건축물(상가 주택 등)인 경우] ⑥ 건축물시가표준액 조회결과 [소유 부동산이 건축물대장상 주택 외 건축물(상가,오피스텔 등)인 경우] - 서울특별시 : 'ETAX 이용안내 > 조회/발급 > 주택외건물 시가표준액조회' 에서 조회결과를 인쇄하여 제출 - 서울특별시 외 : '위택스 > 지방세정보 > 시가표준액조회' 에서 건축물시가표준액 조회결과를 인쇄하여 제출	① 위택스(www.wetax.go.kr) ②,③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 정부24 (www.iros.go.kr / www.gov.kr) ④,⑤ 행정복지센터 ⑥ 서울시 이택스(etax.seoul.go.kr) 위택스(www.wetax.go.kr)
	추가 (해당자)	*농지법 및 초지법 등에 따라 토지 가액에서 제외되는 경우 ① 농지대장 / ② 축산업 허가증 / ③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부동산 소유 현황'이 없는 경우	필수	① 부동산소유현황(세대원별 각각(전원) 발급, ※미성년자 포함) -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 등기열람 발급 > '부동산 부동산 소유 현황' 조회결과를 인쇄하여 제출 ② 지방세 세목별 미과세증명서 (전국단위로 재산세 내역 발급) - 위택스 > 발급 > 문서발급 안내 및 발급 > 지방세 미과세증명서 ※ 전국기준,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출력	①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www.iros.go.kr) ② 행정복지센터, 정부24 (www.gov.kr)

※ 자산보유기준(3.31억원) 산정 시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보유한 주택 또한 대상이 됩니다.

■ [표2] 일반공급 자격확인 제출서류 (※당첨자에 한하여 서류제출 기간 내 제출되어야 함)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공통서류	○		주민등록표등본 (전체포함)	청약자	• 주민등록번호, 세대주 및 세대원 포함,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 사유,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으로 발급
	○		주민등록표초본 (전체포함)		•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사항·사유 및 발생일(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전체포함'으로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하여 '상세'로 발급
	○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관계 확인 *본인 및 배우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하여 '상세'로 발급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기 ※기록대조일: 생년월일 ~ 현재로 설정(행정복지센터 또는 정부24), 출입국 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	복무확인서	배우자	•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자격으로 청약 신청한 경우 [군복무 기간(10년 이상) 명시]
		○	주민등록표등본 (전체포함)		• 주민등록표등본 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상기 본인 등본 발급 유의사항과 같이 '전체포함'으로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재혼가정의 자녀(본인의 친자녀가 아닌 자녀)로서 당첨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 •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주민등록표등본 상 당첨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 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 *본인 및 배우자,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하여 '상세'로 발급
해외근무자 (단신부임)	○		해외체류 관련 증빙서류	청약자	• 국내기업 및 기관소속 해외 주재원 및 출장자인 경우 : 파견 및 출장명령서, 재직증명서 • 해외 취업자 및 사업체 운영자인 경우 : 현지 관공서에서 발급받은 사업 또는 근로 관련 서류, 취업 또는 사업비자 발급내역 등 • 근로자가 아닌 경우 (※반드시 제출) : ① 비자 발급내역 ② 계약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 ※유학, 연수, 관광, 단순체류자의 경우 생업사정을 인정할 수 없으며, 생업관련 증빙서류 제출이 불가능한 자 또한 인정 불가 ※해외에서 발급받은 서류의 경우 번역공증 첨부 필수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배우자 및 세대원 전원	• 청약자가 해외에 체류 중인 기간 중 세대원이 일정기간 해외에 체류하지 않았다는 사실 여부 확인 ※기록대조일 : 생년월일 ~ 현재로 설정(행정복지센터 또는 정부24), 출입국 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	주민등록표초본 (전체포함)	직계존속	• 배우자 및 자녀가 없는 자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직계존속과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사항, 변동사유 및 발생일,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전체포함'으로 발급
가점제 (추가서류)		○	주민등록표초본	직계존속	• 주민등록표등본 상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여부 확인이 필요한 경우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의 주소변동사항을 포함하여 발급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사항, 변동 사유 및 발생일,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전체포함'으로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피부양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하여 '상세'로 발급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으려는 경우 ※기록대조일 : 생년월일 ~ 현재로 설정(행정복지센터 또는 정부24), 출입국 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단,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부양가족에서 제외
		○	혼인관계증명서	직계비속	• 만18세 이상 미혼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부 공개하여 '상세'로 발급
		○	주민등록표초본 (전체포함)		• 만30세 이상 미혼의 직계비속을 현재로부터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한 사실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사항, 변동 사유 및 발생일(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과거 1년 이상),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전체포함'으로 발급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으려는 경우 ※기록대조일 : 생년월일 ~ 현재로 설정(행정복지센터 또는 정부24), 출입국 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단, 아래의 경우 부양가족에서 제외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 만30세 미만 미혼 자녀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 만30세 이상 미혼 자녀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순위확인서	배우자	•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 신청자 중 배우자의 청약통장가입기간 점수를 산입(1~3점)한 경우, 아래 경로를 통해 서류 발급 * (청약홈) 청약홈 > 청약자격확인 > 청약통장 > 순위확인서 발급 >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 청약하고자 하는 주택명 선택 (청약통장 가입은행) 창구 방문 >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순위확인서 발급
		○	당첨사실 확인서	배우자	•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 신청자 중 배우자의 청약통장가입기간 점수를 산입(1~3점)한 경우, 아래 경로를 통해 서류 발급 * (청약홈) 청약홈 > 청약소통방 > APT당첨사실 조회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피부양 직계존속	•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진료개시일, 요양기관명 및 요양기관 연락처에 한정) - 당첨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3년간의 내역)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피부양 직계비속	•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진료개시일, 요양기관명 및 요양기관 연락처에 한정) - 당첨자의 30세 이상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1년간의 내역)
부적격 통보를 받은 자 (소명자료)		○	사업주체가 필요시 추가로 요구하는 서류	무주택 소명 등	• ‘주택소유 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 기준’에 따른 해당 서류 ※ ‘소형·저가주택등’임을 증명하는 서류(주택공시가격 확인원,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서 정하는 무주택으로 인정하는 기타 증명 서류(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축물대장등본, 무허가건축물확인서 등) • 당첨자 및 세대원의 소유 주택 현황 사례가 다양하여 사업주체가 추가로 증빙을 요구하는 서류
				당첨사실 소명 등	• 해당 기관의 당첨사실 무효 확인서 등 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하는 서류

※ 상기 제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인(배우자, 직계 존·비속 포함)으로 간주합니다.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간 산정, 배우자 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부적격 당첨자의 명단관리 등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 사업주체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제3항 및 제57조제8항에 따른 부적격당첨자가 소명기간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제4항에도 해당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그 명단을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자의 명단(부적격당첨자)을 당첨자 명단에서 삭제하는 등 전산관리하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제7항에 따라 사업주체에게 전산검색 결과를 통보할 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제3항에 해당하는지를 표시하여 통보하여야 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제1항에 따라 당첨이 취소된 자(부적격당첨자)는 공급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사전당첨자 포함)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사업주체는 부적격당첨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첨자로 봅니다. (다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제7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1.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순위의 자격을 갖춘 자 2.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입주대상자 자격 확인 등에 따른 소명기간에 재산정한 가점제 점수(가점제를 적용하여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 또는 공급 순차별 자격(순차별로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이 해당 순위의 당첨자로 선정되기 위한 가점제 점수 또는 자격 이상에 해당하는 자 • 부적격당첨자는 건본주택에 방문하여 ‘당첨사실 삭제 및 계좌부활요청서’(건본주택 비치)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만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에 부적격당첨자명단 통보가 가능합니다.

9 계약체결 안내

■ 계약체결 일정 및 장소

- 당첨자는 당첨 동·호수의 공급금액 확인 후 지정된 분양대금 계좌로 계약금을 납부하고 필수 구비사항과 해당 추가 구비사항을 준비하시어 반드시 지정된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구분	계약체결 기간	운영시간	계약장소
당첨자 계약체결	2026.02.08.(일) ~ 2026.02.10.(화) [3일간]	10:00~17:00	북오산자이 리버블시티 견본주택 (경기도 오산시 내삼미동 272-2)

- ※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결과와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자(정당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자로 재확인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 (부적격자는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통보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기간(7일)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당첨된 주택은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함)
- ※ 청약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후 정당 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기간 종료 이후 미계약 세대 발생 시 예비입주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잔여 세대에 대해서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공급합니다.
- ※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기간 내 계약 미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 계약체결 이후라도 전산검색결과와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하지 못하면 계약은 취소됩니다.

■ 분양대금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구분	금융기관명	납부계좌	예금주
분양대금	1차 계약금 (최초 계약시)	하나은행	231-910055-67604
	2차 계약금, 중도금, 잔금	계약체결 시 세대별로 가상계좌 부여 예정	

- 상기 지정계좌로 직접 무통장 입금[동·호수, 공급신청자(계약자) 성명으로 입금]하고 무통장입금증을 계약 시 지참하여 주십시오. (무통장 입금 시 예시 : 101동 101호 홍길동 계약자일 경우, 입금자명을 '1010101홍길동'으로 기재)
- 계약금 입금 후 부적격자로 판명되는 자는 소명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이자는 없습니다.
- 분양대금은 약정된 납부 일정에 지정된 계좌로 입금하여야 하며, 2차 계약금, 중도금, 잔금은 계약체결 시 동호수별 가상계좌를 부여하여 계약서에 명기할 예정으로 세대별로 계좌번호가 상이하므로 입금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가상계좌로 납부한 분양대금은 은행 전산망에 의하여 분양대금 관리계좌(모계좌 : 하나은행 231-910055-67604, 예금주 : 한국투자부동산신탁(주))로 이체되어 관리되며, 사업주체는 납부일 및 납부금액에 대하여 별도로 안내해 드리지 않습니다.
- 상기 관리계좌로 납부되지 아니한 분양대금은 인정하지 않으며,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상기 분양대금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다른 형태의 입금 및 납부는 효력이 없으며, 매수인(수분양자)이 상기 계좌로 납부하지 않은 금액에 대하여 분양대금 납입을 인정받지 못함에 있어 매도인(사업주체)의 책임이 없습니다.
- 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의 대금 오납입에 따라 계약 미체결, 연체료 발생 등의 문제 발생 시 사업주체가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계약체결 시 구비사항

구분	구비사항
본인 계약 시	① 계약금 입금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입금 확인증, 캡처 등) ②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20.12.21. 이후 발급한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를 함께 구비 ※ 모바일신분증 불가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사실신고증 (또는 국내거주사실증명서 1통) / 외국인인은 외국인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1통) ③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입주대상자 자격확인서류 제출기한 내 제출한 경우 제외) ※ 인감증명서 발급 시 본인발급용(본인 직접 발급)으로 발급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자의 경우 대리인 계약 불가 ※ 정부24 온라인인감증명서 제출 시 발급용도 및 제출처 정확히 기재 [발급용도 : 아파트 계약 / 제출처 : '북오산자이 리버블시티']

	④ 인감도장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제외) ⑤ 정부수입인지 : 계약자 부담분(수입인지 기준세액의 1/2) *발코니 확장 별도 *전자수입인지(e-revenuestamp.or.kr) 사이트에서 구매 및 납부증명서 출력 or 우체국 및 시중은행에서 구매 ⑥ '주택취득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취득가액이 6억원 이상인 세대에 한함) ☞ 당첨유형별 입주대상자 자격확인서류 일체 (※입주대상자 자격확인서류 제출기한 내 제출한 경우 제외) ☞ 기타 사업주체가 적격여부 확인을 위해 추가로 요구하는 서류 (해당자에 한하여 개별 통지)
대리인 계약시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인 계약으로 간주 (배우자, 직계 존·비속 포함)	※ 대리계약 시 상기 구비서류와 함께 다음 서류 추가 제출 • 계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 (※본인발급용 / 용도 : 아파트 계약 위임용) 및 인감도장 • 대리인 신분증, 도장 (또는 대리인 서명) • 계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건본주택 비치)

※ 상기 제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합니다.

※ 2020.10.27. 개정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택 거래신고 시 취득가액이 6억원 이상인 경우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계약자로 간주(배우자, 직계 존·비속 포함), 대리 계약자는 위임장, 당첨자 본인의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본인 발급용), 당첨자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을 추가로 구비 하여야 합니다.

※ 대리인 계약 시에는 인감증명서만 인정하며,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지참한 대리인은 계약을 체결하실 수 없습니다.

※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해 주십시오. (예. 아파트 계약용, 아파트 계약 위임용 등)

■ 계약체결 조건 및 유의사항

- 당첨자 계약 체결기간 준수
 - 정당 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특별공급 당첨자 포함) 당첨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기간 종료 이후 미계약 세대 발생 시 예비입주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잔여세대에 대해서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공급합니다.
 -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기간 내 계약 미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계약금은 지정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며 현장수납은 불가)
 - 지정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자(정당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 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된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당첨취소 및 고발 조치하며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행정구역 및 단지 내 시설 명칭, 동·호수는 관계기관의 심의 결과에 따라 공급 시의 명칭과 상이할 수 있으며, 변경 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당첨 및 계약 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 될 수 있으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습니다.
- 건본주택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시공업체, 부동산중개업자 등의 영업행위)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와 무관한 사항입니다.
- 입주지정일 이후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에 대해서는 입주 및 잔금완납이나 소유권 이전 여부와 관계없이 계약자가 부담하며 또한 계약자 불이행으로 인해 사업주체가 입은 손해는 계약자가 배상합니다.
- 본 공동주택은 교육청이나 인허가청 요청 시 분양계약 관련 사항을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 HUG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관련으로 개인정보 요구 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제공을 할 수 있습니다.
- 공급계약 체결을 위해 수집한 개인정보는 사업주체, 중도금 대출취급기관, 시공사 등에서 계약관리 및 추후 주요 일정 통보 등의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대하여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당첨 이후 주소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변경 내용을 당사에 즉시 서면(주민등록초본 포함) 통보하시기 바랍니다.
- 보존등기 및 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 계약체결 후 계약자의 변심, 귀책사유 등으로 인하여 분양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공급계약서 내용에 따라 위약금을 배상하여야 합니다.
- 부동산 거래신고,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신고 의무화로 비규제지역인 경기도 오산시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및 별표1 규정에 의거 취득가액 6억원 이상 주택매매 계약(최초 공급계약 및 분양권·입주권 전매를 포함)의 부동산거래 신고 시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매수자 본인이 입주할지 여부, 입주 예정시기 등)를 통해 거래대상 주택의 신고를 의무화 하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규정에 의거 부동산 계약 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 거래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신고에 따른 일정한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하여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준공 전·후 개인 또는 임의 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세대 내·외, 공용부분 시설물 등)을 요구할 수 없으며, 만약 최종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도면 이외의 사항을 요구할 경우에는 사업주체의 수락 하에 이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고 또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변경 등 관련법규에 대한 제반서류는 요청 당사자가 징구하여 사업주체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기타 계약조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에 준합니다.

■ 이증당첨자, 부적격당첨자 처리 및 계약취소에 관한 사항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제3항제24호

- 입주대상자 자격확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에 따라 당첨자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결과 및 계약 신청 시 제출서류 확인 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로 판정된 자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즉시 통보하며, 통보한 날로부터 7일 내에 부적격 사항에 대한 소명 자료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부적격 사항 소명 안내 : 관련기관의 전산시스템과 입주자모집공고일 당시 입주대상자의 현황이 상이할 수 있으며, 부적격 사항 및 적격 여부 확인이 필요한 자료 통보된 경우 소명 기간 내에 서류확인 등을

- 통하여 소명을 한 경우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 계약체결 이후 관련 법령 등의 처리 및 검증으로 인한 당첨 및 계약취소 확인 : 계약체결 후이라도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될 경우 입주자 선정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① 당첨자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의 소유 여부가 신청한 사실과 다른 경우 - '주택 및 "분양권등" 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 참조
 - ② 특별공급 당첨자 중 과거 다른 주택에 특별공급 자격으로 당첨된 사실이 있는 경우 (특례 제외)
 - ③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야 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된 경우
 - ④ 부적격 소명 대상자로서 사업주체가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통보한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 기간(7일)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제1항에 따라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민간 사전청약을 포함)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제4항에 따라 아래 해당하는 경우 당첨자로 인정합니다.
 - ① 같은 청약 순위에서 경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순위의 자격을 갖춘 자
 - ② 같은 청약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에 따른 소명기간에 재산정한 가점제 점수(가점제를 적용하여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공급 순차별 자격(순차별로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이 해당 순위의 당첨자로 선정되기 위한 가점제 점수 또는 자격 이상에 해당하는 자
 - 계약신청 시 제출한 서류가 사실이 아님이 판명된 경우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기 체결된 계약은 취소하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인에게 귀속됩니다.
 - 본 아파트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계약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당첨자로 전산 관리합니다.

■ 계약자 중도금 대출 안내

- 대출기관 : 추후 별도 공지 예정
- 본 아파트는 중도금 대출에 대한 이자는 “중도금 대출 이자후불제” 조건으로 용자 알선을 시행할 예정이며, 총 공급대금의 60% 범위 내에서 사업주체가 지정하는 대출기관에서 대출이 가능합니다. (단, 정부정책 및 금융권 사정 등의 사유로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중도금대출 금융기관의 알선은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의무사항이 아니며 정부정책, 금융기관,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사정 등으로 대출 알선 불가 및 대출관련 제반 사항[대출 취급기관(제1·2금융권 및 기타 대출방식 포함), 대출금리 조건 등]이 변경되더라도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알선한 금융기관을 통해 중도금 대출 신청이 가능할 경우에도 대출 미신청자와 본인의 사유(보증제한, 신용불량, 주택소유 등)로 인하여 대출이 불가한 계약자는 상기 납부 일정에 맞추어 본인이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중도금 대출취급기관이 선정되지 않았음을 인지하고, 대출취급기관 선정 시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오산시가 아닌 그 외 지역의 대출취급기관(본점 및 지점 등)이 선정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원거리에 위치할 수 있어 중도금 대출(권리의무승계 계약서상 양도인 및 양수인의 대출취급기관 방문 관련 등)과 관련하여 불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적격대출 시 대출취급기관, 집단대출보증기관의 중도금 대출 협약조건에 의거 분양대금의 10%(1차, 2차 계약금) 완납 이후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고 계약금 일부 미납 시에는 중도금 대출이 불가합니다.
- 계약자는 법률의 변경 및 정부의 부동산 정책(주택담보대출의 제한 등), 금융시장 변화 또는 대출기관의 규제 등에 따라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중도금 대출 알선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러한 제한에도 불구하고 분양대금은 계약자 본인 책임 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 납부하여야 합니다.
-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대출 알선이 불가하거나 개인별 대출축소 및 대출불가 등의 사유로 계약해지를 요청할 수 없으며, 계약자의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며 이에 대해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게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아파트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알선한 금융기관을 통해 중도금 대출 신청이 가능할 경우에도, 금융관련 정책, 대출기관의 여신 관리규정, 집단대출 보증기관의 관리규정 등으로 대출조건이 각 세대별, 각 개인별로 상이하거나, 최종적으로 중도금 대출 실행이 불가할 수 있음을 인지하시기 바라며, 이에 따른 중도금 대출 불가 및 대출한도 축소 등으로 인한 개인적인 불이익에 대해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게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재외동포 및 외국인의 경우 대출 가능 여부 반드시 확인)
- 적격대출 가능 계약자가 중도금 대출을 받고자 하는 경우 해당 계약자는 분양계약 체결 후 시행위탁자 및 시공사가 알선한 중도금 대출 협약 금융기관과 중도금 대출 약정을 별도로 체결하여야 합니다. 단, 대출 미신청자와 적격대출 가능 계약자라 하더라도 중도금 대출 실행 이전에 본인의 부적격 사유가 발생하여 대출이 불가능하게 된 계약자는 분양대금을 자기 책임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중도금 및 잔금의 지연이자는 공급계약서를 기준으로 합니다.
- 아파트 공급계약이 계약이나 귀책사유로 인해 해제가 될 경우 계약자는 위약금과 별도로 사업주체가 우선 납부한 중도금 대출이자 전액을 사업주체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 중도금 대출에 필요한 대출취급(보증)수수료(집단대출 보증기관 보증수수료, 기타 등), 인지대 등 제반 경비는 금융기관 등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약자가 부담해야 하며, 적격대출은 금융 신용불량 거래자, 타 은행대출, 대출한도 및 건수 초과,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각종 대출보증서 발급제한 등 계약자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 또는 정부의 금융정책 등에 의해 제한되고 있음을 계약자 본인이 인지하고, 중도금 대출이 불가하거나, 중도금 대출한도가 부족할 경우 계약자는 분양대금 납부조건에 따라 중도금(잔금)을 직접 납부(이와 관련하여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별도로 분양대금 납부 일정을 통지하지 않으며 미납 시 연체료가 가산됨)하여야 합니다.
- 중도금 대출기간 이내라도 계약자의 금융 신용불량 등 결격사유가 발생하여 대출 금융기관의 중도금 대출 중단 요구에 따라 분양대금이 납부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를 할 수 있으며, 이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잘못이 아닌 계약자의 결격사유에 기인하므로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대출 금융기관과의 중도금 대출협약 등에 의거하여 대출 금융기관에 중도금 대출을 위한 계약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사업주체의 부도·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대납하던 중도금 대출이자(이자)는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금융시장의 경색 또는 변동성으로 인하여 선정된 중도금 대출 금융기관의 특유성(업종, 업태) 및 대출 형태에 따라 부득이 계약자의 신용등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계약자는 입주 전까지 사업주체가 지정하는 기일 내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담보대출로 전환하여야 하며, 대출금을 담보대출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급금액을 전액 완납하고 소유권이전 및 근저당권설정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담보대출에 따른 보증수수료, 인지대 등 제반 수수료 및 근저당설정 비용 등은 대출금융기관이 정한 부담 주체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알선한 대출의 대출 기간 만료 시(준공 후 미입주 등) 금융기관의 대출 기간 연장 및 공정률에 따른 납부일자의 변경에 대해 별도의 절차 없이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분양권 전매 요청 시 본 아파트의 사업주체 및 대출취급기관은 양수인의 신용등급 등의 제반 조건을 확인하기 위하여 추가 증빙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며, 대출취급기관 또는 사업주체의 판단에 따라 양수인이

- 신용등급 등의 제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분양권 전매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대출관련 세부내용은 건본주택에서 별도 공지 및 안내 예정이나, 관련 정책, 대출 상품의 종류 및 개인의 사정 등으로 대출한도가 계약자별로 상이하거나 대출이 불가할 수도 있으므로 지정한 금융기관에 사전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 분양사무소(건본주택)는 대출기관이 아니므로 분양상담사 및 관계자는 대출 여부에 대해 확정할 수 없으며, 추후 중도금 대출 취급기관의 심사를 통하여 대출 여부가 결정됩니다. 이에 고객의 대출비용 축소 또는 대출 불가에 대하여 분양상담(전화상담 포함) 내용을 근거로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대출 책임을 요구할 수 없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련 법령 및 공급계약서의 약관에 따릅니다.

■ 기타 유의사항 (반드시 확인하시어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실제로 입주하실 분을 위하여 건립되는 것이므로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신청서 내용 변조 등의 주택공급 질서를 어지럽힐시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 본 아파트 공사 중 천재지변, 집중호우 등의 기상이변, 태풍·홍수·폭염·한파·악천후·미세먼지 발현·전쟁·사변·지진·전염병·폭동 등 불가항력의 사태, 대규모 물류 마비, 파업, 문화재 발굴 또는 사업주체 귀책사유가 아닌 행정명령, 공공기관의 기반 시설 건설, 법원의 공사 중지 결정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지연보상금이 발생하지 않으니 사전에 충분히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교육관할청이나 인허가청 요청 시 분양계약 관련 사항(일부 개인정보 포함)을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 HUG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관련으로 개인정보 요구 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제공을 할 수 있습니다.
- 주택규모의 표시는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표현하였으며, 연면적과 전체 계약면적과는 소수점 이하에서 약간의 오차가 생길 수 있습니다.
- 일부 세대는 공사 진행 중에 고품질 시공을 위하여 선행세대로 사용될 수 있으며, 선행세대의 운영으로 인해 발생한 마감재의 파손, 훼손에 대해서는 준공 전 보수 또는 재시공하여 인도합니다. 이에 대하여 해당 세대 계약자 등은 동의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 청약신청 및 계약 전 사업부지 현장을 방문하시어 주변 혐오시설 유무, 도로, 소음, 조망, 일조, 진입로 등 주위 환경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현장여건 미확인으로 단지와 세대의 시설물 등에 대한 추가나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청약신청 및 계약장소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시공, 부동산 중개업자의 영업행위 등)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와는 무관한 사항이므로, 청약 및 계약 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 이후 주소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변경 내용을 사업주체에 즉시 서면(주민등록등본 포함) 통보하시기 바랍니다.
- 보존등기 및 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적공부정리 절차 등으로 지연될 수 있습니다. (특히 대지의 이전등기는 상당기간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건물등기와 대지권 등기를 별도로 이행하여야 함)
- 타사 또는 시공사의 타 분양 아파트의 마감사양, 설치 부대 편의시설 및 조경과 본 아파트를 비교하여 건본주택 및 사업계획(변경)승인 도에서 제시한 사항 외에 추가적인 마감사양 및 부대 편의시설, 조경의 설치 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없으므로 타 분양 아파트와 충분히 비교 검토한 후에 계약체결 하시기 바랍니다.

10 발코니 확장

■ 발코니 확장 대금 및 납부일정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구분 (주택형 약식표기)		59A	59B	74A	74B	74C	84A	84B	84D	99B	126P	127P
발코니 확장 대금		9,700,000	12,500,000	10,000,000	13,000,000	11,800,000	10,200,000	14,000,000	11,500,000	16,000,000	21,000,000	21,000,000
계약금 (10%)	계약 시	970,000	1,250,000	1,000,000	1,300,000	1,180,000	1,020,000	1,400,000	1,150,000	1,600,000	2,100,000	2,100,000
중도금 (10%)	2026.08.11.	970,000	1,250,000	1,000,000	1,300,000	1,180,000	1,020,000	1,400,000	1,150,000	1,600,000	2,100,000	2,100,000
잔금 (80%)	입주 시	7,760,000	10,000,000	8,000,000	10,400,000	9,440,000	8,160,000	11,200,000	9,200,000	12,800,000	16,800,000	16,800,000

■ 발코니 확장 대금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구분		금융기관명	납부계좌	예금주
발코니 확장 대금	계약금	하나은행	231-910055-74404	한국투자부동산신탁㈜
	중도금, 잔금	계약체결 시 세대별로 가상계좌 부여 예정		

- 상기 발코니 확장 대금 납부계좌는 분양대금 및 추가 선택품목(플러스옵션 - Style Up, 개별 유상옵션) 납부계좌, 유상옵션(시스템에어컨, 환기형 공기청정 시스템, 가전옵션) 납부계좌와 상이하므로 발코니 확장대금 입금 전 다시 한번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무통장 입금 시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라며, 입금 후 입금확인증(이체확인 캡처 등)을 건본주택에 계약 시 제출하여 주십시오. (건본주택에서 현금/수표수납은 하지 않습니다)

- 무통장 입금 예시 : 101동 101호 홍길동 → '1010101홍길동'
- 발코니 확장 대금은 약정된 납부 일정에 지정된 계좌로 입금하여야 하며, 중도금, 잔금은 계약체결 시 동호수별 가상계좌를 부여하여 계약서에 명기할 예정으로 세대별로 계좌번호가 상이하므로 입금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가상계좌로 납부한 발코니 확장 대금은 은행 전산망에 의하여 발코니 확장 대금 관리계좌(모계좌 : 하나은행 231-910055-74404, 예금주 : 한국투자부동산신탁(주))로 이체되어 관리되며, 사업주체는 납부일 및 납부금액에 대하여 별도로 안내해 드리지 않습니다.
- 계약금 납부주체가 계약자와 다르거나(타인 명의 등) 불분명하여 확인이 어려운 경우는 계약금 미납 및 계약 미체결로 처리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제반 문제에 대한 것은 사업주체의 책임이 아닙니다.

■ 발코니 확장 관련 유의사항

-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공동주택의 발코니는 입주자모집공고 시 공개된 총금액으로 별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는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확장 설치하였으며, 발코니 확장은 세대별로 택하여 계약하는 별도 계약 품목으로 분양가에는 미포함되어 있으며, 발코니 확장이 필요한 경우 공동주택 공급계약 시 별도의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 상가 발코니 확장 대금은 일괄 확장을 전제로 산정한 금액이며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습니다. (확장 공간 제외 발코니의 위치는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확장 부위 표기(표현)는 카탈로그 기준이며, 계약관련 선택사항 및 유의사항을 계약자가 직접 확인하시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확장 대금은 공동주택 공급금액과 별도이며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발코니 확장에 따른 기존 설치 품목의 미설치로 인한 감소비용과 추가 설치 품목 증가비용이 정산된 금액입니다. (취득세 등 제세공과금이 미포함 되어 있으며, 추후 분양계약자가 과세관청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자재 조달에 따른 계약 및 세대 내부공사 등 공사여건에 의해 발코니 확장 계약 가능 기한 이후에는 계약체결이 불가합니다.
- 단위세대 설계 당시 소비자의 성향 등을 고려해 발코니 확장형으로 설계 및 전시하였으며, 발코니 확장을 선택하지 않을 경우 공간이 협소하고 단위세대의 공간 활용도가 저하될 수 있음을 양지하시어 계약자는 계약 전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확인하여야 합니다.
- 발코니에는 드레인 및 선홍통이 설치되는 발코니와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가 있으며, 위치와 개수는 추가되거나 변경될 수 있으며, 드레인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 내에서는 물을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 각 세대의 발코니에 필요시 선홍통 및 드레인 등이 시공될 수 있으며, 발코니 확장 시 비확장 세대의 발코니 사용 및 우천 시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시 실내습도 등 생활공간에 따라 발코니 세시 및 유리, 기타 확장 부위에 결로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니, 입주자께서 환기 등으로 예방하셔야 하며(주기적인 실내 환기는 결로 발생 예방에 큰 도움이 됨) 이로 인한 하자 발생 시 하자보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발코니 확장에 따른 이중창호, 단열재 및 마감재의 추가 설치로 발코니 실사용 면적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시 발코니 비확장으로 남아있는 발코니 세시는 단창으로 설치되며, 해당 공간은 결로 방지용 단열재가 설치되나 결로 및 곰팡이 등의 하자발생 시 하자보수 대상에서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 발코니 확장 시에는 확장된 발코니 일부 벽체의 단열 및 결로 방지를 위하여 확장 부위 일부 벽체 및 천장이 분양안내서 그림보다 다소 두꺼워질 수 있으며, 발코니 확장 세대는 인접세대 또는 상부 세대가 비확장일 경우와 세대 내 비확장 발코니에 면하는 경우 추가 단열재 시공으로 인하여 침실 및 거실 발코니 벽체 부위에 단차가 생길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확장 세대의 상부세대가 비확장일 경우 단열재 추가 설치 등으로 인한 천장 및 벽체 돌출, 우물천장 사이즈 감소, 조명의 위치와 상태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확장 세대의 상부 세대가 비확장일 경우 상부 세대의 배관 일부가 확장 세대 상부에 노출되어 이로 인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기본형(비확장) 세대 선택 시 냉매배관, 조명기구 및 배선기구의 TYPE, 배치 및 설치의 확장형 세대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기본형(비확장) 세대의 경우 외부의 발코니가 협소하여 사용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 기본형(비확장) 세대의 경우 각실과 발코니가 만나는 면에 창호가 설치되며 발코니 외부 쪽으로는 창호가 설치되지 않습니다. 또한, 상층 및 하층 세대 단열 및 배수 설계로 인해 발코니의 천장과 및 창호 높이가 축소 시공되며 발코니의 바닥 레벨이 거실 및 침실보다 높게 시공되어 사용에 불편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기본형(비확장) 세대에서 전체 발코니가 연결된 경우 각실이 아닌 거실 혹은 주방 등 특정 실을 통해서만 출입이 가능하게 되어 생활에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사업주체에서 시행하는 발코니 확장은 「건축법」에 의거 적법하게 설계되었으며, 사용승인 후 개별적으로 확장 시에는 「건축법 시행령」 및 「공동주택관리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발코니 대피 공간의 구조변경 및 설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관리주체에 반드시 신고 확인 후 설치하여야 합니다.
- 발코니 개별 확장 세대의 경우 난방 장비용량 증설에 따른 비용 및 난방부담금은 입주 시점에 아파트 관리주체와 협의하여 추가로 부담하여야 합니다.
- 발코니 확장을 개별 시공함으로써 입주 후 소음, 진동, 분진 등을 초래하여 타 입주자에게 불편이 있을 수 있으나, 이에 따른 법적 책임은 사업주체와 무관하며, 또한 입주 후 상당기간 관리비 등이 과다하게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비확장 세대는 시공상의 문제로 추가 선택품목(유상옵션)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11 추가 선택품목(플러스 옵션)

■ 주방 Style Up 설치내역 및 공급 대금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설치내역	• 특화 주방가구(유럽산 하드웨어 적용, 수동 플랩장) • 주방 레이아웃 변경 - 홈바+팬트리+현관창고 확대 : 적용 타입(74A, 74B, 84A, 84B) - 홈바+팬트리 : 적용 타입(99B) - 홈바+팬트리 축소 : 적용 타입(74C) • 독립형 후드+독립형 소화기 • 세라믹 패널 상판 • 특화수전 • 주방 우물천장 및 간접조명 • 루버천정 : 적용 타입(74A, 74B, 84A, 84B, 99B)										
	구분 (주택형 약식표기)	59A	59B	74A	74B	74C	84A	84B	84D	99B	126P
공급대금	9,669,000	9,669,000	12,745,000	13,240,000	13,464,000	13,823,000	13,856,000	9,273,000	15,312,000	-	-

■ 인테리어 Style Up 설치내역 및 공급 대금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설치내역		• 이탈리아산 포셀린타일 • 시트패널 • 단천장+리니어조명&등박스 • 건축화조명+천장 시트패널 • 특화조명 • 실링팬 (전용공급 포함)										
구분 (주택형 약식표기)		59A	59B	74A	74B	74C	84A	84B	84D	99B	126P	127P
공급 대금	주방 Style Up 미선택 시	7,843,000	8,162,000	8,382,000	8,778,000	8,613,000	8,778,000	9,262,000	9,053,000	11,110,000	-	-
	주방 Style Up 선택 시			8,019,000	8,382,000	8,327,000	8,349,000	8,877,000		10,318,000	-	-

※ 인테리어 Style Up 적용 부위는 주택형별로 상이하니 계약 시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인테리어 Style Up 가격은 주방 Style Up 선택 여부에 따라 금액이 상이하니 적용되는 금액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타입: 74A, 74B, 74C, 84A, 84B, 99B)

■ 베타룸 Style Up 설치내역 및 공급 대금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설치내역		• 시스템 선반+드레스룸 레이아웃 변경 (※ 해당 옵션 선택 시 적용 구간 기본 조명 제공)										
구분 (주택형 약식표기)		59A	59B	74A	74B	74C	84A	84B	84D	99B	126P	127P
공급 대금	인테리어 Style up 미선택 시	-	893,000	-	924,000	1,838,000	-	1,123,000	-	1,091,000	-	-
	인테리어 Style up 선택 시		673,000		674,000	1,618,000		903,000		871,000	-	-

■ 개별 유상옵션 품목 설치내역 및 공급 대금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구분 (주택형 약식표기)	59A	59B	74A	74B	74C	84A	84B	84D	99B	126P	127P
현관중문 (3연동 자동)	리니어 타입 (화재감지기 포함)	2,090,000	2,090,000	2,090,000	2,090,000	2,090,000	2,090,000	2,090,000	2,090,000	-	-
욕실 특화 수전 및 위생도기	수전/도기류, 양변기, 무광 샤워 부스	2,145,000	2,145,000	2,145,000	2,145,000	2,145,000	2,145,000	2,145,000	1,947,000	1,991,000	1,991,000
특화 수납장	주방 냉장고장 측면	-	-	759,000	759,000	759,000	759,000	759,000	792,000	946,000	-
불박이장 (개별 선택 가능)	침실2	1,320,000	1,320,000	1,320,000	1,320,000	1,320,000	1,397,000	1,320,000	1,397,000	1,397,000	1,320,000
	침실3	1,320,000	1,320,000	1,320,000	1,320,000	1,320,000	1,320,000	1,397,000	1,320,000	1,397,000	-
욕실 복합 환풍기	힘펠 기본형 (부부/공용)	1,200,000	1,200,000	1,200,000	1,200,000	1,200,000	1,200,000	1,200,000	1,200,000	1,200,000	1,200,000
3구 인덕션	LG (BEI3ASB4BI)	1,100,000	1,100,000	1,100,000	1,100,000	1,100,000	1,100,000	1,100,000	1,100,000	1,100,000	1,100,000

- 주택형별로 추가 선택품목의 설치 위치 및 품목, 적용범위가 다르며, 해당 주택형의 품목 및 공급금액이 명기되어 있는 항목만 선택 가능합니다.
- 추가 선택품목(플러스옵션) 설치 위치 및 품목, 적용범위 등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홈페이지 또는 견본주택을 확인 후 선택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 선택품목(플러스옵션) 설치 위치 및 품목은 지정되어 있으며, 계약자가 임의로 위치 및 품목을 지정할 수 없습니다.
- 추가 선택품목(플러스옵션) 선택에 따라 마감재, 벽체 및 가구계획, 일부공간의 조명 등이 달라지므로, 실제 적용된 마감재를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 선택품목(플러스옵션) 공급금액은 해당 옵션 선택 시 기존 설치품목의 미설치로 인한 감소비용과 추가 설치품목 증가비용이 정산된 금액입니다.
- 추가 선택품목(플러스옵션) 계약은 본 아파트 공급계약과 별도로 양도/양수할 수 없으며, 공동주택 공급계약 양도/양수 시 포괄적으로 승계됩니다.
- 추가 선택품목(플러스옵션) 금액에는 취득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입주 후 관할 관청으로부터 취득세 등 제세공과금이 부과됩니다.
- 카탈로그 상 표기되는 각 실의 명칭은 카탈로그 기준이나, 설계변경 등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추가 선택품목(플러스옵션)은 본 아파트의 컨셉에 맞추어 디자인하고 품질관리하는 품목으로써 판매가 및 사양에 대해 교체 및 해약을 요구할 수 없으므로 타사 및 기타, 시중 품목과 비교 검토한 후에 계약체결 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 선택품목(플러스옵션 - Style UP, 개별 유상옵션)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구분		금융기관명	납부계좌	예금주
추가 선택품목 (플러스옵션)	계약금	하나은행	231-910056-56104	GS건설(주)
	중도금, 잔금	계약체결 시 세대별로 가상계좌 부여 예정		

구분	계약금 (10%)	중도금 (10%)	잔금 (80%)
납부 시기	계약 시	2026.08.11.	입주 시

- 추가 선택품목(플러스옵션)은 계약금(10%), 중도금(10%), 잔금(80%)의 순서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상기 추가 선택품목(플러스옵션 - Style Up, 개별 유상옵션) 납부계좌는 분양대금 납부계좌, 발코니 확장 대금 납부계좌, 유상옵션(시스템에어컨, 환기형 공기청정 시스템, 가전옵션) 납부계좌와 상이하므로 추가 선택품목(플러스옵션 - Style Up, 개별 유상옵션) 대금 입금 전 다시 한번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추가 선택품목(플러스옵션)의 계약금은 지정된 상기 계좌로 납부하여야 하며, 중도금, 잔금 납부계좌는 가상계좌로 부여되며 모계좌(하나은행 231-910056-56104, 예금주 : GS건설(주))로 이체되어 관리됩니다.
 - 세대별 추가 선택품목(플러스옵션)의 중도금, 잔금 납부계좌(가상계좌)는 계약체결 시 세대별 공급계약서에 명기하여 고지할 예정입니다. (타 은행 계좌이체 및 무통장 입금 가능합니다.)
- 무통장 입금 시, 동·호수 7자리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예시: 101동 101호 홍길동: 1010101홍길동)
- 추가 선택품목(플러스옵션)의 중도금 및 잔금은 납부 지정 일자에 입금 바라며, 사업주체에서는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추가 선택품목(플러스옵션) 대금 납부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추가 선택품목(플러스옵션) 대금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착오 납부에 따른 문제 발생 시 사업주체 및 시공사는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타인 명의 등 계약금 납부주체가 당첨자와 상이하거나 불분명하게 입금된 경우 계약금 미납 및 계약 미체결로 처리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제반 문제는 사업주체에서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단, 무통장 입금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에 대하여는 소명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합니다.
- 추가 선택품목 설치 위치 및 품목, 적용 범위 등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홈페이지 또는 견본주택을 확인 후 선택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12 유상옵션

■ 시스템에어컨 [LG전자 Premium UVnano실내기] (※ 발코니 확장 시에만 선택 가능)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주택형 (약식표기)	설치대수	설치장소	공급금액	비고
59A	2대	거실, 침실1	4,120,000	-
	4대	거실, 침실1, 침실2, 침실3	7,270,000	-
59B	2대	거실, 침실1	4,220,000	-
	4대	거실, 침실1, 침실2, 침실3	7,290,000	-
74A	2대	거실, 침실1	4,300,000	-
	4대	거실, 침실1, 침실2, 침실3	7,370,000	-
74A (주방 Style up 선택 시)	2대	거실, 침실1	4,330,000	-
	4대	거실, 침실1, 침실2, 침실3	7,880,000	-
74B	2대	거실, 침실1	4,520,000	-
	4대	거실, 침실1, 침실2, 침실3	7,900,000	-
74C	2대	거실, 침실1	4,330,000	-
	4대	거실, 침실1, 침실2, 침실3	7,880,000	-
84A	2대	거실, 침실1	4,330,000	-
	4대	거실, 침실1, 침실2, 침실3	7,880,000	-
	5대	거실, 침실1, 침실2, 침실3, 알파룸	9,330,000	-
84A (주방 Style up 선택 시)	3대	거실, 주방, 침실1	5,950,000	-
	5대	거실, 주방, 침실1, 침실2, 침실3	9,330,000	-
84A (주방 냉방 강화)	3대	거실, 주방, 침실1	5,950,000	-
	5대	거실, 주방, 침실1, 침실2, 침실3	9,330,000	-
	6대	거실, 주방, 침실1, 침실2, 침실3, 알파룸	11,060,000	-
84B	2대	거실, 침실1	4,520,000	-
	4대	거실, 침실1, 침실2, 침실3	7,900,000	-
	5대	거실, 침실1, 침실2, 침실3, 알파룸	9,350,000	-
84B (주방 Style up 선택 시)	3대	거실, 주방, 침실1	5,970,000	-
	5대	거실, 주방, 침실1, 침실2, 침실3	9,350,000	-
84B (주방 냉방 강화)	3대	거실, 주방, 침실1	5,970,000	-
	5대	거실, 주방, 침실1, 침실2, 침실3	9,350,000	-
	6대	거실, 주방, 침실1, 침실2, 침실3, 알파룸	11,080,000	-
84D	3대	거실, 주방, 침실1	5,950,000	-
	5대	거실, 주방, 침실1, 침실2, 침실3	9,330,000	-
99B	3대	거실, 주방, 침실1	6,460,000	-
	5대	거실, 주방, 침실1, 침실2, 침실3	9,640,000	-
126P/127P	3대	거실, 주방, 침실1	6,460,000	-
	6대	거실, 주방, 침실1, 침실2, 침실3, 침실4	11,090,000	-

- 시스템에어컨 선택 옵션에 따라서 시스템에어컨 수량 및 냉방 용량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상기 금액은 이에 따른 비용을 반영한 금액입니다.
- 상기 타입별 시스템에어컨 공사비 산정 시, 주택형별 면적에 따른 실외기 용량 차이로 인해 금액 차이가 발생합니다.
- 시스템에어컨은 냉방전용 제품으로 난방 운전이 불가하며, 운전 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시스템에어컨 설치로 인하여 우물천장의 크기 및 깊이, 에어컨 설치 부위의 천장 높이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시스템에어컨 위치는 등기구 위치를 고려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리모컨은 실내기 1대당 1개가 제공되며, 시스템에어컨 실외기는 실내기 소요 용량에 맞는 제품이 설치됩니다.
- 시스템에어컨 설치 시 실외기가 설치되는 구간에 노출 배관이 설치되며, 미관을 해칠 수 있습니다.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옵션 선택에 따라 각 세대 내 실외기실에는 에어컨 실외기가 설치되며, 이로 인한 실외기실 공간이 협소해질 수 있습니다.

■ 환기형 공기청정 시스템 (※ 발코니 확장 시에만 선택 가능)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품목	주택형 (약식표기)	선택안	LG 프리미엄 전열교환기	시스클라인		공급금액	공급업체	비고
				대수	설치장소			
시스클라인	59A, 59B, 74A, 74B, 74C, 84A, 84B, 84D, 99B	선택1	-	2대	거실, 주방	1,820,000	자이에스앤디	자이에스앤디
		선택2	-	2대	거실, 침실1	1,820,000		
		선택3	-	3대	거실, 주방, 침실1	2,660,000		
		선택4	-	5대	거실, 주방, 침실1, 침실2, 침실3	4,340,000		
	126P, 127P	선택1	-	2대	거실, 주방	1,820,000		
		선택2	-	2대	거실, 침실1	1,820,000		
		선택3	-	3대	거실, 주방, 침실1	2,660,000		
		선택4	-	5대	거실, 주방, 침실1, 침실2, 침실3	4,340,000		
		선택5	-	6대	거실, 주방, 침실1, 침실2, 침실3, 침실4	5,180,000		
		선택1	1대	2대	거실, 주방	3,120,000	자이에스앤디 & LG전자	150CMH 전열교환기 적용
시스클라인 + LG 프리미엄 전열교환기	59A, 59B, 74A, 74B, 74C, 84A, 84B, 84D, 99B	선택2	1대	2대	거실, 침실1	3,120,000		
		선택3	1대	3대	거실, 주방, 침실1	3,960,000		
		선택4	1대	5대	거실, 주방, 침실1, 침실2, 침실3	5,640,000		
		선택1	1대	2대	거실, 주방	3,220,000	자이에스앤디 & LG전자	대형평수 200CMH 전열교환기 적용
	126P, 127P	선택2	1대	2대	거실, 침실1	3,220,000		
		선택3	1대	3대	거실, 주방, 침실1	4,060,000		
		선택4	1대	5대	거실, 주방, 침실1, 침실2, 침실3	5,740,000		
		선택5	1대	6대	거실, 주방, 침실1, 침실2, 침실3, 침실4	6,580,000		

- 시스클라인 설치를 위해 일정 공간이 필요하며 설치 공간이 부족할 경우 시스클라인 적용이 불가능 할 수 있습니다.
- 시스클라인은 선택 옵션에 따라 세대 내 공기 청정화 능력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시스클라인은 한국공기청정협회(CA)에서 지정한 소음 기준에 부합하나 개인별 소음인지에 대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시스클라인은 천장에 빌트인 형태로 설치되는 제품으로 천장에 설치되는 기타 장애물(스프링클러, 감지기 등)을 고려하여 실시공시 설치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시스클라인은 제조사 및 디자인 변경,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실 설치 시 모델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는 품질 향상을 위한 개선으로 동등 이상 수준의 제품으로 대체될 수 있습니다.
- 시스클라인 구성품은 천장형 공기청정기와 리모컨이며 천장형 공기청정기 1대당 제어용 리모컨 1대를 제공하오니 계약 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LG 프리미엄 환기(전열교환기)는 시스클라인 환기 연동 전용 패키지 상품으로 개별 구매는 불가능합니다.
- LG 프리미엄 환기는 실외기실에 설치되며 공급금액은 기본 제공 전열교환기 미설치로 인한 감소 비용이 정산된 금액입니다.
- LG 프리미엄 환기 미선택 시 기본 제공 전열교환기가 시공됩니다.

■ 가전 옵션 (※ 발코니 확장 시에만 선택 가능)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품목	제조사	모델명	공급금액	비고
오브제 컬렉션 (FIT & MAX)	LG전자	M62BAAA332 + Z334AAA151	5,970,000	4도어 냉장고 + 3도어 김치냉장
광파오븐		MZ385EBTAD	540,000	드로워 포함
식기세척기		DIE6PT	1,450,000	가구 부착형(14인용)

- 주방 가전제품은 주방 구조에 따라 설치 위치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유상옵션(시스템에어컨, 환기형 공기청정 시스템, 가전옵션) 공사비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구분	금융기관	납부계좌	예금주
유상옵션 공사비 납부계좌	신한은행	계약자별 가상계좌 부여	자이에스앤디㈜

- 유상옵션(시스템에어컨, 주방 가전, 시스템클라인) 공사비 납부계좌는 개인별로 부여되는 가상계좌이며, 품목별로 지정된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유상옵션 공사비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시스템에어컨, 주방가전, 시스템클라인은 시공 전문 자회사인 자이에스앤디㈜에서 계약체결 및 시공 예정으로 공동주택 분양대금 납부계좌, 발코니 확장 대금 납부계좌, 추가 선택품목(플러스옵션 - Style Up, 개별 유상옵션) 납부계좌와 상이하므로 입금 시 착오 없으시기 바라며, 대금 입금 전 다시 한번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 추가 선택품목은 설치의 특성상 마이너스 옵션 미선택 및 발코니 확장 선택 시에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시행지침] 제4조1항에 의거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품목으로서 계약자는 추가로 품목을 선택하고 공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추가 선택품목의 설치 여부에 대하여 입주자모집공고 시 입주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입주자와 주택공급계약 체결 시 추가 선택품목의 구입 의사가 있는 입주자와 추가 선택품목 공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 외 추가 선택품목 설치에 관한 내용은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및 시행지침]에 따릅니다.
- 상기 유상옵션은 계약 시점 이후 시공을 위해 자재를 발주해야 하므로 중도금 납부 이후에는 유상옵션 공급주체 및 시공사의 동의 없이 계약 해제 및 변경이 불가합니다.
(추가 선택품목 계약체결 최종 일정은 별도 통보 예정입니다.)
- 시공상의 문제로 일정 시점 이후에는 별도로 유상옵션의 계약이 불가합니다.
- 상기 유상옵션 품목 금액에는 취득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입주 후 관할 관청으로부터 취득세 등 제세공과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카탈로그 상 표기되는 각 실의 명칭은 카탈로그 기준이나, 설계변경 등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 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신청 형별 설치 위치 등 세부사항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유상옵션 품목의 설치 위치는 지정되어 있으며, 계약자가 임의로 위치를 지정할 수 없습니다.
- 유상옵션의 위치 및 선택 항목은 분양 홈페이지 또는 견본주택에 전시되오니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유상옵션 품목은 견본주택에 설치된 세대에 일부 품목이 전시되오니청약 및 계약 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유상옵션 품목은 본 공동주택 컨셉에 맞추어 디자인하고 품질 관리하는 품목으로써 판매가 및 사양에 대해 교체 및 해약을 요구할 수 없으므로 타사 및 기타, 시중 품목과 비교 검토한 후에 계약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13 기타 계약자 안내

■ 입주자 사전 방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제3항제27호에 의한 도장공사, 도배공사, 가구공사, 타일공사, 주방용구공사 및 위생기구공사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입주개시 약 1~2개월 전에 입주자 사전방문을 실시할 수 있으며, 정확한 예정일자는 별도 통보합니다.

■ 입주예정일 : 2029년 3월 예정 (향후 일정 등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될 경우 추후 개별 통보기로 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0조의2에 따라 실제 입주가 가능한 날부터 2개월 전에 실입주일을 통보하고, 1개월 전에 실입주일을 각각 통보할 예정입니다. 또한, 입주 예정자들의 원활한 입주를 위하여 입주가 가능한 날부터 60일 이상의 입주지정기간을 설정할 예정이며, 정확한 일정은 추후 통보 예정입니다.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 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중도금과 잔금을 실입주지정일 이전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공사 중 천재지변, 정부 정책이나 관계 법령의 변경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 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 지연에 따른 이익을 제기할 수 없으며, 지체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입주시 단지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비 예치금을 부과하며, 입주지정기간이 경과하여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관리비 등이 부과됩니다.
-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에 대해서는 입주 및 잔금 완납이나 소유권 이전 유무에 관계없이 계약자가 부담합니다. 또한, 계약자의 불이행으로 인해 사업주체가 입은 손해는 계약자가 배상합니다.
- 계약자는 입주지정기간 이내에 잔여 중도금 및 잔금, 연체료를 완납하고, 사업주체가 요구하는 제반서류 및 비용(중도금대출 상환 영수증 또는 중도금대출에서 담보대출로 대환되는 은행 확인 서류,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제반서류 및 비용, 선수관리비 납부영수증 등)을 사업주체에게 제출 또는 납부한 후에 입주증을 발급받아 입주하여야 합니다.

- 소유권보존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적공부정리 절차 등으로 지연될 수 있습니다. (특히, 대지의 이전등기는 상당기간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건물등기와 대지권등기를 별도로 이행하여야 함)

■ 부대복리시설

- 부대시설 : 관리사무실, 경비실, 지하주차장 등
- 복리시설 : 어린이집, 경로당, 다함께돌봄센터, 새싹스테이션, 작은도서관, 커뮤니티시설(피트니스, GX, 골프연습장, 사우나 등)

■ 공동주택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보상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보상은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 제37조, 동법 시행령 제36조, 제37조, 제38조 및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동법시행령 제5조에 따라 적용됩니다.

■ 주차장 차로 및 출입구의 높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제3항제29호의2

구분	주차장 차로의 높이	주차장 출입구의 높이
단지 주출입구를 통한 진입 (지하2층)	2.7M	2.7M
단지 부출입구를 통한 진입 (지하1층)	2.3M	2.3M

■ 내진성능 및 능력 공개

- 본 아파트는 「건축법」 제48조제3항 및 제48조의3제2항에 따른 내진성능 확보 여부와 내진 능력 공개에 의거 메르칼리 진도 등급을 기준으로 내진능력을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구분	등급
내진능력	VII-0.207g

■ 친환경 주택의 성능 수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제3항제21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제3항에 따라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을 다음과 같이 표시합니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4조에 따른 친환경 주택의 건설기준 등)

의무사항		적용 여부	사양, 성능, 설치위치, 설치개수 (필요시)
건축부문 설계기준 (제7조제2항제1호)	단열조치 준수(가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제1호에 의한 단열조치 준수
	바닥난방의 단열재 설치(나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제3호에 의한 바닥난방에서 단열재의 설치 준수
	방습층 설치(다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제4호에 의한 기밀 및 결로방지 등을 위한 조치를 준수
기계부문 설계기준 (제7조제2항제2호)	설계용 외기조건 준수(가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8조제1호에 의한 설계용 외기조건 준수
	열원 및 반송설비 조건(나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8조제2호에 의한 열원 및 반송설비 조건 준수
	고효율 가정용보일러(다목)	적용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 제17조에 따른 환경표지 인증 제품 사용
	고효율 전동기(라목)	적용	산업통상부 고시「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에 따른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받은 제품 또는 최저소비효율기준을 만족하는 제품 사용
	고효율 난방, 급탕·급수펌프(마목)	적용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받은 제품을 사용하거나 그 평균 효율이 KS규격에서 정해진 기준 효율의 1.12배 이상의 제품 사용
	절수형 설비 설치(바목)	적용	「수도법」제15조 및 「수도법시행규칙」 제1조의2, [별표1]에 따른 절수형 설비 적용
	실별 온도조절장치(사목)	적용	세대 내 각 실별난방온도를 조절할 수 있는 온도조절장치를 설치
전기부문 설계기준 (제7조제2항제3호)	수변전설비 설치(가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제1호에 의한 수변전설비 설치
	간선 및 동력설비 설치(나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제2호에 의한 간선 및 동력설비 설치
	조명설치(다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제3호에 의한 조명설비 설치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 설치(라목)	-	고시 2022-235호 설계기준 삭제로 적용 안함
	공용화장실 자동점멸스위치(마목)	적용	단지 내의 공용화장실에는 화장실의 사용 여부에 따라 자동으로 점멸되는 스위치 설치

【공사】주택도시보증공사를 의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주채무자】보증서에 적힌 사업주체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분양이행】주택법령에서 정한 주택건설기준 및 해당 사업장의 사업계획승인서,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여 입주를 마침
 【환급이행】보증채권자가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되돌려 줌

제2조 (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 등의 납부)

- ①공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분양권 양도자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포함)에는 보증채권자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않습니다.
1. 천재지변, 전쟁, 내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사정으로 주채무자가 주택분양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여 발생한 채무
 2. 주채무자가 대물변제·허위계약·이중계약 등 정상계약자가 아닌 자에게 부담하는 채무

【대물변제】주채무자의 채권자가 그 채권에 대하여 주채무자가 분양하는 아파트 등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변제에 갈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허위계약】분양의사가 없는 자가 주채무자의 자금 유통 등을 돕기 위하여 명의를 빌려주어 분양계약하는 것으로 차명계약을 의미합니다.

3. 입주자모집공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입주금】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로부터 받는 계약금과 중도금 및 잔금을 말합니다.

4.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한 입주금납부계좌(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서에서 지정한 계좌를, 공사가 입주금납부계좌를 변경·통보한 후에는 변경된 납부계좌를 말함)에 납부하지 않은 입주금
 5. 공사가 보증채권자에게 입주금의 납부증지를 알린 후에 그 납부증지통보계좌에 납부한 입주금
 6.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납부기일 전에 납부한 입주금중 납부기일이 보증사고일 후에 해당하는 입주금. 다만, 공사가 입주금을 관리(주채무자 등과 공동관리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계좌에 납부된 입주금은 제외합니다.
 7. 보증채권자가 분양계약서에서 정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넘어 납부한 입주금
 8.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입주금에 대한 이자, 비용, 그 밖의 종속채무
 9. 보증채권자가 대출받은 입주금 대출금의 이자
 10. 보증채권자가 입주금의 납부지연으로 납부한 지연배상금
 11. 보증사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에게 되돌려 주어야 할 입주금. 다만, 보증사고 사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유로 보증채권자가 보증사고 발생 이전에 분양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12. 주채무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입주예정일 이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한 경우의 지체상금
 13.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주택 또는 일반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의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않은 사양선택 품목(예시:홈오토, 발코니샤시, 마이너스옵션 부위, 그 밖의 마감재공사)과 관련한 금액
 14. 보증채권자가 제5조의 보증채무이행 청구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3조의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그 밖에 보증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발생하거나 증가된 채무
 15.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사 등과 도급관계에 있는 수급인, 그 대표자 또는 임직원 등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사 등에게 자금조달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납부한 입주금
 16.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사 또는 그 대표자 등이 보증채권자에 대한 채무상환을 위하여 납부한 입주금
 17.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사 또는 그 대표자 등으로부터 계약금 등을 빌려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 ②공사가 제6조에 따라 분양이행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에는 보증채권자는 잔여입주금 및 제1항 제4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입주금을 공사에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입주금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잔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1. 사용검사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2. 임시사용승인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중 전체 입주금의 9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잔금

【보증채권자】보증서에 적힌 사업에 대하여 주택법령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준수하여 주채무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분양권 양수자를 포함)를 말합니다. 다만, 법인이 주택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 이전에 그 주택분양계약에 대하여 공사에 직접 보증편입을 요청하고 동의를 받은 법인만 보증채권자로 봅니다. 이하 같습니다.

제4조 (보증사고)

- ①보증사고란 보증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주채무자의 정상적인 주택분양계약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를 말합니다.
1. 주채무자에게 부도·파산·회생절차개시신청·사업포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예정공정률(주채무자가 감리자에게 제출하는 예정공정표상의 공정률을 말함. 이하 같음)보다 25퍼센트P 이상 부족하여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다만, 입주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행청구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3.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75퍼센트를 넘는 경우로서 실행공정이 정당한 사유 없이 예정공정보다 6개월 이상 지연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4. 시공자의 부도·파산 등으로 공사 중단 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보증기간】 해당 주택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일(복리시설의 경우 신고일을 말함)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사용검사 또는 해당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 한함)까지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 ② 보증사고일은 공사가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사고 안내문으로 알려면서 다음 각 호 중에서 보증사고일로 지정한 날을 말합니다. 이 경우 공사는 보증서에 적힌 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를 한 일간지(공고를 한 일간지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1개 일간지를 말함)에 실어 통보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이하 같습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부도·파산일, 회생절차개시신청일, 사업포기 관련 문서접수일 등
 2. 제1항 제2호에서 제4호의 경우에는 보증이행청구 접수일

■ 관리형 토지신탁 관련 사항

- 본 공급물건은 사업의 안정적인 진행을 위해 「신탁법」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위탁자 겸 수익자인 (주)오앤티비홀딩스, 시행수탁자 한국투자부동산신탁(주) 및 시공사 지에스건설(주), 대출금융기관인 우선수익자간 체결한 관리형 토지신탁계약 방식으로 시행 및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실질적 사업주체는 (주)오앤티비홀딩스이며, 분양계약자는 다음 사항을 인지하여야 합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 및 공급계약에서 시행수탁자 한국투자부동산신탁(주)는 분양 물건에 대한 분양공급자(매도인)의 지위에 있으나, 본 건 신탁의 수탁자로서 신탁계약에 의거 신탁업무 범위 내에서 신탁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매도인으로서의 책임을 부담하고, 본 공급계약으로 인한 매도인으로서 일체의 의무와 책임은 실질적 사업주체인 시행위탁자 겸 수익자인 (주)오앤티비홀딩스가 부담합니다.
- 본 공급물건은 「신탁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토지신탁사업에 의거 공급되는 물건인 바, 신탁기간의 만료, 신탁해제나 해지(개별 수분양자에게로의 소유권 이전을 위한 일부해지를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않음) 등의 사유로 시행위탁자인 (주)오앤티비홀딩스와 시행수탁자인 한국투자부동산신탁(주)가 체결한 신탁계약이 종료 또는 해제, 해지되는 경우, 분양계약(공급계약)상 매도인의 지위 및 본 사업상 시행자(사업주체)의 지위에 기한 한국투자부동산신탁(주)의 모든 행위 및 권리와 의무는 시행위탁자인 (주)오앤티비홀딩스에게 별도의 조치 없이 면책적으로 포괄 승계됩니다.
- 분양계약자는 본 분양물건이 토지신탁사업에 의거하여 공급되는 재산이라는 특수성을 인지하고, 하자보수와 관련된 모든 책임이 실질적 사업주체인 시행위탁자 (주)오앤티비홀딩스와 시공사인 지에스건설(주)에 있음을 확인합니다.
- 분양수입금은 토지비, 공사비, PF대출금 상환, 기타사업비 등을 위해 사용될 수 있습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 및 공급계약서 내용 외 한국투자부동산신탁(주)가 당사자로서 서면으로 약정하지 않은 수분양자와의 별도의 확약, 계약 등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 및 공급계약과 관련된 분양대금은 반드시 공급계약서에 규정된 시행수탁자 한국투자부동산신탁(주)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여야 하며, 그 외의 방법으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분양(매매)대금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며, 매도인에게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 본 공급물건은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을 원인으로 한 신탁재산으로서 시행수탁자 한국투자부동산신탁(주)는 일체의 책임 및 의무를 부담하지 않으며(예외적으로 한국투자부동산신탁(주)가 매도인 또는 공급자로서의 책임 및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도, 한국투자부동산신탁(주)는 신탁계약이 정한 업무범위 내 및 위 책임 및 의무가 확정되는 시점에 현존하는 신탁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부담하며) 분양대금 반환책임 등 기타 매도인으로서의 모든 책임은 시행위탁자인 (주)오앤티비홀딩스에게 있습니다.
- 본 관리형 토지신탁 관련 사항의 내용은 본 공고 모든 내용에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 감리회사 및 감리금액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구분	건축감리	전기감리	소방감리	통신감리
회사명	(주)영화키스톤건축사사무소	(주)건축사사무소 테크뱅크	(주)세종기술단	(주)서원이앤씨
금액	5,383,935,975	929,720,070	1,268,983,000	232,320,000

※상기 감리금액은 감리회사와의 계약변경 등으로 증감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별도 정산하지 않음)

■ 사업주체 및 시공회사

구분	시행수탁자 및 사업주체	시공사	시행위탁자
회사명	한국투자부동산신탁(주)	지에스건설(주)	(주)오앤티비홀딩스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18, 섬유센터 7층 (대치동)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33 (청진동, 그랑서울)	경기도 화성시 동탄기흥로 41, 201호 (방교동, 세비앙프라자)
법인등록번호	110111-7125720	110111-0002694	134811-0457839

14 단지 여건 등 유의사항

※아래의 유의사항에 대하여 반드시 확인 후 청약 및 계약하시길 바라며, 추후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본 입주자모집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련 법령을 따릅니다.

구분		내용
공통	일반사항	· 각종 홍보물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견본주택 및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개인 또는 임의 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 또는 마감 사양, 부대·편의시설, 조경 등의 추가 설치 및 교체를 요구할 수 없으므로 타 단지와 충분히 비교 검토 후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 카탈로그 등에 기재된 마감재 수준 이상의 변경 요구는 불가하므로 마감재 수준을 자세히 확인하신 후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모집공고문 및 분양계약서와 기타 홍보물과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주자모집공고문과 분양계약서 내용이 우선 적용됩니다.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 보상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 2, 동법시행령 제5조 및 관계법령에 의거 적용됩니다. · 일부 세대는 공사 품질관리를 위하여 선행 시공 세대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인·허가	· 각종 홍보물은 2025년 11월 사업계획변경승인도면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최종 시공은 준공 도면에 의거하여 시공됩니다. · 홍보물에 표시된 주변 개발계획 및 각종 시설(도로, 학교, 차도, 하천, 광장, 공원, 녹지, 유보지 등) 조성 계획은 각 시행 주체가 계획 또는 예정 중인 사항을 표현한 것으로 시행 주체 및 국가정책에 따라 향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최초 사업계획승인일이 2025년 3월 31일로 소방내진설계가 적용됩니다. · 현장여건 반영, 구조·성능·품질 개선 등을 위하여 적절한 절차를 거쳐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사업주체가 인허가를 통해 변경할 수 있습니다. · 본 단지는 오산시 고시 제2024-40호에 의거 구역지정, 개발계획수립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된 오산(내삼미2구역)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내의 공동주택용지(A1블럭)사업으로 오산(내삼미2구역)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의 기반시설 준공 전 본 단지의 입주 및 주변 지역의 사업지연 등에 따른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계약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본 아파트는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인정 및 검사기준에 따라 인증받은 자재를 사용할 예정이며, 바닥충격음 차단성능은 입주자모집공고 내 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에 따라 진행 예정입니다.
	사업지 및 도로, 단지 주변 현황	· 단지 북쪽에는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봉담-동탄), 서쪽에는 북삼미로(약 38.7M), 남쪽에는 약 24.6M도로(계획)가 접하여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니, 현장을 확인하신 후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환경영향평가 결과에 따라 단지 북측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봉담-동탄)와 서측 북삼미로(약 38.7M) 관련하여 단지 내외부에 방음시설이 설치될 예정이며, 관련계획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서측에 설치 예정인 토목옹벽 및 방음시설은 단지 내 공용 시설물로 유지관리 책임은 공동주택 입주자에게 있으며, 관리에 따른 유지보수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니, 청약 및 계약 전 해당 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서측에 설치되는 토목옹벽, 방음시설은 향후 환경영향평가가 변경에 따라 관련 사항(높이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사업 부지면적, 대지지분 등은 향후 지적확정측량 결과 또는 공부정리 결과에 따라 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단지 경계부는 도로와의 높이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단지 경계에는 투시형 휀스, 방음시설 또는 조경 등이 설치될 수 있으며, 행정 관청의 지침 등에 따라 설치 여부, 구간, 재질, 규격 및 형태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부지 내 옹벽 지지를 위해 지하 매설물이 설치될 경우 영구 점용료가 발생할 수 있으며, 해당 비용은 관리비에 포함되어 부과되며 계약 시 해당 내용을 인지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기반시설의 위치, 도로, 하천, 소음, 조망, 일조, 진입로, 냄새 유발시설, 분묘 및 송전탑 등 혐오시설 유무, 주변 개발 현황 등 단지 주변 환경에 대해서는 각종 홍보물 및 모형과는 상이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사업 부지 현장을 방문하여 확인하신 후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오산 내삼미2구역 내외 타사업 개발 등으로 입주 후 공사 중 먼지, 소음, 진동으로 인한 불편이 발생할 수 있으니, 현장을 확인하신 후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인접 지역 개발 등으로 개설되는 도로는 당 사업과는 무관하며, 조감도, 단지 모형도, 단지 배치도 등에 표현된 주변 도로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변경에 따라 기반시설 등이 변경될 수 있음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 주변단지의 신축으로 인한 건축사향과 아파트 배치, 구조 및 동·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진동 (주변도로의 비산분진, 소음문제 등을 포함한다) 등으로 환경권 및 사생활 등이 침해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청약신청 및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본 단지는 동측에 소공원이 인접하고 연결통로가 계획되어 있어,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충분히 확인하신 후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소공원 지하에는 지하저류지(우수저류조)가 설치 예정입니다. · 단지 주변의 도시계획도로 등 도시계획시설 및 기반시설 등은 해당 관청에 기부채납 또는 무상양도 예정이며, 조성 계획 및 설치 일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당 사업지구(내삼미2구역) 인근에 분묘가 위치하고 있으니 청약 및 계약 전 현장 및 위성사진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향후 기반시설토지와 A2블럭(내삼미2구역) 사업토지에 걸쳐 있는 토지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 따른 필지분할 및 토지이동을 실시하고, 그에 따라 기반시설토지가 아닌 토지에 관하여 설정된 금지사항 부기등기를 소멸 또는 말소할 예정이니, 청약 및 계약 전 해당 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학교	• 본 아파트 내에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에 따라 어린이집이 의무적으로 설치되며, 해당 어린이집 시설은 영유아보육법 제12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의2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운영될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사업주체는 아파트 사용검사 신청 전까지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운영에 관한 협약을 오산시와 체결할 예정입니다. 다만, 입주(예정)자 등의 과반수가 서면으로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국공립어린이집이 설치되지 않을 수 있으며, 필요시 사업주체는 입주자 의견청취 절차 등을 포함하여 안내할 계획입니다. • 본 아파트 내에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에 따라 초등학교 방과 후 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한 다함께돌봄센터가 의무적으로 설치되며, 해당 센터는 아동복지법 제44조의2에 따라 오산시청이 직영 또는 위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사업주체는 아파트 사용검사 신청 전까지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협약을 관할 관청인 오산시와 체결할 예정입니다. 다만, 입주(예정)자 등의 과반수가 서면으로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다함께돌봄센터가 설치되지 않을 수 있으며, 필요시 사업주체는 입주자의 의견청취 절차 등을 포함하여 안내할 계획입니다. • 본 아파트 사업으로 유입되는 초등학생은 내삼미2구역 내 신설 예정인 (가칭)내삼미1초에, 중학생은 세교중학군[매홀중, 문시중, 세마중, (가칭)양산1중]에 배치 예정입니다. (내삼미1초: 2029. 3. 개교예정, 양산1중: 2027. 9. 개교예정) • 고등학생은 오산지역이 비평준화 지역이므로 경기도 내 고등학교에 지원 가능합니다. • 학생배치계획은 향후 교육정책 및 주변여건 등의 변화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신설학교 설립 지연 시 입주시기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 학생배치계획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단지	동별 현황	• 각 동의 저층 세대는 차량 통행 및 보행자로 인한 빛의 산란, 소음, 사생활 침해, 쓰레기분리수거장의 악취, 분진 등으로 인해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 단지 내(105동 남동측, 108동 북측)에 공동주택 발전기용 급배기 D.A가 설치되어, 발전기 가동 시 소음 및 진동, 연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일부 동의 주변 건물 및 구조물, 기존 건물의 재건축 및 증축, 단지 내 인접 동 및 같은 동 다른 라인에 의해 조망권의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각 동의 주출입구는 주변 여건에 따라 위치, 크기 및 구조 형식 등이 동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일부 동 호에는 이삿짐용 사다리차 접근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외에 레벨차가 있는 구간에는 자연석 쌓기, 비탈면, 옹벽, 방음시설 등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 부분에 인접한 세대는 조망권 침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필로티가 설치되는 동은 주행 차량 또는 보행자로 인해 생활권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낙하물 방지를 위한 캐노피가 추가 설치될 수 있고, 캐노피 형태와 재질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 동별 계단실 내 창호는 일부는 고정창, 일부는 프로젝트창으로 적용되며, 프로젝트창의 적용 위치는 층별, 동별 여건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엘리베이터홀 내 창호 유무 및 크기는 위치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108동, 109동, 110동 서측에는 토목옹벽 상부에 방음시설이 설치되어 인접한 세대는 조망권, 일조권 침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108동, 109동, 110동 서측 토목옹벽 높이는 10M, 토목옹벽 상부 방음시설 높이는 15M로 설치될 계획입니다. • 101동 지하2층에 다함께돌봄센터 와 새싹스테이션(스쿨버스존)이 설치되어 인접한 세대는 소음으로 인한 침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101동 지하1층에는 게스트하우스가 설치됩니다. • 101동 남서측, 110동 남동측에는 단지주출입구 문주가 설치되어 인접한 세대는 자동차 소음과 시야 간섭, 빛 산란 등 환경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 101동, 102동 남동측에는 근린생활시설 실외기가 설치되어 인접한 세대는 소음으로 인한 침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102동, 103동, 104동 최상층 펜트하우스에 접한 옥외공간은 세대 내 전용공간이 아닌 공용공간이며, 해당 공간의 유지관리 및 보수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관리규약에 따라 공동으로 관리됩니다. • 101동 남동측, 102동 남서측에는 근린생활시설 및 지하주차장으로 연결되는 계단실이 설치되며 인접한 세대는 소음과 시야 간섭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 102동 남동측, 103동 남서측에는 근린생활시설 및 지하주차장으로 연결되는 승강기가 설치되며 인접한 세대는 소음과 시야 간섭, 빛 산란 등 환경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 103동 남동측에는 근린생활시설 주차장이 설치되며 인접한 세대는 자동차 소음과 시야 간섭, 빛 산란 등 환경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 103동 남동측, 104동 남서측에는 단지부출입구 문주가 설치되어 인접한 세대는 자동차 소음과 시야 간섭, 빛 산란 등 환경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 103동 북동측, 104동 서측에는 지하주차장으로 연결되는 승강기가 설치되며 인접한 세대는 소음과 시야 간섭, 빛 산란 등 환경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 104동 지하1층에는 새싹스테이션(스쿨버스존)이 설치되어 인접한 세대는 소음으로 인한 침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104동, 105동 동측에는 소공원이 위치하여 소음 피해 및 사생활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105동 1층에는 경로당이 설치되며 인접한 세대는 소음으로 인한 침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105동, 106동, 107동, 108동 북측에는 인접지와와의 단차로 사면과 자연석 쌓기가 적용되어 저층부 세대의 조망권, 일조권 침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106동 1층에는 어린이집이 설치되며 북동측에 연접하여 유아놀이터가 설치되어 인접한 세대는 소음으로 인한 침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105동 남서측, 106동 남동측과 107동 남서측, 108동 남동측에 어린이놀이터가 설치되어 인접한 세대는 소음으로 인한 침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106동 남서측에는 지하주차장으로 연결되는 계단실이 설치되며 인접한 세대는 소음과 시야 간섭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 105동, 106동, 107동, 108동 북측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봉담-동탄)변으로 환경영향평가(소음영향평가)에 따른 방음시설이 설치될 예정이며 이로인해 소음과 시야 간섭, 빛 산란 등 환경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구단위계획, 환경영향평가 등 인허가 변경에 따라 기반시설 등이 변경될 수 있음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 109동 남측, 110동 북측에 어린이놀이터와 주민운동시설이 설치되어 인접한 세대는 소음으로 인한 침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110동 남서측에 단지 보행자전용 출입구가 설치되며 인접한 세대는 소음 피해 및 사생활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110동 지하2층에는 관리사무소, MDF실, 방재실, 용역원실이 설치되어 인접한 세대는 소음으로 인한 침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단지 주출입구 및 부출입구의 단차구간에는 장애인 편의시설(장애인을 승강기)이 설치됩니다. • 단지 내 주동, 옹벽, 방음시설, 조경시설 및 타단지, 지구 내·외부 시설 등에 의해 일부 저층 세대에서는 조망권 및 일조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청약 및 계약 전 세대별 위치를

		충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은 입주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 배치도의 대지경계선, 구역경계선, 법면 현황은 최종 측량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내부 도로 및 조경선은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 시 현장 여건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배치도 상의 각 시설의 명칭 및 내용은 인허가 과정, 법규 변경, 공사 여건 및 상품 개선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계획은 본 시공 시 현장 여건에 맞게 설계 변경될 수 있으며 본 시공 시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용적률, 주차 대수는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부대복리시설(주민공동시설 등), 근린생활시설의 구성 및 건축 이용 계획은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 시 현장 여건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상하수도, 도시가스, 전기, 통신 등 각종 인입 계획은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 시 현장 여건에 따라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는 단지 배치 및 층별, 향, 동, 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조망권·소음 및 진동·악취 발생·사생활 침해 등 생활의 불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주거 동의 동, 호수, 층별 위치에 따라 난간턱의 높이, 난간대의 형태 및 재질 등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동 출입구의 장애인용 경사로, 단지 외부 도로, 단지 내 도로(차도, 비상차도, 산책로 등), 어린이집, 조정시설(수공간 등), 주민운동시설 및 어린이 놀이터, 자전거 보관소, 지하주차장 주차 램프, 단지 주출입구 등과 인접한 세대는 소음, 불빛, 분진 등에 의한 생활권과 사생활 침해 등 각종 환경권의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구간별 사업 부지 단차 구간에 자연석 쌓기 또는 옹벽이 설치될 수 있으며, 추후 인허가 조건, 미관, 구조물 안전성 등을 고려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동 상부에 공용부 전기 생산을 위한 태양광 집광판이 설치될 수 있으며, 위치 및 규모(크기, 높이, 개소)는 본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동 배치 및 일조량에 따라 일부 동 혹은 전체 동에 분산 설치되며, 구조물에 의해 설치 높이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주출입구 인근) 지중 열교환기가 설치되며 천공 위치 및 개소 등은 실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옥탑층에 의장용 구조물, 설비 통기 배관, 연도, 고가수조, 경관조명, 위성안테나, 공청 안테나, 태양광 집광판, 이동통신 중계기, 항공장애등, 피뢰침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일조권·조망권·소음 및 진동·사생활 침해, 조명 및 빛의 산란에 의해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 및 지하주차장의 기초 구조는 굴토 후 지내력시험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요 구조체는 정밀구조 계산에 따라 최적화 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내력벽은 비내력벽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치장석재/벽돌 및 필로티 마감은 비구조 요소 내진 설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전체 주동은 필로티가 설치되며, 필로티의 층고는 각 동마다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주출입구 및 부출입구를 제외한 보행자 전용 통로는 개방형으로 시공되므로 외부 인원의 통제제한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배치도 상에 표현된 D.A의 위치, 수량 및 크기는 변동될 수 있으며, 일부 D.A는 건물에 매립되어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옥외 계단 및 옥외 엘리베이터의 외부 마감은 실시공 과정에서 디자인, 색상, 설계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스프링클러 배관 관경 및 기준 개수 등 소화 시설물의 기준은 수리 계산에 의해 설계도면과 다르게 시공될 수 있습니다. - 조경 공간의 형태, 도로의 선형, 포장 계획, 세부 식재 위치 등은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 시 현장 여건 등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옥외 조경 공간에 지하시설물 환기 및 채광을 위한 시설물(환기창, D.A, 발전기 연도 등)이 설치될 수 있으며, 저층 세대와 단지 내 통행로 등에 인접할 경우 생활에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수경 시설 사용에 의해 발생하는 관리·유지·보수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단지 외부 시설 내 인터넷 필요 시 통신 관련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단지 내부에 전력 및 통신 인입을 위한 시설물, 전력 및 통신 맨홀 등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 시설물의 위치는 한국전력공사, 기간통신사업자와의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전기통신사업법 제 69조의2 및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 24조의2 등에 의거, 기간통신사업자 협의대표인 한국전파진흥협회 이동통신설비 구축지원센터와 구내용 이동통신설비의 설치 장소 및 설치방법 등에 대해 협의하였습니다. 단지 내에 기간통신사업자의 이동통신 중계기 및 옥외안테나가 설치될 예정이며, 본 공사 시 우수한 통신품질이 제공될 수 있는 위치로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 추후 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청약 전 반드시 확인하신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이동통신설비 설치 예정 위치: 102동, 104동, 106동, 109동, 110동 옥상층 및 지하주차장 헬름 - 도시가스 배관의 세대 내 원활한 인입 및 가스계량기 설치를 위해 다용도실의 천장고 및 마감면이 일부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일부 동 전면 또는 후면에 옥외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인근 세대는 소음 등에 의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계약 전 단지 모형 등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배치상 레벨차에 의해 데크로 분할 계획되어 있으며, 각 데크의 수직면 및 인접 대지와와의 레벨차에 따른 옹벽면에 인접한 세대는 조망권, 일조권 침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공기안전매트 설치 구간에는 교목 및 관목 식재가 되지 않으며 인·허가 과정 등에 따라 식재 계획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텃밭 조성 시 입주인이 자체적으로 배분 및 운영, 관리하여야 하며, 인근 세대는 이로 인한 소음, 냄새, 사생활 침해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도로는 비상 상황에서 소방차 등의 비상 차량에 한해 이용할 수 있으며, 일반 차량이 이용할 경우 보행자 안전 상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유아놀이터는 어린이집 전용으로 계획되어 있으므로 입주자의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주동 및 근린생활시설, 주민공동시설 등 부대시설 상부에 옥상 조경이 설치될 수 있으며, 조경 계획은 옥상의 환경을 고려해 실시설계 및 시공이 확정됩니다.
	외관계획	- 외창부 벽에 입면 디자인을 위한 돌출부가 있을 수 있으며, 일부 세대의 외벽 및 발코니, 지붕 등에 장식용 구조물 등이 설치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건물의 외관 디자인(색채, 줄눈 계획, 입면 패턴, 마감재, 옥상 구조물 등), 공용부 디자인(동 출입구, 지하층 출입구, 필로티, 캐노피, 경비실, 부대시설 등), 외부 시설물(문주, D.A, 자전거 보관소, 쓰레기분리수거장 등), 조경 디자인, BI 위치 및 내용, 난간의 형태, 옹벽 디자인 등은 설계 및 인·허가 과정, 사업주체 협의에 따라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으며, 시공사의 고유한 업무 영역으로 입주자의 개인 취향이나 민원에 의한 변경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 아파트 저층부는 석재, 석재뿔칠, 페인트 등 기타 자재로 마감되고, 주동 형태에 따라 각 자재의 적용 비율 및 적용 층수는 각 동별로 상이할 수 있으며, 인허가 및 현장 여건에 의해 조정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문주는 진입 공간 배치 현황 및 현장 여건에 맞춰 형태, 크기, 배치가 결정되며, 문주 설치로 인해 주 진입부에 위치한 일부 저층 세대에서는 세대 조망에 간섭 및 일조권 침해가 있을 수 있으며, 문주에 설치된 조명 및 빛의 산란에 의해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외부 마감재 사양 및 디자인은 단지별로 상이할 수 있으며, 본 아파트의 마감재 사양 및 디자인에 대해 타사 및 시공사의 타 단지를 비교하여 추가 설치 또는 교체 등의 요구를 할 수 없으므로 충분히 비교 검토 후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아파트에 적용된 외관 특화, 입면, 색채 및 마감재 등 디자인 일체는 변경될 수 있으며, 인허가 등 중대한 변경 사유 발생 및 마감 수준 저하가 아닌 경우 입주자에게 별도의 동의 절차를 밟지 않습니다. • 아파트 옥상 및 외벽에 경관조명, 조형물 및 로고(BI) 등이 설치되어 일부 세대 일조, 조망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LED 조명으로 인하여 인접 세대는 빛 반사로 인한 눈부심, 소음 등 피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공용시설	• 주민공동시설, 근린생활시설 등 부대시설에 인접한 세대는 해당 시설 이용 및 부속 시설물(보일러 연도, 에어컨 실외기, 배기팬, 설비 시설, 쓰레기분리수거장, 옥외 엘리베이터 등)로 인해 일조권·조망권·소음 및 진동·열기·사생활 침해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현장 여건에 따라 부속 시설물의 위치 및 크기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계획된 주민공동시설(어린이놀이터, 야외 운동시설, CLUB XIAN, 어린이집 등) 및 산책로 설치로 인해 아파트 세대의 프라이버시가 침해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주민공동시설의 구체적인 운영 방법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후 입주자에 의해 결정됩니다. • 주민공동시설의 기본 마감 외의 시설 운영을 위한 내부 소모품 및 집기류(이동 가구, 비품, 서적, 스탠드 등) 등은 제공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동주택관리법」 제11조에 의거 사업 주체는 입주자들의 편의를 위하여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부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후 새로운 주택관리업체를 선정할 때까지 주민공동시설 등을 운영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제반 비용은 동법 제23조에 의거, 관리비에 포함하여 개별 세대에 부과됩니다. • 주민공동시설 등 부대시설의 성능 개선 또는 인허가 협의 결과에 따라 실 시공 시 위치, 동선, 실내 계획, 입면 디자인, 마감재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 단지 내 쓰레기분리수거장 및 재활용 보관소 등이 설치되어 일부 세대는 냄새 및 소음, 분진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쓰레기 수거차량의 상시 접근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 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CLUB XIAN(피트니스클럽, GX룸, 골프연습장, 작은도서관, 카페(WPS스타벅스) 등), 부속동(아너스클럽 등) 및 일부 공용부(지하주차장 및 아파트 PIT)에는 입주지정기간을 전후하여 입주지원센터가 설치되어 입주관리 업무를 진행하며, 입주 후 약 27개월까지 AS 업무를 위한 사무실 및 창고가 설치되어 운영됩니다. 각 운영 기간은 단지 사정에 따라 연장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발생하는 수도 및 전기 요금 등은 관리비로 부과됩니다. CLUB XIAN에 설치되는 운동 기구는 준공 후 입주지정기간이 종료된 이후 설치될 수도 있습니다. • CLUB XIAN은 입주지정기간 경과 후 관리주체에서 운영하게 되며, 운영 시 입주안내문과 CLUB XIAN 운영 홍보 내용을 통해 관리주체가 사전 고지한 시설 운영 시간과 요금표에 따라 공용 또는 개별 세대 관리비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후 「공동주택관리법」에 의거한 입주민 결의 등에 의해 운영시간과 요금제는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 CLUB XIAN 요금은 시설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소모품비, 수도광열비, 충당금 등 제반 운영 비용을 포함하며, 관리 수입으로 전액 귀속됩니다. • 지하주차장 구조검토 결과에 따라 기둥, 보, 벽체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주민공동시설 내 기둥이 추가되거나 공간계획과 인테리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새싹스테이션(스쿨버스존) 내 보호자 대기소의 집기류는 별도 제공되지 않습니다. • 준공 후 조경 유지 관리 의무는 관리주체 및 입주자에게 있으며, 유지 관리 소홀로 인한 조경수 고사 및 조경 하자는 시공사에 책임이 없습니다. • 126㎡P 타입, 127㎡P 타입 옥외공간 일부에 하부 세대의 원활한 배수 성능 확보를 위한 통기 배관 및 우수입상관 등이 노출 설치되어 미관이 저해될 수 있습니다. • CLUB XIAN은 지하층에 설치되나 자연채광 및 자연환기가 일부 가능합니다. • 각 주동 주출입구 홀, 커뮤니티, 근린생활시설 지붕 등은 개인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무단 사용으로 인한 피해발생 책임은 입주자에게 있습니다. • 각 세대의 엘리베이터 홀과 현관문 사이의 공간은 공용면적이므로 전용화(전실 등)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공용설비 및 시스템	• 부력 방지를 위한 영구 배수 공법이 적용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용 전기 요금 및 하수도 요금이 발생되고 해당 비용은 관리비에 포함하여 부과됩니다. • 지하층 엘리베이터홀에 설치되는 공조시스템 가동에 따른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해당 비용은 관리비에 포함하여 부과합니다. • 도시가스 공급을 위하여 단지 인근 정압기가 설치될 수 있으며, 설치 위치 및 제반 사항은 도시가스 공급업체와의 최종 협의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당 현장은 도시가스 원격검침 계량기가 설치되는 아파트이며, 파손·고장 등 교체 시, 그 비용은 가스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관련 법령 및 인허가 조건에 의해 지하저수조와 빗물저류조가 설치될 수 있으며, 유지관리에 따른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해당 비용은 관리비에 포함되어 부과됩니다. • 지하주차장, 필로티 및 근린생활시설에는 배관 동파 방지를 위해 열선이 설치될 수 있으며, 해당 비용은 관리비에 포함하여 부과합니다. • 공용부위 조명 및 경관조명, 보안등, 조경용 조명, 싸인용 조명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유지, 보수, 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각 동의 저층부 및 고층부 세대는 가로등(보안등) 및 경관조명에 의한 야간조명에 의한 피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지하 주차장 출입구의 지붕 및 지하시설물의 환기 및 채광을 위한 시설물(외부 계단, 승강기, Top Light, 제연휀룸, D.A)과 인접한 저층 세대는 소음 및 조망 등의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엘리베이터와 인접한 세대는 엘리베이터 운행으로 인한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기계실, 휀룸 및 이와 유사한 기계 설비 장치가 설치되는 실에 인접한 곳에서는 장비로 인한 소음, 진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 홈네트워크를 통한 화상통화는 불가합니다. • 주민공동시설 운영관리시스템(FMCS)은 준공일로부터 3년간 무상 제공되며, 3년 이후부터는 유상 전환됩니다. • 주민공동시설 운영관리시스템(FMCS)은 현장 여건에 따라 미제공 될 수 있으며, 주민공동시설 운영관리시스템(FMCS)이 적용되는 시설은 현장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무인택배 시스템 사용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은 관리비에 포함하여 부과되며, 무인 택배함은 지하2층 주차장 출입구 인근(109동 하부)과 지하1층 주차장 출입구 인근(103동 하부)에 설치될 예정으로(총 2개소) 설치 위치는 단지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커뮤니티 콘텐츠	- 작은도서관(교보문고 큐레이션), 카페(WPS스타벅스), 솔닥 비대면 원격 진료, 건강관리(피트니스 체력측정실 장비와 연동) 서비스 등은 향후 입주민의 편의를 위해 제공 예정이나, 입주자대표회의의 인수인계 시 서비스가 변경/수정/중단될 수 있으며, 업체의 사정으로 인해 상품 변경 또는 서비스 제공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입주민 부대복리시설인 작은도서관(교보문고 큐레이션), 카페(WPS스타벅스), 솔닥 비대면 원격 진료, 건강관리(피트니스 체력측정실 장비와 연동) 서비스는 별도 약정된 기한 동안 사업주체에서 비용을 지급하여 운영 예정이며, 해당 공간 운영을 위해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동력용수광열비 등은 입주민 공동관리비로 부과되므로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동력용수광열비 등의 부담은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전까지는 입주민 전체의 공동관리비로 부담되나,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이후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정에 따라 입주민 전체의 공동관리비로 부과되거나 사용자(수익자) 부담으로 부과 예정이오니 계약자께서는 계약 시 이를 승인하는 조건으로 계약 체결하셔야 합니다. - 카페(WPS스타벅스)는 이용 시 개별 비용이 발생하는 유료 서비스이며, 사업주체 및 입주자대표회의와 전문위탁관리업체의 협의 과정에서 내용이 변경 또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특화 프로그램 이용 시 개별 비용 발생 및 개별 세대에 관리비로 부과되며, 전문위탁관리업체가 변경될 경우 서비스 운영 종료 및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시공된 공사 부위, 추가 설치된 전자제품 및 집기/비품 등은 주민공동시설 내에서 철거 및 반납됩니다. - 카페(WPS스타벅스) 커피머신, 장비 및 인테리어 집기류는 제공되며 이용 시 개별 비용이 발생하는 유료서비스입니다. 운영 시간 및 방식은 추후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작은도서관(교보문고 북 큐레이션 서비스)은 도서가 제공됩니다. 큐레이션 서비스는 최초 3,000권(기본제공 1,000권 + 교보문고 북 큐레이션 2,000권) 이후 매월 100만원 상당의 도서를 2년 동안 제공할 예정으로 별도 약정된 기한 이후에는 서비스의 운영이 종료되며, 이후의 운영은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해 연장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솔닥 서비스는 비대면 원격 진료 및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며, 건강관리 서비스는 피트니스 내의 체력측정실 장비와 연동하여 제공됩니다. 해당 서비스는 자이옴과 연동으로 입주 후 3년간 운영 예정이며, 이후 AI 메디컬레포트, 온라인상담사, 인바디 데이터 활용 서비스 등은 유료로 전환될 예정입니다. 본 서비스는 입주자의 건강관리 편의를 위한 부가서비스로, 입주자대표회의의 인수·인계 이후 또는 서비스 제공사 사정에 따라 서비스 내용이 변경되거나 중단될 수 있습니다.
	주차장	- 지하주차장 천장에는 각종 배관, 배선, 장비 등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 - 주차장은 아파트 지하 1,905대, 근린생활시설 지상 11대, 총 1,916대(경형주차(94대) 및 장애인 주차(58대), 환경친화적자동차 주차 구역(156대) 포함)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의 주차면 계획과 일반형, 확장형, 장애인, 경형 주차 구획의 위치 및 비율은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구조 형식 상 지하주차장의 주거 동 직하부와 기계실, 헬룸, 및 이와 유사한 설비가 설치되는 공간에 인접한 주차 구획은 기둥 및 벽으로 인하여 차량 도어 개폐 시 간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화재안전기준에 의거 옥내 소화전의 배치 상 지하주차장의 일부 주차 구획은 차량 도어 개폐 시 간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특성상 지하주차장은 지하1층~지하2층까지 계획되어 있으며, 구획별로 지하주차장 층수 및 주거 동 연결 통로의 길이 및 형태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구조는 공사 여건에 따라 PC 또는 데크로 변경될 수 있으며, 피트(PIT)공간의 구획, 높이 및 면적, 비내력벽의 두께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전기차 충전시스템은 급속 14대, 완속 46대, 콘센트 74대가 설치되며, 주차장의 위치 및 구조에 따라 배치 위치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지하 주차장의 일부 구간은 각종 배관, 배선, 장비 등의 간섭으로 통행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단지 주출입구를 통한 지하2층 주차장 진입 및 주행 유효 높이는 2.7m, 단지 부출입구를 통한 지하1층 주차장 진입 및 주행 유효 높이는 2.3m로, 주출입구를 통하여 소형 택배차의 진입은 가능하나 사다리차, 대형차, 대형 택배차 등의 진입은 불가합니다. - 지하 1층 및 지하 2층 주차장은 전동에서 직접 출입이 가능합니다. - 아파트와 근린생활시설 주차 출입구는 별도로 구분되어 있지 않으며 아파트 지하주차장 진출입구는 2개소입니다. - 아파트와 근린생활시설 주차 구획은 별도로 구분되어 있으며, 아파트와 단지 및 주차장 출입구를 함께 사용합니다. 근린생활시설 주차장은 단지 부출입구를 통해 진출입하며 103동 전면부 지상에 설치됩니다.
	근린생활시설	- 근린생활시설의 대지지분은 아파트와 별개로 산정되어 있으나, 아파트 부지와 경계가 분리되어 있지 않아 대지지분에 따른 구획 및 분할을 요청할 수 없으며, 지상 부위의 차로 등은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로서 일체의 점유권 등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 근린생활시설의 외관과 내부 건축 계획의 변경은 아파트 계약자와 무관하게 설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의 분양 시점에 따라 MD 계획이 미확정될 수 있으며, 추후 MD 계획 확정에 따른 면적 변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용 쓰레기분리수거장은 단지 부출입구 서측 데크 하부에 설치되며 이로 인한 냄새 및 소음, 분진이 발생할 수 있고 쓰레기 수거 차량의 상시 접근으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용 저수조, 고가수조, 탈취설비, 실외기, 연도 및 각종 장비류로 인하여 인근 동에 일조권·조망권·소음 및 진동·사생활 침해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은 대지 및 전면 도로의 경사도에 따라 호실별 출입문, 바닥면의 높이가 상이할 수 있으며, 단차부의 위치 및 바닥면의 높이는 현장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 주차장 이용 차량에 의해 출입구 차단기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을 이용하는 차량은 근린생활시설용 지상주차장을 이용해야 하며, 근린생활시설의 조업을 위한 차량 등이 단지 부출입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위 세대	평면	- 본 사업은 같은 주택형이라도 면적이 조금씩 상이할 수 있으며, 견본주택과 달리 평면이 좌우 대칭이 될 수 있습니다. - 주택형별 전용면적, 공급면적 및 계약면적의 소수점 이하 숫자는 실제 시공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 세대의 천장 높이는 2,300mm로 시공됩니다. (126㎡P, 127㎡P 타입 2,400mm) - 입주 시 세대 내 침실별 가구(불박이장)를 개별적으로 추가 설치 시 필히 실측하여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 현관, 현관 창고, 비화장 발코니, 실외기실, 대피공간, 하향식 피난구실, 보일러실 등에는 바닥 난방이 시공되지 않으며, 욕실 및 다용도실의 경우, 마감 여건상 일부 구간에만 바닥 난방이 시공됩니다. (욕실의 욕조하부, 샤워부스 등에는 바닥 난방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세대 내부 벽체는 마감 품질 확보를 위하여 재료(콘크리트, 조적, 경량벽체), 길이 및 두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간 벽체에는 공사를 위한 작업 통로가 설치될 수 있으며, 작업 완료 후 조적 또는 건식 벽체로 마감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내 시공된 사항과 달리 실외기실 측벽 벽체의 두께가 두꺼워지고 이에 따라 발코니 면적이 축소될 수 있으니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126㎡P, 127㎡P 타입 및 옥외공간 하부 세대에서는 상부 세대 옥외공간의 배수관 설치로 인해 실내 공간에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우천 시 캐노피에 의한 빗물 튀과 이로 인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발코니	• 발코니는 계획 용도에 따라 수전, 드레인 또는 선홍통이 설치되지 않을 수 있으며, 위치와 개수가 변경될 수 있고, 드레인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 내에서는 물을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 확장하지 않은 발코니는 준 외부 공간으로서 난방 시공 및 단열재가 설치되지 않으므로, 내·외부 온도 차에 의하여 결로 및 결빙에 의한 마감 손상이 발생할 수 있으며 보관된 물품은 훼손될 수 있습니다. 또한, 발코니 측벽 및 천장에 최소 결로 방지를 위한 추가 단열재 및 마감재가 시공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발코니 내부 폭 및 크기가 축소될 수 있습니다. • 세탁기와 보일러가 설치되는 공간 및 발코니에 수전과 실외기실에 선홍통이 설치되는 곳은 겨울철 동파가 발생할 수 있으니, 창문 닫기 및 보온 조치 등 입주자의 신중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 환기 시스템 설치 또는 시스템 에어컨 선택에 따라 실외기실 또는 다용도실 천장에 덕트, 배관 등이 노출 시공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미관이 저해되거나 천장고가 낮아질 수 있고, 내부 마감(창호와 그릴, 전등의 크기 및 위치) 및 건축 입면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화재 등 유사 시에는 실외기실 내 하향식 피난구를 통해 하부 세대로 대피하여야 합니다. • 하향식 피난구 설치 세대(1층 및 필로티 상부세대 제외)는 비상 시 하향식 피난구 사용을 위해 항시 실외기실 출입문은 닫힌 상태로 유지하여야 하며, 하향식 피난구로 인해 층간 소음 및 방범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나, 시공사의 책임 범위가 아니니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세탁기와 건조기의 수직 설치 시 창문 개폐에 불편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세대 외부창호 유리난간 적용에 따라 국기계양대는 동충입구에 설치 예정입니다. • 기본형(비확장) 세대의 경우 외부의 발코니가 협소하여 사용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 기본형(비확장) 세대의 경우 각실과 발코니가 만나는 면에 창호가 설치되며 발코니 외부 쪽으로는 창호가 설치되지 않습니다. 또한 상층 및 하층세대 단열 및 배수 설계로 인해 발코니의 천장고 및 창호 높이가 축소 시공되며 발코니의 바닥 레벨이 거실 및 침실보다 높게 시공되어 사용에 불편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기본형(비확장) 세대에서 전체 발코니가 연결된 경우 각실이 아닌 거실 혹은 주방 등 특정 실을 통해서만 출입이 가능하게 되어 생활에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창호	• 단위세대 타입 및 실에 따라 적용되는 창호 및 하드웨어(손잡이 등)가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저층 세대의 외벽 마감재 설치에 따라 외부 창호는 다소 축소 및 변경될 수 있으며, 벽체 두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시 아파트 외부 창호는 일부 세대의 발코니 장식물 부착 및 내풍압 구조 검토에 따라 세대별, 층수별로 창호 사양(창틀, 하드웨어, 유리 등)이 변경 및 축소될 수 있으며, 세대에 설치되는 창호의 개폐 방향, 날개 벽체 및 분할은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외부창 및 내부 창호의 사양(제조사, 브랜드, 디자인, 개구부 및 프레임 사이즈, 창틀, 하드웨어, 유리 두께 및 색상 등)은 공급업체 사정에 따라 견본주택에 설치된 제품과 상이한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으나 동등급 이상으로 설치됩니다. • 현장 여건 및 입주자 사용성 개선을 위해 목문의 사양(문틀 및 문짝의 폭, 높이, 재질, 개폐방향, 디자인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보일러 설치로 다용도실 창호 일부가 고정되어 사용에 불편이 발생할 수 있으며, 고정창에는 손잡이가 설치되지 않습니다. • 창호에 설치되는 방충망의 형태는 본 공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겨울철 밀폐된 생활 환경 속에서 음식 조리, 가습기 사용, 실내 화분, 빨래 등으로 인해 실내 상대 습도가 40~50% 이상이 될 경우에는 창호 유리면 및 창틀 주변에 결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자연환기 또는 세대 환기 시스템을 작동하여 결로 현상을 예방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리난간이 적용된 외부 창호를 통한 이삿짐 운반 시 유리 난간의 파손 우려 및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으므로 불가하며, 만일 유리난간창으로 이삿짐 차량을 이용한 운반 시 파손에 대한 책임은 입주자에게 있습니다. • 철제문의 경우, 공급업체 사정에 따라 견본주택에 설치된 제품과 상이한 사양(디자인, 문짝 두께, 문틀, 경첩의 형태, 하드웨어, 마감 등)으로 설치될 수 있습니다.
옥외공간	• 옥외공간에 배수구가 설치된 경우, 배수구는 공용 시설물로서 시설물 이상 발견 시 즉시 관리사무소에 통보하여야 하며, 임의 사용으로 인한 배수 불량 및 하부 세대 누수 발생 시 책임은 해당 입주자에게 있습니다. • 126㎡P, 127㎡P 타입의 옥외공간은 설계 상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공용공간으로, 해당 세대를 포함한 어느 세대도 사용할 수 없으며, 공용설비 및 시설물 점검·유지를 위한 진입 요구 시 항상 개방하여야 합니다. 또한, 전용면적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등기를 포함한 재산권 행사가 불가합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옥외공간 바닥은 콘크리트 마감이며, 바닥 레벨은 본 공사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최상층 옥외공간에는 통기 배관 및 연도가 노출 설치 될 수 있으며, 조망권·소음 및 진동, 냄새, 사생활 침해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옥외용 수전이 설치된 경우 해당 시설은 관리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로서, 입주자의 임의 조작이나 개인적 용도의 사용을 금지합니다. • 옥외공간에는 우수 또는 배수 드레인이 노출되어 시공될 수 있으며 수량 및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옥외공간 관리를 위한 진입을 위해 단위세대 발코니 외부 창호에는 난간이 설치되지 않고, 옥외공간 외곽에 난간이 설치될 수 있으며, 재질 및 색상, 높이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옥외공간은 준공 시 상태 그대로 유지되어야 하며, 입주자가 임의로 추가 시공(데크, 타일, 인공 잔디, 화단 등 일체)을 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발생한 하자과 인접/하부 세대의 피해에 대한 모든 책임과 원상복구 의무는 해당 입주자에게 있습니다. • 면적에 포함되지 않는 옥외공간에는 「건축법」 및 지자체 지침에 따라 지붕, 가설물, 칸막이 등 어떠한 구조물도 설치할 수 없습니다.

	• 옥외공간 상부에는 낙하물 방지를 위한 시설물이 계획될 수 있으며, 실시설계 시 형태, 크기, 위치, 유무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옥외공간에는 추후 유지보수를 위한 고소 작업 시 근로자의 안전을 고려하여 안전고리 혹은 안전고리 체결용 매입철물 등이 시공될 수 있습니다. • 126㎡P, 127㎡P 타입 옥외공간은 세대 위치에 따라서 골조벽 또는 투시형 난간 또는 경량칸막이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일부 세대에는 프라이버시를 위해 옥외공간에 세대간 경량칸막이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경량칸막이의 크기, 위치, 재료, 디자인, 색상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가구 및 마감재	• 불박이 가구(신발장, 주방가구, 욕실장 등)로 가려지는 벽, 바닥, 천장의 마감재는 설치되지 않으며, 가구 하드웨어(힌지, 레일, 조명, 스위치 등)는 본 공사 시 동급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적용되는 마감 자재는 자재의 품질, 품귀, 생산 중단, 제조 회사의 도산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동질, 동급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택형별 옵션 선택에 따라 가구 및 수납 계획(디자인, 크기, 도어갯수 등), 우물천장 크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욕실 출입문(부부, 가족)은 본공사 시 PVC 계통(ABS) 도어로 시공됩니다. • 인접 세대간 사생활 침해 최소화를 위해 일부 세대 아트월 방향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배선기구, 조명기구, 월패드, 설비 배관 등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위생도기, 수전류 및 각종 액세서리류(수건걸이, 휴지걸이 등)의 설치 시 현장 여건에 따라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냉장고장 형태는 옵션 사항이며, 이에 따라 냉장고장이 상이하게 설치되오니, 계약 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미선택 시 냉장고(입주자 직접 설치 가전)가 제품 사양에 따라 일부 돌출될 수 있습니다. • 욕실거울, 수전류, 각종 액세서리류(수건걸이, 휴지걸이 등) 및 샤워부스, 철재류는 녹발생 방지를 위하여 알칼리나 산성세제가 아닌 중성세제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목창호, 시트 패널 등의 고정을 위해 본공사 시 Staple Tacker가 사용되며, 시공 자국이 보일 수 있습니다. • 욕실장, 샤워부스, 시스템선반의 형태, 색상, 하드웨어의 사양 등이 동급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다용도실 또는 발코니에 건조기 사용 시 온도 및 습도가 상승될 우려가 있어, 결로 및 기타 하자 방지를 위하여 환기 등 입주자의 신중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 세대 내 적용되는 마감 표면재(벽지, 시트, LPM, 마루 등)는 제품 생산 시 미세한 색상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적용되는 석재류(인조석재 포함)는 자재 특성 상 색상, 무늬, 패턴 등이 균일하지 않을 수 있으며, 현장 여건에 따라 본 공사 시 나누기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적용되는 유리류는 자재 특성 상 조명 및 각도 등에 따라 색상이 다르게 보일 수 있으며, 견본주택에 적용된 제품과 동급 이상의 자재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라믹, 타일류는 재료적 특성 상 각 장별 색상 및 패턴의 차이(멀티 패턴 타일)가 있을 수 있고, 시공 시 인접 타일과 줄눈 두께 상이 혹은 단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현장 여건에 따라 본 공사 시 나누기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바닥에 적용되는 타일은 균열 및 파손 하자를 예방하기 위해 분절시공 될 수 있습니다. • 양변기 인근 매립형 휴지걸이를 설치할 공간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는 노출형 휴지걸이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창호 상부의 커튼박스는 천장 속 배관 및 단열 마감을 위하여 커튼박스의 폭, 깊이, 길이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공사 시 공사 품질 향상을 위해 재료분리대, 몰딩 등이 추가, 변경 시공될 수 있습니다. • 현관중문은 주택형별 사양(개폐 타입, 사이즈 등)이 다르며, 본 공사 시 형태, 재질, 색상, 하드웨어의 사양 등이 동급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현관중문 설치 유무에 따라 신발장의 형태나 규격, 설치 위치, 도어 개수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거실 내부에 설치하는 출입문의 고정부 모서리면에는 손 끼임 방지장치가 제공됩니다. • 기본형 또는 확장형 평면에 제공되는 품목(주방가구, 냉장고장, 드레스룸 선반 등)이 서로 차이가 있으므로, 계약 전 확장 시 제공 품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공간 유무상 옵션 등에 따라 타입별 평면 및 마감재 적용 부위가 상이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마루의 특성상 색상, 무늬, 패턴 차이와 옹이는 자연스러운 것으로 하자가 아닙니다. • 세대 내 욕실 벽체는 조적벽 대신 건식공법이 적용될 수 있으며, 벽체 두드림 시 발생하는 소리는 하자가 아닙니다. 건식공법 적용 시 수전, 도기 등의 설치 위치는 견본주택과 상이할 수 있으며, 마감재 디자인과 디테일은 본공사 시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입주자의 추가적인 욕실 시공(바닥방수, 바닥난방, 타일마감 등) 중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는 입주자에게 책임이 있으며, 입주자는 추가 시공 시 방수, 배수에 대한 기본 설계 조건에 대한 전문가의 확인을 받은 후, 착수 전에 인접 세대 및 하부 세대의 동의를 구하여야 합니다.
전기기계설비	• 주방 및 거실의 천장에 도시가스 법규에 따라 가스누출탐지를 위한 점검구 또는 누출 점검이 가능한 설비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 환기 시스템 및 욕실 배기, 주방 배기를 위하여 외부에 환기캡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건축 입면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욕실에는 바닥 배수구와 환기를 위한 욕실팬이 설치됩니다. • 세대 내부의 욕실 단차는 바닥 구배 시공으로 인해 준공 도면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욕실 출입 시 욕실문에 의한 신발 걸림이 있을 수 있습니다. • 환기 디퓨저, 가스배관 및 계량기 위치는 공사용 설계 도면 기준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가스배관은 설치 위치에 따라 노출되어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입주자가 에어컨을 개별 설치하는 경우, 에어컨은 실외기 공간을 감안하여 에어컨 성능에 지장이 없도록 입주자가 설치하여야 합니다. • 입주자의 필요에 따라 추가의 에어컨 설치 시에는 별도의 실외기 고정가대 및 에어가이드 설치를 하여야 원활한 사용이 가능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에어컨 가동시 실외기실 루버는 반드시 열려있어야 하며, 루버 부근에 방충망 또는 물건 적치 시 공기 순환 장애로 인한 효율 저하 및 과열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 자동제어시스템 및 온도, 환기조절기 등은 시스템라인 선택 유무 및 내부 시스템 업그레이드에 따라 견본주택에 설치된 제품과 상이한 제품이 설치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되어 있는 스프링클러 및 소방감지기는 견본주택 소화 시설물로서 본 공사 시 설계 도면 및 화재안전기준에 의해 시공됩니다. (본 공사 시 상기 사항 적용에 따른 일부 마감 사양, 우물천장, 커튼박스, PL창호, 주방가구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최하층 세대 하부에 각동 제연을 위한 급기구가 설치될 수 있으며, 설치 위치는 동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외벽 또는 세대 실외기실 등에 가스 입상배관이 설치될 수 있으며 내부 일부 층에 루프 배관 등으로 미관 저해 및 공간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욕실, 드레스룸 및 팬트리 난방 제어를 위한 온도조절기는 별도로 설치되지 않으며, 난방 배관 설계에 따라 인근 온도조절기(거실용 또는 침실용)에 의해 통합 제어될 수 있습니다. • 침실, 알파룸, 베타룸이 옵션 선택에 따라 대형 드레스룸 및 팬트리로 변경될 경우 온도조절기는 설치되지 않을 수 있으며, 난방 배관 설계에 따라 인근 온도조절기(거실용 또는

		침실용)에 의해 통합 제어 될 수 있습니다. • 자이패스 시스템의 스마트폰 연동은 스마트폰 OS 정책에 따라 사용에 불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원패스 카드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 세대 내 배선기구(스위치, 콘센트), 전자식스위치, 조명기구, 월패드, 통신 단자함, 세대 분전반의 위치 및 수량은 단위세대 평형, 타입, 옵션, 위치 등에 따라 변경됩니다. • 전기쿡탑(인덕션, 하이라이트 등) 적용 시 가스 배관은 세대 가스계량기가 설치된 장소까지 제공되고, 이 경우 가스 쿡탑 설치가 어려울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라며 전기쿡탑 옵션 비용은 해당 금액을 감안한 금액입니다. • 주방에 설치되는 자동식 소화기는 사용 열원에 맞는 종류로 설치됩니다. • 주방 옵션 선택 시 후드 타입에 따라 인근 천장에 자동식 소화기 점검구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일부 대형 평형에는 싱크대 하부 난방분배기 이외 별도 추가의 난방분배기가 설치될 수 있으며 공간 제약과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소방인허가청 요구조건에 따라 3~10층 구간에는 침실, 거실, 발코니 등 단위세대 내부에 완강기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내 설치된 비데 리모컨 설치 위치는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설치 위치는 향후 변경될 수 있으며, 입주 시에는 리모컨을 미부착 후 기본 제공하여 드리오니 입주자의 사용 편의성 및 선호 위치에 부착하여 사용 하실 수 있습니다. • 건조기와 세탁기를 수직 설치 하는 경우 가스보일러 점검 또는 교체 시 건조기와 세탁기 분리과 재설치를 위한 별도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인테리어 Style Up 선택 시, 현관 신발장 상부 수납함 내부에 SMPS함이 설치되어, 수납공간이 줄어듭니다. • 126㎡P, 127㎡P 타입 등 기준층과 PD 위치가 다른 경우 하부층 세대 천장 내부에 위생 배관이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세대 전열교환기 가동은 시스클라인 옵션 선택 시 시스클라인 장비 본체에 내장된 센서에 의해 운전되며, 기본 제공하는 거실 센서는 제외됩니다. • 시스템 에어컨 옵션 선택 시 기본 냉매 매립배관은 천장 속 노출 냉매배관으로 변경 시공되며, 시스템에어컨 설치 공사비는 변경 공사를 감안하여 산정한 금액입니다. • 본 아파트는 도시가스 연료를 사용하며, 세대별 보일러를 설치한 개별난방 방식이 적용됩니다. • 세대 보일러는 적정한 용량을 선정하였으나, 온수를 동시에 사용할 경우 온수 사용에 따른 불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주방 가구 후면 공배관을 냉장고, 로봇청소기용으로 활용할 경우 전문업체를 통한 별도 확인이 필요하며, 배관 연결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하자 등은 입주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 주방 하부 급수관에 냉장고, 로봇청소기, 정수기 등 개별적으로 추가 연결 시 누수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로 발생하는 하자 등은 입주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 욕실 복합환풍기 옵션 선택 시 설치 위치 및 방향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LG전열교환기 옵션 선택 시 거실에 환경센서는 전열교환기 장비 내부 센서로 변경되며, 월패드와 LG유선리모컨과의 공기질 수치는 다르게 표기될 수 있습니다. • 욕실 세면기 하부에 온·냉수 공급을 위한 분배기 박스가 설치됩니다. • 엘리베이터 전실 PS(파이프 샤프트) 내부에 세대 급수 분배기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견본주택	견본주택	• 견본주택 내에는 기본 제공 마감재 이외의 유상옵션 품목 또는 디스플레이를 위한 상품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견본주택을 관람하시고 분양가에 포함된 품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의 온도조절기, 환기디퓨저, 스프링클러 헤드, 시스클라인, 시스템 에어컨은 상황에 따라 타입, 위치, 수량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동일한 타입도 옵션 선택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의 배선기구, 조명기구, 월패드, 통신 단자함, 세대 분전반은 상황에 따라 타입 및 위치, 수량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동일한 타입도 옵션 선택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전자식스위치는 유상옵션으로 설치되어 있으며, 유상옵션을 선택하지 않은 세대는 기본형 전자식 스위치가 설치됩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조명기구는 유상옵션으로 설치되어 있으며, 유상옵션을 선택하지 않은 세대는 GS건설 표준화 조명이 설치됩니다. • 견본주택 내 설치된 CCTV는 견본주택용으로 본 공사 시 설치되지 않습니다. • 견본주택은 분양 후 일정 기간 공개를 거쳐 폐쇄 및 철거할 수 있으며 철거 전 동영상 또는 사진으로 견본주택 내부를 촬영하여 보관할 예정입니다. • 견본주택에 미건립된 주택형의 경우 견본주택에 설치된 유사 주택형과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계약 시 상담을 통해 평면 및 마감재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신 후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위생기구는 유상옵션으로 설치되어 있으며, 유상옵션을 선택하지 않은 세대는 기본형 위생기구가 설치됩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분양계약서의 일부로 구성되며, 청약자는 본 입주자모집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분양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에서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 사항에 대하여는 사업주체 견본주택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 관계법령이 우선함)

※ 자세한 공사 범위 및 마감재는 분양홈페이지에서 확인 바랍니다.

총 1,275세대		분양문의 1660-2792	
59㎡A·B / 74㎡A·B·C / 84㎡A·B·D / 99㎡B / 126~127㎡P		■ 분양홈페이지 : https://www.xi.co.kr/osan ■ 견본주택 위치 : 경기도 오산시 내삼미동 272-2	